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763-14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

설 명 편

2008. 12

발간에 즈음하여

2003년 4월 우리나라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국제출원 업무를 개시한지 벌써 5년여가 지났습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07년도 마드리드국제출원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원한 상표건수(본국관청 출원건수 : 330건)가 세계 23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건수(지정국관청 출원건수 : 8,988건)는 세계 11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제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는 마드리드의정서 가맹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중 본국관청 출원건수 세계순위는 비록 세계 23위에 머물렀으나 2006년도와 비교시 출원증가율에 있어서는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정국관청 출원건수 대비 본국관청 출원건수 비율은 3.4%로 우리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웃 일본의 경우(8%)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기업)들이 아직까지도 해외에 상표출원시 많은 장점을 지닌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본국관청 출원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출원정보 제공이 부족한데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기를 원하는 출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제1편 설명편(제도개요, 본국관청 절차,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우리나라 외의 주요 지정국 절차, 전자출원 등)과 제2편 양식편(출원서식, 명의변경 서식 등의 실제 양식과 작성법 수록) 등 2개의 책자로 분리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본국관청 출원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책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상표출원시 유용한 점을 많이 지닌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 12.

고객서비스국장 **이영대**

일 러 두 기

1. 본 가이드는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WIPO가 발간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가이드[Guide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under the Madrid Agreement and the Madrid Protocol, WIPO Publication No. 455(E)]
 - マドリッド協定議定書(マドリッドプロトコル)に基づく國際商標出願 手続集, 様式集(平成19年度, 日本特許庁, 國際商標出願室)
2. 본 가이드에서 적용되는 상표법령과 통계자료는 특별히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본 가이드는 제1편 설명편(제도개요, 본국관청 절차,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우리나라 외의 주요 지정국 절차, 전자출원, 참고자료 수록)과 제2편 양식편 등 2개의 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이 책자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할 계획이므로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특허청 고객센터(국 제출원과 (☎ 042-481-5206, FAX 042-472-7140)로 알려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CONTENT



제1편 마드리드국제출원 개요 / 1

제1절 마드리드국제출원 소개	3
제1장 마드리드의정서의 개요	3
제2장 외국에의 직접출원과 의정서에 의한 출원	6
제2절 의정서에 기초한 국제출원의 개요	9
제1장 국제출원 대상	9
제2장 국제출원의 출원인	9
제3장 국제출원의 효과	10
제4장 국제출원 언어	10
제5장 국제등록일	11
제6장 국제등록부	11
제7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11
제8장 지정국관청에 의한 심사	12
제3절 사후지정	14
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14
제2장 사후지정일	14
제3장 사후지정의 효과	15
제4장 사후지정의 존속기간	15
제4절 국제등록의 종속성	17
제1장 국제등록의 종속성의 개념	17
제2장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18
제3장 국제등록의 독립성	20

제2편 본국관청 절차 / 21

제1절 국제출원의 일반원칙	23
----------------------	----

제1장 출원인의 자격요건 등	23
제2장 마드리드국제출원 서식 일람	25
제2절 특허청(본국관청)의 방식심사	26
제1장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방식심사	26
제2장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28
제3장 반 려	29
제4장 무효처분	29
제3절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30
제1장 국제출원서(MM2)의 작성	30
제2장 국제출원서 별첨서류 작성방법	45
제4절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49
제1장 국제출원서(MM2) 합치심사의 의의	49
제2장 대체서류제출 요청	49
제3장 합치선언 및 WIPO 송부	52
제5절 WIPO 하자통지 대응	53
제1장 하자의 종류	53
제2장 하자의 치유	58
제6절 사후지정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61
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61
제2장 사후지정서 작성 요령	62
제3장 첨부서류(MM18와 MM17)의 취급 등	67
제7절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 작성방법	68
제1장 국제등록명의변경의 개요	68
제2장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70
제8절 존속기간 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	75
제1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개요	75
제2장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작성방법	76
제9절 수수료	79
제1장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79
제2장 WIPO(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79

제3장 포기간주 등으로 인한 WIPO(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83
제4장 과오납에 의한 WIPO(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84

제3편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 85

제1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87
제1장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란?	87
제2장 국제사무국에의 수수료 납부	88
제2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89
제1장 상품(서비스) 목록 감축신청서(MM6)	89
제2장 포기신청서(MM7)	90
제3장 취소신청서(MM8)	90
제4장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서(MM9)	91
제5장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서(MM10)	91
제6장 대리인의 선임신청서(MM12)	91
제7장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92
제8장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92
제9장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93
제10장 권리인의 처분권의 제한(MM19)	93
제3절 유럽공동체 상표의장청(OHIM)에 대한 절차	94
제1장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 신청서(MM16)	94

제4편 지정국 절차 / 95

제1절 지정국 절차 개요	97
제1장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	97
제2장 지정통지 언어	97
제3장 각 계약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	97
제4장 거절이유(가거절) 통지기한	98
제5장 지정계약국에서의 심사	99
제2절 주요 지정국관청 절차	100
제1장 중국(China)	100
제2장 일본(Japan)	103

제3장 미국(USA)	108
제4장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113
제5장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117

제5편 전자출원 / 121

제1절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123
제1장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123
제2절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127
제1장 국제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127
제2장 KEAPS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136
제3장 KEAPS를 이용한 중간서류 제출	147

제6편 참고자료 / 151

1. 지역별 가입국	153
2. 가입국목록	154
3. 마드리드 국제출원전용홈페이지	156
4.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 사이트	157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160
6. 마드리드 익스프레스	162
7. ROMARIN	164
8. 미국 및 일본 상표검색	167
9. 영문상품분류 검색	169
가. 대한민국특허청 한영상품비교 검색	169
나. WIPO NICE9판검색	170
다. 미국특허청상품검색	171
라. 영국상표청 상품분류검색	172
10. WIPO 당좌계좌개설	173
11. 국제출원관련 연락처	176



제1편

마드리드국제출원 개요

제1절 마드리드국제출원 소개

제2절 의정서에 기초한 국제출원의 개요

제3절 사후지정

제4절 국제등록의 종속성

1 Section

Madrid guide

마드리드국제출원 소개

제1장 마드리드의정서의 개요

1. 상표의 해외 출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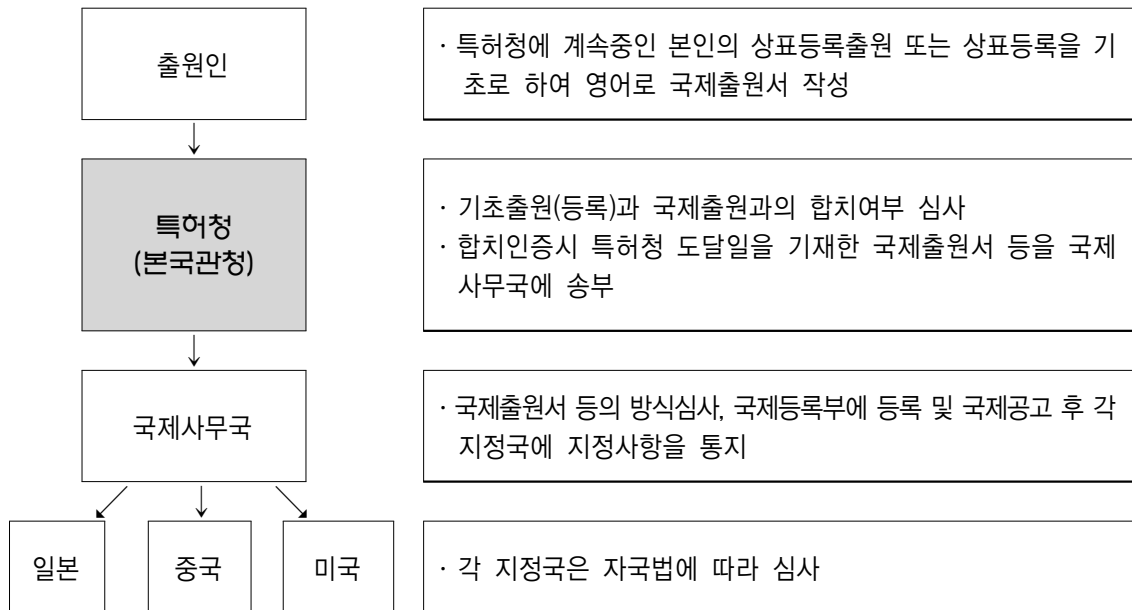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 리조약을 이용하여 각 국별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마드리드 의정서 에 의한 국제출원입니다.

2. 마드리드의정서

각 국별로 출원해야만 하는 전통적인 해외 상표출원방법 대신에 상표를 보호받 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한 1통의 출원서류만 한국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복수국가 에 일괄하여 출원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입니다.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의정 서”라고 한다).」이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체약국의 특허청(본국관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기초로 하여 보호를 구하는 체약국(지정국)을 명시하여, 세계지식소유권기구(WIPO) 국제 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합니다.
- (2)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 후 각 지정국에 지정되었다는 통보서를 송부합니다.
- (3) 지정통보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 간(1년 또는 각 국의 선언에 의해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아니 하면 각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당해 표 장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기업)이 의정서에 의해 국제출원하는 경우의 절차도



3. 주요 용어 설명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드리드의정서 : 마드리드 의정서는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어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후 마드리드국제출원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나. 국제상표등록출원 : 우리나라 영역안에서 표장(상표)을 보호(등록)받기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됩니다.

다. 국제출원 : 좁은 의미로는 각 계약당사자(계약국 및 계약기구)에서 상표를 보호받기를 위하여 본국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출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라. 국제등록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을 말합니다.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이 된 이후 각 지정국에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각 지정국은 이때부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등록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마.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특허청을 말하며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송부하는 업무와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각종 하자통지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상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소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소멸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출원과는 본국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안에서 보호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상표심사팀이 지정국관청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서는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자를 기초출원, 후자를 기초등록이라고 합니다.

4. 의정서 체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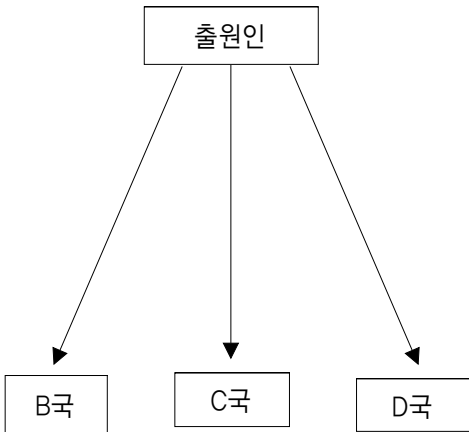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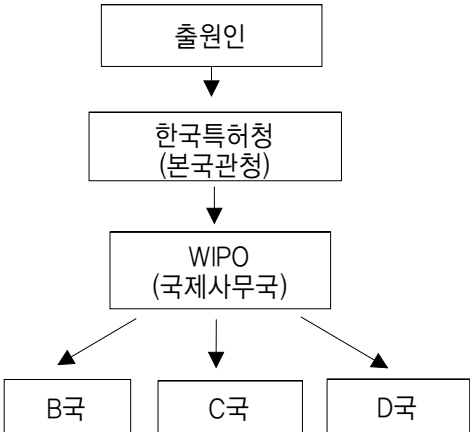
의정서 체결국은 2008. 11.말 현재 76개국(기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제6편 참고자료에서 확인하거나 WIPO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memb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외국에의 직접출원과 의정서에 의한 출원

1.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의 단점

- 가.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은 상표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 수만큼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 나.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출원하는 경우 자국의 대리인을 강제선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리인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 다. 한편 상표등록 후의 사후관리(주소변경, 존속기간 갱신, 명의변경 등)도 각 국에 따로 일일이 하여야 하므로 언어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개의 표장으로 해외 상표출원 대상국가가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그 불편함은 가중됩니다.

2. 외국에의 직접출원과 의정서 출원의 절차 비교

파리루트 출원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출원
 <pre> graph TD A[출원인] --> B[B국] A --> C[C국] A --> D[D국] </pre>	 <pre> graph TD A[출원인] --> B[한국특허청
(본국관청)] B --> C[WIPO
(국제사무국)] C --> D[B국] C --> E[C국] C --> F[D국] </pre>
• 각 국별 언어로 출원서 작성 • 각 국별 출원절차	• 영어 · 불어 · 스페인어 중 1개로 출원서 작성 • 1의 출원절차

3. 의정서 출원의 장점

가. 절차의 간소화

의정서출원에서는 복수국가에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본국관청(한국특허청)에 1통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복수국에 동일날짜에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 복수국분의 출원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일괄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나. 편리한 서류작성

의정서출원에서는 언어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출원 등의 절차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기초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한국은 영어를 선택)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시 반드시 영어로는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외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권리관리의 간편화

의정서제도에서는 국제사무국에서의 국제등록부에 의해 권리관계는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마다 존속기간의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경비의 절감

각 국별로 직접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국이 원하는 양식의 출원서류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국의 대리인의 보수, 번역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의정서출원에서는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각 국의 대리인의 선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정국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그 국가에서 재심사 등을 하는 경우에만 그 국가의 대리인 선임은 필요하게 되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 신속한 심사(거절통보기간의 제한)

의정서출원에서는 지정국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에의 통보기간을 1년(또는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국마다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심사(거절)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의정서 출원을 하면 각 지정국에서의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 계약국의 사후지정에 의한 보호의 확장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출원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계약국은 물론, 출원 후 새롭게 가맹한 계약국에 관하여도 보호의 확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시에 특정국가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을 한정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Section

Madrid guide

의정서에 기초한 국제출원의 개요

제1장 국제출원 대상

1.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본국관청)에 繫屬하고 있는 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 또는 등록상표(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는 상기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로 지정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 또는 그 범위 내여야 합니다.

제2장 국제출원의 출원인

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한국국민 또는 한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에 있어서는 영업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상기 (1)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3장 국제출원의 효과

1.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이 제출된 날이 국제등록일로 간주됩니다.(사후지정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후지정일에 국제출원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관하여 출원인이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파리조약 제4조D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도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행해야만 하는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주장 및 우선권증명서를 제출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4장 국제출원 언어

1. 출원언어

- 가. 국제출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인정되는 언어는 본국관청에 의해 정하여 집니다.
- 나. 한국특허청이 정한 언어는 영어입니다.

2. 국제출원 이외의 통신언어

- 가. 국제사무국과 한국특허청(본국관청)간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 나. 국제사무국과 출원인 또는 명의인간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단 해당 출원인 또는 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의 통신언어를 영어 또는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는 취지를 출원서에 표명한 경우는 표명한 언어가 됩니다.

제5장 국제등록일

1. 본국관청이 수리한 날에 의한 국제등록일

- 가. 국제출원은 반드시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국제출원의 수리날짜는 본국관청이 실제로 국제출원을 수령한 날짜가 됩니다.
즉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이 본국관청의 수리일이 됩니다.
- 다.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수리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수리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2. 국제사무국이 수리한 날에 의한 국제등록일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리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제6장 국제등록부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의정서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표장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국제등록에 관하여 지정국 관청에 대하여 통보함과 동시에 본국관청에 통지하며 또 명의인에게 국제등록 증명서를 송부합니다.

제7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국제사무국에 의한 표장의 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에 걸쳐 효력을 유지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대한 1회의 갱신신청으로 각 지정체약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지정국관청에 의한 심사

1. 지정국관청은 국제사무국에 의한 영역지정의 통보일로부터 1년(또는 각 국의 선언에 의해 18개월) 이내에 그 대상인 표장에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거절통지서(한국에 있어 의견제출통지에 해당)」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함으로써 보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기간내에 「가거절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국에서는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국제등록증명서」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거절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지정국에 있어서는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아래의 14개 계약국은 상기 기간 이내더라도 거절사유가 없어 등록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호부여기술서(등록결정)」를 국제출원인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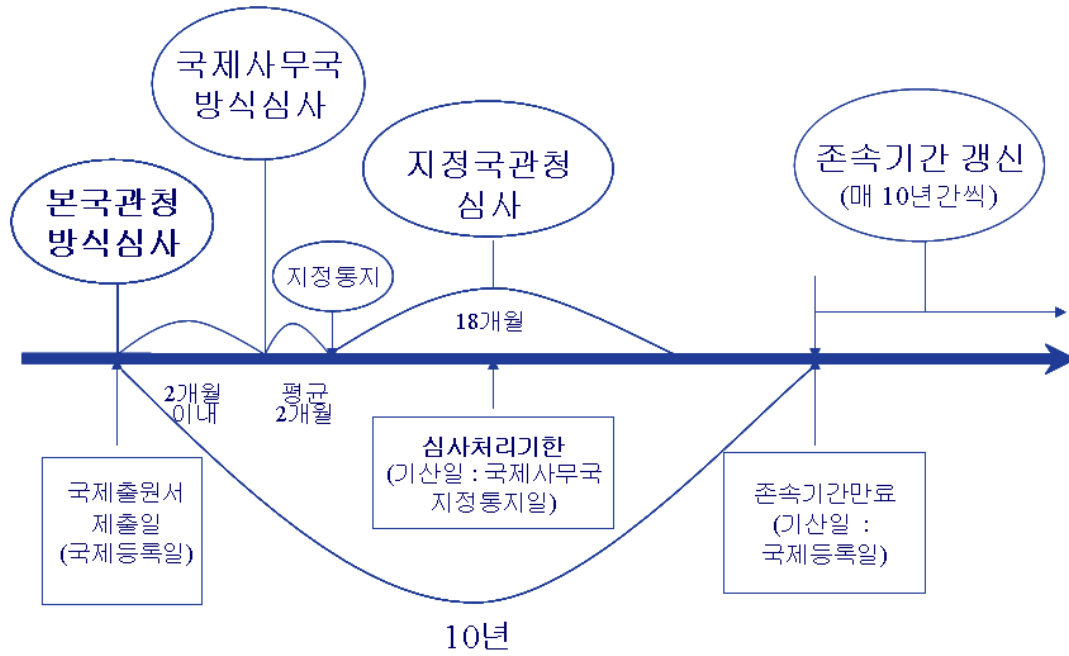
보호부여기술서 발송국(2008. 11. 현재)

아르메니아, 호주, 베네룩스, 유럽공동체, 조지아,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한국, 싱가포르, 시리아, 터키, 영국



Q 지정계약국으로부터의 가거절통지서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각 계약국 관청이 선택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 마드리드국제출원 종합 절차도



3 Section

Madrid guide

사후지정

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1. 사후지정은 국제출원이 국제등록된 후에 있는 절차로서 국제출원시 지정하지 못한 지정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서비스)을 추가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정국의 추가는 의정서 가입국이 대상이며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후의 신규가맹국(사후지정신청 제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국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지정상품(서비스)을 추가할 때에는 사후지정의 기초가 된 국제등록의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는 새로운 지정상품(서비스)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2장 사후지정일

1. 본국관청이 수리한 날에 의한 사후지정일

국제사무국이 사후지정을 본국관청(한국특허청)이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리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수리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2. 국제사무국이 수리한 날에 의한 사후지정일

가. 사후지정을 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이 사후지정을 수리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나. 사후지정을 본국관청(한국특허청)이 수리한 날로부터 국제사무국이 2개월을 경과하여 수령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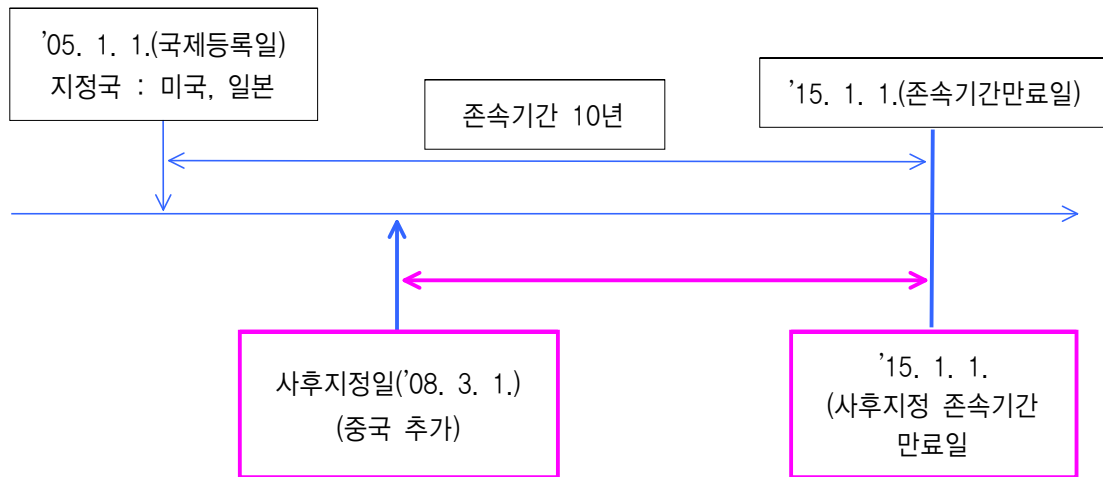
제3장 사후지정의 효과

1.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후에 제출된 사후지정이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사후지정에 있어 지정된 지정국에 그 취지를 통보하며 또한 동시에 명의인 및 해당 사후지정이 본국관청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본국관청에도 통지합니다.
2. 각 지정국에서는 사후지정일에 그 국가에 직접 출원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사후지정 통보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 이내에 거절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국의 국내등록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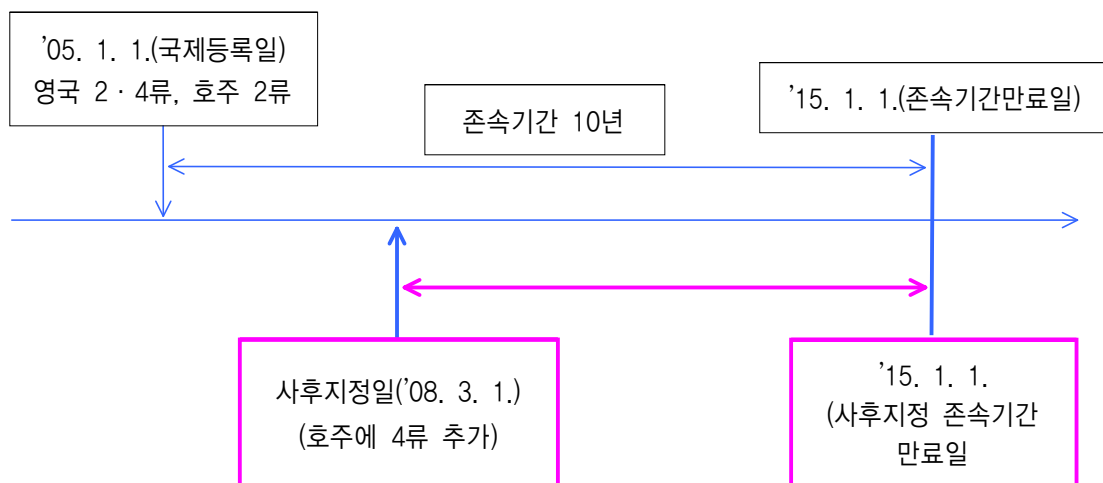
제4장 사후지정의 존속기간

사후지정에 의해 추가된 지정국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사후지정의 기초가 된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사후지정일로부터 기산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가 추가사례〉



〈지정상품(서비스) 추가 사례〉



4 Section

Madrid guide

국제등록의 종속성

제1장 국제등록의 종속성의 개념

1.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 포기, 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센트럴어택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킨 경우 모두 포함)에는 국제출원에 의해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서 지정국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 집중공격)

제3자에 의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합니다.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기초출원(등록)을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단계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한꺼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센트럴 어택은 제3자의 기초출원(등록)에 대한 공격 외에 출원인의 자진 감축보정 등 자의에 의한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사항까지 포함하는 등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어 국제등록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2. 국제등록에서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등록의 종속성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각 지정국에 일정 조건을 갖추어 상표등록출원(파리루트에 의한 직접출원)을 한다면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참조)

3.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효력이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경우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장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1. 본국관청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사전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 소멸사항을 통보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효력소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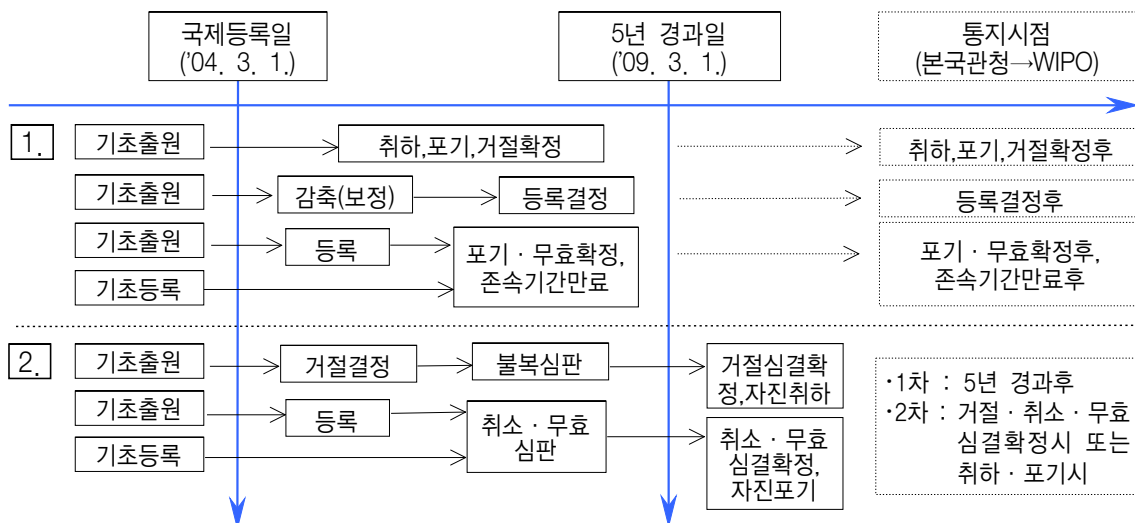
가. 거절, 무효, 취하, 포기가 확정

나. 거절사정불복심판이 청구되고 거절이 확정(5년 경과 후를 포함)

다. 이의신청, 등록무효(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이 취소(5년 경과 후를 포함)

라. 지정상품(서비스)가 보정에 의해 감축

〈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 사례 〉



2.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에서 통지되어온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서를 기초로 국제등록부에 효력소멸 내용을 기록한 후 지정국 및 명의인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가. 국제등록부로부터 취소된 날짜

나. 취소된 지정상품(서비스)

3. 지정국관청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서를 기초로 지정상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 중인 경우에는 취하간주되어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 시킵니다.

4. 명의인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에 의해 지정상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명의인은 취소된 지정상품(서비스)에 관하여 지정국에 상표등록출원(이때의 출원은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을 의미하므로 1년 또는 18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의 적용은 없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에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제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도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가.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등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것

나. 국제등록에서 취소된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보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는 작거나 같아야 함

다. 지정국에서 정한 상표등록출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

제3장 국제등록의 독립성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종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사후지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종속성이 없습니다. 유일한 종속성 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시작되는 것 뿐입니다.



Q 센트럴 어택은 누구에게 제일 효과적인 제도입니까?

⇒ 의정서제도를 이용하여 각 국에 지정통보되어 심사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취소 시키기 원하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즉, 기초출원(등록)이 있는 본국관청에 이의신청(출원 중)이나 무효심판(등록된 경우)을 청구하여 본국관청에 있는 기초출원(등록)만 효력을 소멸시키면 효력이 소멸되는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각 국에서도 효력이 소멸되므로 절차적으로나 비용면으로나 현저한 장점이 있습니다.

Q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후 본국관청에 무효심판이 繫屬 중인 경우 센트럴 어택 대상이 됩니까?

⇒ 무효심판에 의해 5년의 기간 만료 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도 센트럴 어택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단 무효심판 제기일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편

본국관청 절차

제1절 국제출원의 일반원칙

제2절 특허청(본국관청)의 방식심사

제3절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4절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제5절 WIPO 하자통지 대응

제6절 사후지정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제7절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 작성방법

제8절 존속기간 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

제9절 수수료

1 Section

Madrid guide

국제출원의 일반원칙

제1장 출원인의 적격요건 등

1. 출원인 적격(본국관청으로서의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가. 한국 국민(자연인과 법인을 포함) 또는 한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한국특허청에 계속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상표등록을 가진 자

나. 2명 이상에 의한 공동출원은 전원이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

【한국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출원가능】

- ① 한국국민 2명이 공동출원인인 기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서의 출원인란에 2명 모두 기재하여야 함(기초출원인과 국제출원인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국제출원 전에 기초출원의 출원인을 양도 등을 통해 1명으로 만든 후 단독출원하면 가능)
- ②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2명인데 1명만 한국인이고 다른 1명은 한국에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국제출원서의 출원인란에 모두 기재하면 가능
- ③ 한국국민 1명이 기초출원(등록)을 2개 이상 갖고 있고 기초출원의 표장이 모두 똑같은 경우 2개 이상의 기초출원(등록)을 갖고도 국제출원 가능

【출원불가능】

- ①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2명인데 1명만 한국인이고 다른 1명은 한국에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 국제출원시 출원인란에 2명 모두 기재하거나 (외국인이 한국내 주소 등이 없음) 한국민 1명만을 기재(출원인 불일치)하는 경우는 마드리드국제출원 불가

- ② 기초출원 1건은 한국인 1명(홍길동) 지정상품이 4류, 다른 기초출원 1건은 2명(한국인 홍길동과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지정상품 7류라고 하고 2건의 기초출원의 표장이 같아서 동 2건의 기초출원을 기초(표장은 같으므로 동일 표장 제출, 지정상품은 4류, 7류)로 국제출원을 할 경우 : 국제출원서 출원인란에 홍길동만 기재하거나(출원인 불일치), 2명을 모두 기재(외국인이 한국내 주소 등이 없음)시 국제출원 불가

2.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가.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부를 한국특허청(본국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제출원서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MM2) 1부(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서류

- 1) 미국을 지정체약국에 포함한 경우 “사용의사선언서”(MM18) 1부
- 2) 유럽공동체를 지정체약국에 포함한 경우 유럽공동체의 영역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때에는 “선순위권주장신청서”(MM17) 1부



Q WIPO(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서(MM2)를 송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국제사무국에서는 기재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수리하지 않습니다. 출원서류는 송부자에게 반환되며 수수료도 반환됩니다.

3. 국제출원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가. 서면에 의한 절차

- 1) 국제출원에 따른 절차는 서면에 의해 행해지면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하여 주십시오
- 2) 서면에는 제출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십시오

- 3) 국제출원서 등의 각 양식에 기재된 각 란은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없는 사항이라도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공란으로 처리)

나. 서면작성의 언어

서면의 작성시 영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장 마드리드국제출원 서식 일람

서식번호	서식명	제출처		비 고
		한국특허청 (본국관청)	국제 사무국	
MM 2	국제출원서	○	×	본국관청에만 제출가능
MM 17	선순위권 주장신청서	○	×	
MM 18	사용의사선언서	○	×	
MM 4	사후지정서	○	○	출원인이 선택
MM 17	선순위권 주장신청서	○	○	
MM 18	사용의사선언서	○	○	
MM 5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서	○	○	
MM 11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	○	
MM 6	감축신청서		○	국제사무국에만 제출가능
MM 7	포기신청서		○	
MM 8	취소신청서		○	
MM 9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		○	
MM 10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		○	
MM 12	대리인의 선임신청서		○	
MM 13	사용권 등록신청서		○	
MM 14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		○	
MM 15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		○	
MM 16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		○	

2 Section

Madrid guide

특허청(본국관청)의 방식심사

제1장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방식심사

1. 본격적인 국제출원서(MM2)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에 흠결이 있는지 방식심사를 합니다. 방식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보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합니다.

가. 출원인 명칭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다. 국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WIPO에 직접 송부하는 국제출원 수수료와는 별개로 본국관청인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 제출서류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미납 및 부족시에는 정상수수료 납부 보정통지를 합니다.

(2008. 11. 현재)

신청서류 종류		금액(원)
국제출원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5,000
	서 면	15,000
사후지정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5,000
	서 면	15,000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3,000
	서 면	13,000
국제등록 명의변경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3,000
	서 면	13,000
절차보정료 (위임관계로 인한 절차보정시에만 부과)	전자문서	3,000
	서 면	13,000

〈참고 :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전자문서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24호서식]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용도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 대체서류 ☐ 하자보정서등 ☐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7-123456-7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포괄위임번호 기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예) 국제출원서 : 40-2007-1234567

대체서류, 하자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 KR-2007-1234567

(【국제등록번호】)

예) 사후지정서, 명의변경신청서 : 9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8-5-2007-001356625

(【대체사항(보정사항)】

【대체할 서류(보정할 서류)】

예) 대체서류 :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

하자보정서 : 하자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 국제출원제출서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항목)】

예) 대체서류 : 1, 3, 5, MM18

국제출원보정서 : 수수료, 첨부서류, 사건의 표시, 대리인

【보정방법】)

예) 국제출원보정서 : 납부, 제출, 정정, 추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수수료】 1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제2장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 중간서류의 종류

중간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출원서 등의 방식심사와 동일하며 중간서류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등제출서의 보정요구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로 기본적인 보정 내용은 수수료, 위임관계, 출원번호 및 출원인의 주소 등입니다. 위임관계에 대한 보정시에는 절차보정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출원인이 보정서 작성시에 보정료를 선택(전자, 서면에 따라 차등)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정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 대체서류제출서

대체서류 제출서는 특허청의 대체서류제출 요청에 의해서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진하여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자보정서

하자보정서의 방식심사는 출원인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여 방식심사하며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국제출원 하자보정서는 반려 대상입니다.

라. 국제출원취하서

제3장 반 려

방식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반려사항이 있을 때는 서류반려이유안내서를 통지합니다.

1. 국제출원의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서류가 아닌 경우
 2. 국제출원의 경우 기초권리의 출원인 및 명의인이 아닌 경우
 3. 사후지정의 경우 사후지정 하고자 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아닌자가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반려사유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

제4장 무효처분

특허청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무효처분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예고문이 부기됩니다.

3 Section

Madrid guide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1장 국제출원서(MM2)의 작성

1. 국제출원은 반드시 공식서식(MM2)을 통해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본국관청으로 하여금 WIPO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란
 - continuation sheet(s) : 사용한 연속용지(마지막 페이지)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 전자출원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입력하지 않음.
 - MM17 form(s) : 첨부된 MM17(선순위권주장신청서)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 For use by the applicant/office 란은
 - Applicant's reference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정리번호로서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또는 '-'를 사용한 기류기호를 기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수수료의 확인을 위해 본란에 기재된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를 기재할 것을 권합니다.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이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THE OFFICE OF ORIGIN

- “Republic of Korea” 또는 “KR”로 기재합니다. (국제출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서류 제출시 Korea라고만 기재하면 외국인들은 북한과 혼동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2 APPLICANT

- 「Name」, 「Address」란은 로마자의 음역 또는 영어로의 번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 (a)란은 출원인이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과 성표 그리고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가령 홍길동인 경우

[예] HONG, Gil-Dong (○)

HONG Gil-Dong(×)(성표가 없는 좌측 표기는 영미인에게 어느 것이 성인지 의문을 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Samsung Electronics Co., LTD

- (b)란에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920, Dunsan-dong,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c)란은 제4항목의 대리인주소나 제2(b)항목 이외의 주소로 통지서를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둡니다.

※ 출원인 A, 출원인 A의 WIPO 대리인 B, 출원인 A는 지정국인(가령 미국 등)의 현지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리인 B가 지정국인 미국 등에서 통지하는 출원공고결정서, 등록결정서 등을 직접 받아보고자 B의 사무실 주소를 (c)란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국관청은 지정국의 현지 대리인이 없으므로 출원인에게 위 통지서를 통보할 때 (c)란에 기재된 대리인 B의 주소로 통보하게 되어 B의 원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대리인 B의 사무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출원인의 주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 (d)란은 국제사무국이 출원인과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e)란은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용 언어를 선택하는 란으로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1을 체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본국관청으로 한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서 영어로 통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f)란은 기타 표시(특히 미국과 싱가포르가 요구하고 있음)
- (i)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표시하는 란으로, 출원인의 국적국을 기재합니다.
ex. Republic of Korea 또는 KR(Korea라고만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ii)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표시하는 란으로,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종류를 Corporation과 같이 기재합니다.
“Joint- Stock Company”는 미국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법인명을 기재할 때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식회사	Corporation
비법인회사	Unincorporated associ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공동사업체	Partnership
합병회사	Joint venture

-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해당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ex. Republic of Korea 또는 KR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는 「APPLICANT」란에 기재하고, 그 외의 출원인에 대해서는 출원인 1인마다 「CONTINUATION SHEET」(연속용지)에 기재합니다.

3 ENTITLEMENT TO FILE

- (a)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i)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출원인이 그 국가의 국민인 경우
 - (ii) (체약당사자가 기구인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 중 출원인이 국민인 국가명
 - (iii) 출원인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iv) 출원인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b) 출원인이 (a)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고, 그 주소나 영업소가 제2항(b)항목에서 기재한 주소가 본국관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3(b)항목 공란에 본국관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i) 제3항(a)(iii)을 체크하였다면 본국관청 영역 내에 있는 주소를, (ii) 제3항(a)(iv)을 체크하였다면 본국관청 영역 내에 있는 영업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REPRESENTATIVE (if any)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1명에 한함).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제출원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국제사무국에 위임장 또는 기타 별도의 문서를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5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 상표등록출원에 기초한 경우,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 상표등록에 기초한 경우, 그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기초등록의 출원번호는 기초출원번호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란에 시기상 각각 최우선의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6 PRIORITY CLAI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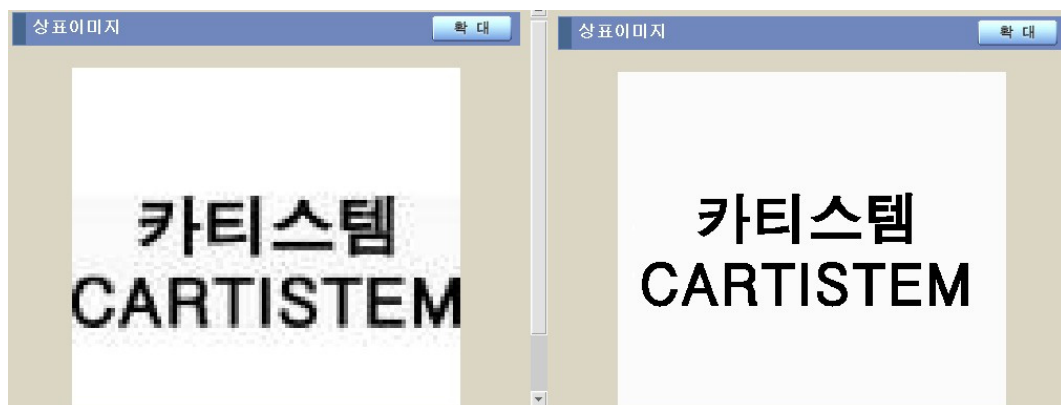
- Office of earlier filing : 최초 출원을 한 관청의 이름
ex.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Number of earlier filing : 출원번호

- Date of earlier filing : 출원일자
 - 선행하는 출원이 국제출원의 제10항목에 열거된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항목의 공란에 선행하는 출원에 포함된 10항목에 열거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이 최우선인 것을 「PRIORITY CLAIMED」란에 기재하고, 그 외의 것은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 ※ 우선권주장일이 국제출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은 우선권주장을 무시하고, 그 취지를 출원인 및 본국관청에 통지합니다. 따라서 그 우선권주장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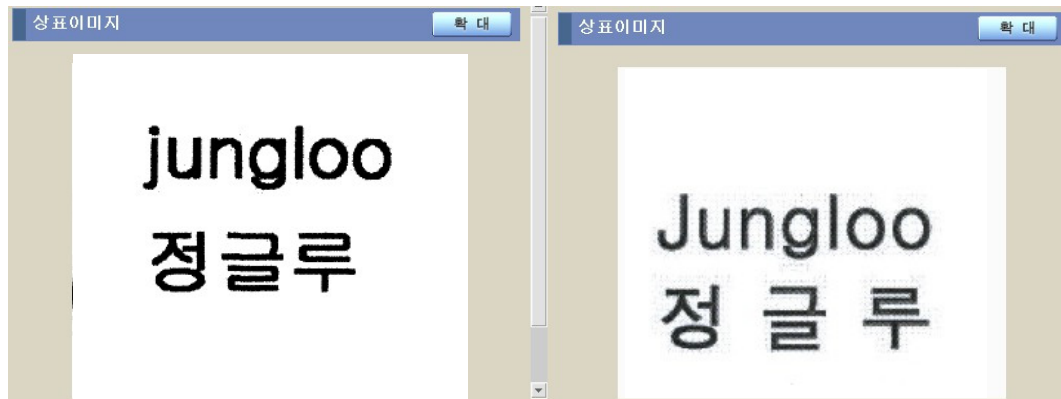
7 THE MARK

- (a) 란에 표장의 견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견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나타나는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합니다. 가로, 세로별 같은 비율로 축소, 확대한 것은 상관없으나 8cm×8cm 크기 내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견본들은 본국관청으로서의 특허청에서 표장의 불일치로 대체를 요구받은 사례입니다.

이미지 불명확



영문표기의 대문자와 소문자 표기 및 글자체의 상이



흑백표장의 색채표장 제출



- 표장기재란의 크기는 가로×세로(8cm×8cm)로 합니다.
 -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합니다.
 - 표장의 견본은 타자기로 치거나, 인쇄하거나, 붙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출원 또는 등록의 표장이 흑백인 경우 이곳의 견본 또한 흑백이어야 하고, 색채인 경우 이곳의 견본 또한 색채이어야 합니다.
- ※ 전자출원시 이미지(jpg)화일을 삽입합니다.
- (b) 출원인이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나, 본국관청이 색채로 된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첨부하는 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색채표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란으로 남겨 둡니다.

- (c) 당해표장이 표준문자로 된 표장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표장에 특수문자 또는 도형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없습니다.
- (d) 기초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표장이 색채 또는 색채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표시하는 란입니다.

8 COLOR CLAIMED

이 항에서 색채주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표장에 사용된 색채는 당연히 보호됩니다.

- (a)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는 경우 상자에 표시하고, 주장하는 색채 및 색채의 조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미국은 색채를 포함한 표장에 관해서 색채의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미국특허청으로부터 가거절통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b) 주장하는 각 색채에 대하여 그 색채로 된 표장의 주요부분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색채주장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였더라도 이 란의 기재는 임의입니다. 단 미국은 본란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색채표장이면서 표장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미기재시 가거절통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장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예시

- (a) The colors BLUE and White are claimed as a feature of the mark
 (b) The color BLUE appears in the outlining of the word CYDLE and the color WHITE appears in the inside of the word CYDLE

9 MISCELLANEOUS INDICATIONS

- (a) Transliteration of the mark

7-(a)의 표장에 라틴어 이외의 철자가 포함되었거나, 아라비아숫자, 로마숫자 이외의 숫자(예 : 한자 四)로 표기되어 있거나,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에 음역을 기재하여 합니다.(필수사항).

예) 표장

Pantastic 판타스틱

 ‘판타스틱’의 음역인 Pantastic로 기재

예) 표장

홍길동 千四

 Hongkildong 1004로 기재

(b) Translation of the mark

-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번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원인의 선택사항으로, 지정계약국의 관청에 의한 번역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국을 지정한 경우 표장이 영어 본래의 뜻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9** (c) 에 체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요망됩니다.(cf. 영어 본래의 뜻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Sweet가 맛있다, 달다가 아닌 친절하다, 상냥하다라고 쓰일 경우 등)

- (c) 표장에 있는 단어가 번역될 수 없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합니다. 본란은 특정 계약국인 싱가포르, 미국으로부터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에 대하여 번역을 요구하는 가거절통지가 통지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단, 위 2개 지정국은 본란에 기재가 있더라도 (즉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임을 표시하였더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가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d) Where applicable, check the relevant box or boxes below :

- 입체표장
- 소리표장
-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보증표장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소리, 냄새, 증명표장은 2008년 11월 현재 도입하는 것으로 상표법 개정 중이며, 보증표장은 우리나라에 해당없음

(e) Description of the mark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포함된 표장에 대한 기술 또는 설명(Description)만이 국제출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표장의 사용 또는 그 명성에 대한 진술이 아닌 표장 자체에 대한 설명만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의 경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에서 국내상표출원(기초출원)시 상표의 설명(Description)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초출원할 때 제출된 설명만을 국제출원시 이 란에 기재하라는 것임

※ 홀로그램 등의 표장은 (d)란에 종류를 기재할 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표장의 종류가 예시되지 않는 표장은 본란(9 (e))에 상표의 종류가 홀로그램 상표라는 등으로 표장의 종류를 기재한 후 설명(Description)을 추가하면 됩니다.

(f) Verbal element of the mark

- 출원인은 무엇을 표장의 본질적인 언어요소라고 생각하는지를 이곳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시는 전적으로 국제사무국의 ROMARIN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g) 표장의 어느 언어요소에 대한 보호의 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등록부에 그러한 불요구를 포함하여 달라는 지정계약 당사자의 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출원에서의 불요구의 요구는 국제등록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계약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불요구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반대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불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국제출원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0 GOODS AND SERVICES

-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범위 내에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제1조에 규정된 국제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 「Class」란에 기재함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류 구분을 2개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류 구분의 번호순으로 기재합니다.
- 「Goods and services」란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을 국제분류상의 알파벳 목록에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정확한 용어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용지를 사용하고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목록의 범위보다 좁을 수는 있으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더 넓어서는 안되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사용된 용어와 동등하거나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b)란은 1 이상의 지정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목록의 감축을 원할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감축은 각각의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감축을 하더라도 10 (a)항목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등록에 포함되고, 추가수수료를 계산할 때 고려되며,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계약국명칭의 앞에 있는 □ 속에 ×표시를 합니다. 신규 계약국이어서 국가코드, 계약국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Others:」란에 국가코드 및 계약국명을 기재합니다.
- EC를 지정하는 경우, OHIM 내에서의 이의신청, 취소, 무효심판 등 절차진행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나,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정계약당사자(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계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2 SIGNATURE BY THE APPLICANT OR HIS REPRESENTATIVE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 전자출원시 기재할 필요없음

13 CERTIFICATION AND SIGNATUR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OF ORIGIN

- 본국관청 기재란으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 (b)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Holder of the account : 계좌개설인의 성명
- Account number : 계좌번호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 : 인출지시자

(b) AMOUNT OF FEES ; METHOD OF PAYMENT

-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수수료자동계산기(Fee Calculator)에서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이며 출원서를 제출할 날짜와 가장 근접한 과거일자, 출원의 종류(국제출원, 사후지정, 존속기간갱신 등), 표장의 흑백유무, 지정국 체크에 따른 지정국수 등을 입력하면 아래의 수수료 금액으로 자동계산됩니다.

- Basic fee (기본수수료) : 표장이 흑백인 경우 653 CHF, 색채인 경우 903 CHF
- Com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 : 1개국당 100 CHF × 지정국가(개별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의 수
- Supplementary fee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 CHF(3개류까지는 무료)
- Individual fees(개별수수료) : 개별국가에서 보충수수료 및 추가수수료 대신 징수하기로 선언한 수수료로서 개별국의 환율의 변동, 국내 수수료의 변동 등에 따라 수시변동하며 선언국마다 수수료내역은 상이합니다.

※ 개별수수료 선언국과 각 선언국별 수수료 내역은 WIPO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에서 참조

- 특히 개별수료를 받는 국가(가령 중국 등)에 대하여 일부 류를 감축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 해당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조정하면 수수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류 개수는 개별수료를 받는 각 지정계약당사자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Basic fee where any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color :	903
Complementary fee : 2 x 73.00 CHF	146
Supplementary fee (including the supplementary fee linked with the irregularity in accordance with rule 12(1)) : 1 x 73.00 (3 classes free)	73
China	
Individual fee :	
Individual fee / supplementary fee : 3 x 155.00 (1 class free)	
Japan	
Individual fee (first part):	
Individual fee / supplementary fee (first part) : 3 x 171.00 (1 class free)	
United States of America	
Individual supplementary fee (mixed application) : 4 x 367.00 (0 classes free)	1468
TOTAL: (CHF)	4104

각 란에 적절한 해당 수수료를 기재한 후, 이들의 합을 GRAND TOTAL(총액)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국제사무국에서는 GRAND TOTAL(총액)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므로 총액란만 기재하고 개별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란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의 신분을 기재합니다. ex. Applicant 또는 Representative 등

해당하는 납부방법(아래중 1)에 표시합니다.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 선납한 경우 WIPO가 발행한 영수증 번호 기재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 WIPO의 은행계좌에 송부

- Payment identification : 대리인 홍길동이 납부한 경우 HONG, Gil-dong (4020070014303)라고 성명옆에 기초출원(등록)번호 병기
- dd/mm/yyyy : 납부하였거나 납부예정 일자 기재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 유럽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송부할 경우 해당없음

※ 마드리드의정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등록을 위해서는 본국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제수수료를 선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선납으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한국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를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외화송금신청서 작성 예시

송 금 인	영문 성명/상호 (Applicant)	HONG, GILDONG		송금주체	2-민간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7010101234567	외국인/해외통포 Passport No.		국 적 KOREA-KR
인	주 소(Address)	KIP0, GOV, COMPLEX BLDG, 4 920 DUNSANDONGA,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042-481-1111
	송금액 (Amount)	통화	CHF	3,192.00	결제은행수수료 (Charge) 부담
송 금 신 청 내 용	중계은행(ThruBank)				
	수취인 거래은행 (BNF's Bank)	Bank Code	CRESCHZZ80A	ABA NO 조회	SWIFT BIC 조회
내 용	수 취 인 (Beneficiary)	은행명(Name)	CREDIT SUISSE		
		주소(Address)	CH-1211 GENEVA 70 SWITZERLAND-CH		
내 용	수 취 인 (Beneficiary)	계좌번호 (Account No.)	CH5104835048708081000		
		성명(Name)	WIPO		
내 용	수 취 인 (Beneficiary)	주소(Address)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	41-22-338-9111		
내 용	송금명세	HONG, GILDONG(40-2006-0012345)			송금사유Code
세 부 내 용	☐ 사후송금방식수입		☐ 기술도입대가		
	H.S. Code		도입기술명	기술도입대가 송금인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내 용	수입신고번호	이곳은 사후송금방식수입대금/기술료			
	가격 조건		상대국		제한사항
내 용	용도		계약일.기간	/ / ()개월	기술료지급액
	거래외국환은행지정		거래 유효기간	/ /	
기 타 신 청 형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실명번호: '-' 없이 숫자		
	(57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외교포여신취급국외금융기관명:				
내 용	송금E-Mail 통보		(은행은 통보내용의 보안.전송.누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금계좌번호				
☒ 본인은 귀해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른 것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We hereby confirm that I/We will observe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kept in your bank and apply to make remittance as above.					
2007년 01월 17일		신청인 홍길동		인/서명	
		(Applicant)		(Signature)	
이 신청서는 외국환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처리하였습니다.					

□ 작성시 주의사항(www.madrid.kr-국제출원절차-수수료계산 및 납부방법-수수료 송금장 작성방법 참조)

- 송금인의 영문성명과 영문주소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하지 않을 경우 WIPO로부터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수료 하자통지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송금액(Amount)은 수수료 sheet에 기재한 Grand total액을 기재하고, 결제은행(중개은행을 말함) 수수료(Charge 12~15CHF)는 신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중개은행이 결제은행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수취은행(CREDIT SUISSE)에 입금하여 결국 수수료 부족에 따른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 ※ 국내은행이 중개은행에 송금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약 15,000원)는 별도로 납부함.
- 송금명세란에는 MM서식의 수수료 계산 Sheet의 Payment identification에 작성한 내용[HONG, GILDONG(40-2006-0012345)]을 기재하시면 WIPO에서 더 쉽게 수수료 납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은행에 비치한 서식에 위와 같은 송금명세란이 없다면 창구직원에게 Remittance Information이 있다고 말하면 처리될 것임.)



Q 국제출원서 사본 송부서를 받았는데 수수료 납부시 주의사항에서 ※ 특히 수수료 하자통지의 보정절차에서 수수료 납부시 주의사항 미준수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보정 안내 절차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수수료를 미납 또는 부족납부한 경우 ①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치유 않으면 포기 간주한다는 내용의 하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② 하자통지일부터 2개월내 치유를 하지 않으면 ①번의 하자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재차 발송합니다. 하자통지일부터 2개월내 치유를 하지 않다가 ②의 통지서를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결제은행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하자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의 수수료납부 독촉없이 그 국제출원은 포기간주됩니다. 따라서 하자통지일부터 2개월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우선권증명서는 제출합니까?

⇒ 우선권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PRIORITY CLAIMED 란에 필요사항을 기재 하는 것으로 우선권주장은 인정됩니다.

Q 색채주장은 기초출원 · 기초등록에서 주장되어야 합니까?

⇒ 기초출원(등록)에서 색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도 국제등록출원에서 색채의 주장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기초출원(등록)의 상표와 동일한 색채여야 합니다.



Q 9 MISCELLANEOUS INDICATIONS (f) Verbal element of the mark의 칭호는 (a) Transliteration of the mark의 로마자표기와 다른 것인가요?

⇒ (a)의 음역은 표장이 로마자랑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f)는 표장이 로마자, 한자, 도형 그밖의 어떤 것일지라도 칭호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그 음을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것은 도형, 특수문자상표라도 검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지정상품이 많이 기재하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나요?

⇒ 꼭 필요한 지정상품만 존재한다면 국제사무국 또는 지정체약국에서의 불필요한 작업(가령 상품의 표시, 분류에 대한 하자통지, 가거절통지)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권리화를 할 수 있지만 꼭 사업을 하지 않을 불필요한 상품을 많이 기재하면 쓸데없는 분쟁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출원의 지정상품이 속한 류구분은 그대로 국제출원에 사용해도 됩니까?

⇒ 2007. 1. 1.부터 NICE 9판에 따른 분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등록이 된 것은 지정하고자 하는 상품이 속한 구분이 현 시점에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NICE 9판에 따른 분류에 맞게 국제출원하여야 합니다.



제2장 국제출원서 별첨서류 작성방법

1. 사용의사선언서(MM18)의 작성방법

가.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에 의하면, 지정계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용의사선언서를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미국이 위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미국을 지정계약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MM18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지만, 별도 서식을 원하지 않으며 지정하는 것만으로 표장의 사용의사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MM18을 국제출원서(MM2)나 사후지정서(MM4)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 항목만 기재하면 됩니다.

- 「Signature」란에는, 출원인, 대리인 또는 그밖에 권한 있는 자 (예: 대표이사, 임원 등)가 날인 또는 서명
- 「Date of execution」란에는 서명 날짜를 일/월/년의 순서로 기재(dd/mm/yyyy)
- 「Signatory's Name (printed)」란에는 서명자의 성명 기재
- 「Signatory's Title」란에는 기재자의 직위를 기재하되 직위가 없는 경우 “Applicant”로 기재

※ Date of execution, Signatory's Name (printed), Signatory's Title 란은 수기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기로 작성한 경우 대체서류 제출 요구의 원인이 됩니다.)

■ MM18만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MM18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어 MM18을 제출하라는 하자통지를 수령한 경우 등) INFORMATION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항목도 기재

(a) 「Basic application number」 기초출원번호

「Date of the basic application」 기초출원일자

(b) 「Basic registration number」 기초등록번호

「Date of the basic registration」 기초등록일자

(c)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사후지정에 대한 선언인 경우 해당 국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International Bureau's reference」 WIPO에서 발송된 하자통지서에 기재된 국제사무국의 참조번호 기재

「Name of applicant/holder」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기재

2. 사용의사선언서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취급

가. 국제사무국은 미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출원을 접수하였을 때 사용의사선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령, 사인이 안 된 경우, 서명일의 미기재 등) 국제사무국은 신속하게 출원인과 본국관청에 통보합니다.

나. 본국관청의 국제등록출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의사선언서가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 사용의사선언서는 국제등록출원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의사선언서가 이 2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국제등록출원은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국제사무국은 미국에 대한 지정수수료(개별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선순위권주장 신청서(MM17)의 작성방법

가. 유럽공동체상표(CTM)제도 하에서 하나의 표장을 회원국에 이미 등록하고 그 회원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동일 표장을 유럽공동체를 지정하여 국제출원할 때, 이전의 그 회원국의 상표등록에 대한 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국제출원서(MM2)와 함께 선순위권주장 신청서(MM17)를 제출합니다.

나. 국제사무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선순위권주장의 효과

- 이전 상표를 포기, 양도하거나 또는 이전 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 공동체상표의 소유자는 이전의 상표가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가 가지게 될 동일한 권리를 계속하여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국제등록부에의 기록

- MM2와 동시에 신청된 선순위권주장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선순위권 주장에 관해서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서 심사가 행해집니다. 심사 결과 주장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OHIM으로부터 국제사무국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부 및 공보에의 공고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OHIM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통보되어 기록됩니다.

마. 작성요령

- 1) 동일국가에 복수의 국제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 국제출원 건마다 MM17을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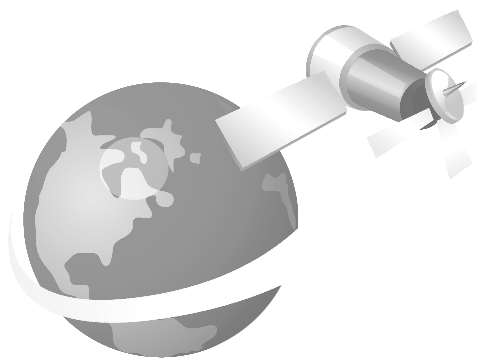
예) 국제출원 KR20080000001과 KR20080000002 가 공통으로 유럽공동체(EM)를 지정하고 스페인(ES)이 선순위권주장 대상국인 경우

⇒ 국제출원 KR20080000001 + MM17(ES 체크), 국제출원 KR20080000002 + MM17(ES 체크)

2) 선순위권주장 대상국이 복수국인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MM17을 작성합니다.

예) 국제출원 KR20080000001에서 유럽공동체(EM)를 지정하고 스페인(ES), 그리스(GR)가 선순위권주장 대상국인 경우

⇒ 국제출원 KR20080000001 + MM17(ES 체크) + MM17(GR 체크)



4 Section

Madrid guide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제1장 국제출원서(MM2) 합치심사의 의의

- 합치심사라 함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로 출원인이 동일한지, 표장이 일치하는지,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가 기초출원(등록)에 기재된 것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합니다.
- 한편 영문으로 표기된 지정상품에 분명한 오타가 있거나, 지정상품이 NICE 9판에 따른 분류에 맞지 않게 류구분되어 있거나 예전에 WIPO로부터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자통지된 사례가 있는 영문지정상품이 기재된 경우 등 WIPO로부터 하자통지가 올 것이 예상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대체서류제출요구의 형태로 출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2장 대체서류제출 요청

-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거나, 기초출원(등록) 권리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체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서면제출인 경우 출원인은 대체할 페이지만 대체하여 제출하면 되고, 전자출원일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국제출원서 전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체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예시〉

1. 지정상품에 관한 하자

○ 지정상품의 표시에 관한 하자.(10번 항목)

-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영문상품 중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이 있으므로 기초권리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신 후 상품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 상품명칭의 수정요청은 NICE 9판, WIPO상품명칭하자통지 목록, 미국/영국 상표청의 상품목록에 근거하였습니다.

18류

- Imitation leather는 기초등록의 범위를 벗어납니다.(기초등록상품 인조모피)

25류

- clothing of leather(가죽제옷)은 기초등록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belts(clothing)은 기초등록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Costumes는 Masquerade costumes을 참고하여 주십시오.(NICE 9판)
- uniforms for sports는 exercise clothing(WIPO하자목록) 또는 Athletic uniforms(US상표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 출원인의 적격에 관한 하자.

-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인입니다. 국제출원서의 출원인도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 출원인 주소의 표시에 관한 사항(2번 항목 및 연속용지 2번 항목)
 - 2-(c)에 기재한 대리인 주소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 2-(d)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등도 회사 고유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속용지의 출원인 사항도 수정하여 주십시오.
- 출원인 적격에 관한 하자(3번 항목)
 - HAI INC는 대한민국 법인입니다.
 - 따라서 3-(a)-(iii)의 선택을 삭제하고, 3-(a)-(i)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또한, 3-(b)에 기재한 주소도 삭제하여 주십시오.
 - 연속용지의 3번 항목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3. 기초권리 및 우선권 주장에 관한 하자.

- 기초등록일자에 관한 하자(5번 항목)
 - 기초등록번호 4500025950000의 등록일자는 2001년 2월 20일입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 MM18의 일자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국제출원서의 접수일이 기초출원일로 부터 6월이 초과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권 주장 항목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기초권리가 2개 이상일 경우, 10번항목의 지정상품중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기초출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All the goods listed in class 09

4. 표장에 관한 하자

- 표장의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이미지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 기초출원의 표장은 흑백이나 국제출원서에 첨부된 표장은 칼라입니다. 기초출원의 표장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5. 기타사항

- 표장에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9-(1)항목에 표장의 한글 문자 “홍길동”의 음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Hong gil dong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개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국가는 매 지정국마다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가 100CHF가 가산되므로 지정국을 확인 후 수수료를 다시 계산하여 주십시오.
- 일부국가에 대하여 류의 감축이 있습니다. 개별수수료 징수국가의 경우 감축된 류는 수수료 계산시 반영됩니다. 단, 개별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국가는 추가수수료에는 감축이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계산기준일자(본 국제출원의 수수료 계산 기준일은 2007.10.3입니다.)가 달라 수수료의 총액이 상이합니다.

7. 첨부서류에 관한 하자

- 첨부서류에 관한 하자.
 - MM18서식의 Signatory's Title이 누락되었습니다. 타이핑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예) applicant

제3장 합치선언 및 WIPO 송부

국제출원서 및 대체서류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서를 합치선언(인증)을 하게 되며 국제출원서는 WIPO로 전송합니다. 동시에 출원인에게는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가 통보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상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Section

Madrid guide

WIPO 하자통지 대응

제1장 하자의 종류

1.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관한 하자

가. 상품 및 서비스가 적절한 류 단위로 그룹화되어 있지 않거나, 각 그룹 앞에 해당하는 류의 번호가 명기되지 않거나 그 번호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자체 제안을 만들어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제안된 분류 및 그룹화의 결과로 납부해야할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 금액도 통보)

나. 본국관청은 제안된 분류 및 그룹화에 대한 의견을 제안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출원인의 의견에서 기원하거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관청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 본국관청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의견을 고려한 후에 이를 철회, 수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수정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통보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금액의 변경 결과도 표시함)

라. 제안된 재분류의 결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다음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 1) 본국관청이 아무런 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안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 본국관청이 의견을 통보한 경우, 국제사무국이 제안의 수정 또는 확정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3) 이 수수료를 규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분류에 관한 하자 통지서 사례

IRREGULARITY(IES)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BE REMEDIED BY THE OFFICE OF ORIGIN (Rule 12).

2. The International Bureau considers that the goods and/or services lis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e not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Rule 9(4)(a)(xiii)). The International Bureau proposes therefore to transfer the following terms:

"towels for spectacles" from class 24 to class 21 - see position C/0548 of the alphabetical list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Ninth Edition).

Moreover, please amend the terms to "cloths for wiping spectacles".

"leather clothes" from class 24 to class 25 - see position C/0604 of the alphabetical list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Ninth Edition).

The proposed grouping may entail the payment of further fees (see attached accounting statement).

2.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에 관한 하자

가. 국제사무국이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사용된 용어가 분류 목적상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언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동시에 알립니다.(국제사무국은 대체 용어를 제안하거나 그 용어의 삭제를 제안할 수 있음)

나. 본국관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 치유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관청의 제안이 수용할만하거나 관청이 국제사무국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용어를 적절히 변경합니다.

다. 만일, 관청의 제안이 수용 가능하기는 하나 상품 및 서비스 분류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으면, 분류에 관한 하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라. 본국관청의 제안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 1) 본국관청이 당해 용어가 분류될 특정 류를 명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용어를 국제출원에 나타나 있는 대로 국제등록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그 국제등록에는

- 국제사무국의 견해로는 그 용어가 본류 목적상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언어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표시가 포함됩니다.
- 2) 본국관청이 특정 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용어를 삭제하고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 3) 기한내에 아무런 제안이 없으면 국제사무국의 견해와 함께 국제등록에 기재됩니다.
- 표시에 관한 하자 통지서 사례

application.

The examination of this application has revealed the irregularities which are listed hereafter:

1. The International Bureau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terms of the list of goods and/or services are linguistically incorrect (Rule 13):

"Resting place services" (class 43)

부정확한 표현이므로 아래 서비스명칭을 제안(류변경은 없음)

The International Bureau suggests therefore the following: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 temporary accommodation" (class 43)

A proposal as to different terms may be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ny such proposal must be communicated **THROUGH THE OFFICE OF ORIGI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resent notification, that is by 13 September 2007**. If no proposal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is made within this period, the International Bureau will include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terms as appearing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an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in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specified terms are linguistically incorrect.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Geneva, 13 June 2007

Annex to the irregularity notic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ased on the national application or the national registration No. 4100563590000

Our ref.: EN-I/386334001/AZ
Office ref.: KR20070000123
Applicant ref.: T07-6001/MM

Swiss Francs

Basic fee where no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color (Protocol application):	653.00
Individual fee (Protocol application): AU	356.00
Individual fee (Protocol application): SG	200.00
Total due:	1,209.00

To date, your payment is:	
- payment 07/0018990 on 11/05/2007	1,209.00

3. 출원인이 치유해야 하는 하자

가. 본국관청이 치유해야 하는 하자 이외의 모든 하자는 출원인이 치유해야 합니다.

나.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하자 :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결함으로 3개월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통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모든 하자가 기간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사용의사선언에 관한 하자 : 본국관청의 국제출원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2월의 기간 이후에 수령된 경우, 그 국제출원은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는 체약국에 대한 지정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수수료에 관한 하자

- 1) 부족한 또는 미납된 수수료 금액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제안의 결과로 발생한 추가 수수료는 본국관청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에 관한 하자 통지서 사례

The examination of this application has revealed the irregularities which are listed hereafter:

IRREGULARITY(IES) CONCERNING THE FEES: TO BE REMEDIED BY THE APPLICANT OR THE OFFICE OF ORIGIN

1. The amount of the fees received is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Rule 9(3)). Missing amount: (see accounting statement enclosed).

In order to remedy this irregularity, the missing amount should be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 either by a check drawn in Swiss currency;
- or by transfer to WIPO's bank account CH35 0425 1048 7080 8100 0, SWIFT code CRESCH ZZ12A, Crédit Suisse, CH-1211 Geneva 70;
- or by transfer to WIPO's postal check account N°12-5000-8, Geneva ;
- or by authorizing the International Bureau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from a sufficiently credited account opened with WIPO.

The correction of the above-mentioned irregularity(ies) should be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in a three-month time limit from the date of this notification (expiring on 11 December 2007), failing whic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ill be considered abandoned. In that case, any fees pai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will be reimbursed, after deduction of an amount corresponding to one-half of the basic fee.

Annex to the irregularity notic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ased on the national application or the national registration No. 4020070022056

Our ref.: EN-I/392362501/HW
Office ref.: KR20070000137
Applicant ref.: TZ-07531

Swiss Francs

Basic fee where any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color
(Protocol application):
Individual supplementary fee
(mixed application) : US

정당한 국제출원 수수료

903.00

812.00

Total due:

1,715.00

Balance in our favour

1,715.00

향후 납부해야 할 수수료

제2장 하자의 치유

1.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하자(Rule12)

국제사무국은 분류와 표시에 관한 하자 통지서를 본국관청과 출원인 모두에게 통지하며 본국관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본을 재송부하면서 송부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수료에 관한 하자

국제사무국은 분류와 표시에 관한 하자 통지서를 본국관청과 출원인 모두에게 통지하며 본국관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본을 재송부하면서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인에게 송부하는 하자통보문 예시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특 허 청

1. 국제출원인:

- (1) 성명: Latona Co., Ltd.
(2) 주소: 54-67 1Ga, Dachang-Dong Jung-Gu, Busan Korea

2. 국제출원인의 대리인:

- (1) 성명:
(2) 주소:

3. 사건의 표시:

- (1) 서류의 종류: 국제출원서
(2) 서류 접수일자: 2007.12.13
(3) 특허청 참조번호: KR-2007-0000297

4. 통지의 내용 및 치유 방법: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귀하가 제출하신 국제출원서에 하자가 있다고 통지되었습니다.
(자세한 하자내용은 붙임의 하자통지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각 하자 내용 및 치유방법을 참조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대한 하자

- 특허청에서 발송한 날(상단 발송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등제출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영문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문의견서는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에 대한 하자

- 국제사무국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보정(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 (영문 통지서 참조)

※ 안내 : 수수료 납부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 ▶ 납부자명과 함께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payment identification 또는 하자통지서의 WIPO참조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송금인의 영문주소를 명시하여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 송금시 결제은행 수수료는 송금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결제은행 수수료는 각 은행에 문의) 송금인이 미 부담시에는 그 금액만큼 제외된 채 WIPO에 송금되어 하자통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기한내 미 납부시에도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에서의 방식심사가 늦어지고, 그만큼 각 지정국 진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특히 수수료 하자통지의 보정절차에서 위 주의사항 미준수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보정 안내 절차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www.madrid.kr-국제출원절차-수수료계산 및 납부방법-수수료 송금장 작성방법 참조

2008. 2. 14.

특 허 청 장



○ 하자통지서에 대한 국제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예시

접수 2008.02.20.

【서지사항】

【서류명】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제출구분】 하자보정서등
【제출인】
【명칭】 Latona Co.,Ltd.
【출원인코드】 1-2006-025909-6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KR-2007-0000297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8-5-2008-0004581-34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

Latona Co.,Ltd. (인)

【첨부서류】 1.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_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Response to Notice Concern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특허청참조번호]KR-2007-0000297

※ 별첨 영문 의견서

International Application based on application No. 4020070026160
 for the mark LATONA
 in the name of Latona Co.,Ltd.
 WIPO ref. : EN-I/421790201/AZ
 Office ref. : KR20070000297
 Applicant ref. : 120060259096

Dear Alison Züger,

We acknowledge the receipt of Notice Concern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n 04/02/2008.

We would like amend the following term :

“Glassfiber for building” (class 19) to “Building materials made of glass fibers” (class 19)[as the International Bureau suggested].

Sincerely yours,

LATONA CO., LTD.



PRESIDENT LEE JAE SOK

6 Section

Madrid guide

사후지정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1. 사후지정의 의의

- 사후지정이란 국제출원된 상표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이후 주로 계약당사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 국제등록 시에 해당 계약국에서의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 거절, 무효 또는 포기에 따라 표장이 그 계약국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다가 그러한 거절, 무효 또는 포기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제출원 제출 시에 해당 계약국이 의정서 계약국이 아닌 경우
 - 그리고 사후지정은 계약당사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 외에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국제출원시 특정 계약국에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가 국제등록 후 그 특정 계약국에 감축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후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후지정의 적격

- 사후지정 시에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명의인의 적격(국적, 주소, 영업소)을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국은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후지정서의 제출처

- 국제등록명의인은 사후지정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권리자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합니다.

권리자(명의인)의 계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 ① 명의변경이 없었던 국제등록의 경우 : 국제출원이 제출된 관청(본국관청)이 소속된 계약당사자의 관청.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한 경우 한국 특허청임
- ② 명의변경이 있었던 국제등록의 경우 : 신명의인이 명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관청.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신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도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4. 사후지정 일자

-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된 사후지정은 국제사무국의 수령일.
-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사후지정은 관청의 수령일. 다만, 관청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5. 존속기간

- 사후지정하의 존속기간은 사후지정의 기초가 된 국제등록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날에 만료합니다.

제2장 사후지정서 작성 요령

- For use by the holder, this subsequent design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란은
 - continuation sheet(s) : 사용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 ※ 전자출원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MM17 form(s) : 첨부된 MM17(선순위권주장신청서)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권리자의 서류 참조번호를 기재합니다.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이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신청하는 사후지정에 대한 국제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하나의 사후지정은 국제등록 1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Name : 권리자의 성명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권리자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자신의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후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국제등록부 상의 성명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국제등록 권리자가 2명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기타 권리자에 대해서는 권리자 1명마다 연속용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Address : 권리자의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기재된 주소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 국제사무국은 사후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3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 국제출원시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의 사항들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임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습니다.

4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SUBSEQUENTLY

- 보호의 확장을 구하는 각 계약국명 앞에 있는 ☐ 속에 ×표시를 합니다.
- 열거되지 않은 계약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가입이 발효되었는지 확인하고 「Others」란에 국가코드(또는 계약국)을 기입합니다.

- EC를 지정하는 경우, 제3자가 유럽상표청(OHIM)에 이의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때 사용될 절차언어(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지만,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국체약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5 GOOD AND SERVICES CONCERNED BY THE SUBSEQUENT DESIGNATION 다음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a) : 4항목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당해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을 사후지정하는 경우, 이 란에 표시합니다.
- (b) : 4항목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당해 국제등록에 포함된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연속용지에 기재된)를 사후지정하는 경우, 이 란에 표시합니다.
- (c) : 연속용지에 표시된 체약당사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에 한해 사후지정 되고 ; 4항목에 지정된 나머지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에 대하여 사후지정됩니다.

6 MISCELLANEOUS INDICATIONS

이 항목은 지정된 체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혹은 체약당사자에 의한 거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작성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국제출원시 이미 한 경우에는 여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한 추가표시
 - (i) 관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기재하는 란으로 관리자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 (ii) 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 기재하는 란으로 그 법인의 법적성격,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해당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b) 번역

표장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공란에 이 단어들의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로의 번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 표장의 색채부분 표시

국제출원에서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한 경우, 이곳에 표장의 색채에 관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d) 표장에 있는 단어가 번역될 수 없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합니다.

7 DATE OF EFFECT OF THE SUBSEQUENT DESIGNATION

(a), (b)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 수령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 수령일로부터 사후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 (a) : 국제등록의 갱신 후에 사후지정이 발효되도록 하고자 할 때 표시합니다.
- (b) : 국제등록부에 다음과 같은 변경(change)이 등록된 직후에 사후지정이 발효되도록 하고자 할 때 표시하며,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란에 표시합니다.

8 SIGNATURE BY THE HOLDER OR HIS REPRESENTATIVE

- 국제등록명의인이 사후지정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본국관청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국관청은 국제등록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서명을 요구합니다.

9 DATE OF RECEIPT AND DECLARATION BY THE OFFICE

- 이 항목은 출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10 OFFICE PRESENTING THE SUBSEQUENT DESIGNATION

- 이 항목은 출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후지정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웹사이트 (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정의 수수료 금액은 국제등록의 갱신일까지 사후지정이 유효한 연수(기간)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제출원과 동일합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 (a)란과 같음

(b) AMOUNT OF FEES ; METHOD OF PAYMENT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

- Basic fee (기본수수료) : 300 CHF
 - Com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 : 1개국당 100 CHF × 지정국가(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의 수
 - Individual fees : 개별국가에서 보충수수료 및 추가수수료 대신 선언한 수수료
- ※ 개별수수료 선언국과 각 선언국별 수수료 내역은 WIPO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에서 참조

각 란에 적절한 해당 수수료를 기재한 후, 이들의 합을 GRAND TOTAL(총액)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국제사무국에서는 GRAND TOTAL(총액)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므로 총액란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터의 작성방법은 국제출원서(MM2)의 〈FEE CALCULATION SHEET〉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분과 같습니다.

제3장 첨부서류(MM18와 MM17)의 취급 등

1. 사용의사선언서(MM18)의 작성방법

- 제3절 제2장에서 설명한 사용의사선언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사용의사선언서의 취급

가. 국제사무국은 미국을 사후지정한 사후지정서를 접수한 때에 사용의사선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에게, 사후지정서가 본국관청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본국관청에도 통보합니다. 하자통지일로부터 3개월 간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의사선언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한 제출이 인정됩니다.

나. 하자가 이 3개월의 기간에 정정된 경우 사후지정일자는 지정된 모든 사후지정국에 관하여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의사선언서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됩니다. 단 사후지정서가 본국관청에 의해 제출되고 본국관청이 사후지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의사선언서를 접수한 경우 이 사후지정은 본국관청에 접수된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자가 이 3개월안에 정정되지 않은 경우 사후지정서 전부(미국을 포함한 사후지정된 모든 국가)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기본 수수료의 반(150CHF)을 인출하고 나머지 지불된 모든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선순위권주장 신청서(MM17)의 작성방법

- 제3절 제2장에서 설명한 국제출원시 제출하는 선순위권주장 신청서의 작성요령과 같습니다.

7 Section

Madrid guide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 작성방법

제1장 국제등록명의변경의 개요

1.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의 의의

-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 체약국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 제9조의 명의변경은 원인(계약, 상속, 판결 또는 법률의 시행 등)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국제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국제등록명의인”이라고 정의하므로, 국제등록부에 명의변경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국제등록의 전(前) 소유자를 “국제등록명의인”이라고 칭하고, 새 소유자를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2. 양수인 적격

- 양수인은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대한민국(의정서에만 가입) 국민으로서, 국제등록부상 지정체약국이 아래의 마드리드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인 경우 그 명의변경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인 양수인이 마드리드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 내에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마드리드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국이 지정체약국이더라도 명의변경은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제상표출원가이드 Part II Paragraph 60.04 WIPO Publication No. 455(E)]
- ※ 마드리드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 : 이집트 등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와 독일 등 협정과 의정서 모두 가입한 국가

※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2008. 11월 현재 6개국) : Algeria(DZ), Egypt(EG), Kazakhstan(KZ),
Liberia(LR), Sudan(SD), Tajikistan(TJ)

3. 명의변경 절차

가. 명의변경 등록 신청의 제출

○ 권리인(양도인)(Rule25(1)(b)) : 국제등록권리인(또는 등록된 대리인)은 공식서식(MM5)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권리자(명의인)의 계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 ①명의변경이 없었던 경우 : 국제출원이 제출된 관청(본국관청)이 소속된 계약당사자의 관청. 한국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한 경우 한국특허청임
②명의변경이 있었던 경우 : 신명의인이 명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관청. 신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신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도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 양수인(Rule25(1)(b), Rule25(2)(a)(iv)) : 양수인의 계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

※ 양수인의 계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new owner(the transferee)] : 양수인이 국민인 계약당사자의 관청 또는 양수인이 주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관청. 즉, 양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양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나. 대한민국 특허청(KIPO)을 통한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별지 제24호서식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27호서식[MM5(E)]
- 양도양수증(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는 이전에 의한 경우이며, 상속 및 합병은 해당서류

국적	제출서류	비고
외국인(외국 법인)	양수양도증 (법인)국적증명서 - 공증 필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국문번역문 첨부(공통) (특허법 시행규칙 4조)
대한민국 국민(법인)	양수양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재외자(외국인)가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제출시
 -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외국 법인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신고서류, 법인등기(영업소) 등본

제2장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각 란은 영어로 기재하여 합니다.
-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첨부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의
 - Holder's reference : 국제등록명의인의 서류 참조번호로 로마자 · 숫자, 「-」 또는 그 조합으로 기재합니다.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으로 공란으로 둡니다.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해당 국제등록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국제등록명의인로부터 동일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다수의 국제등록에 대한 전부이전(Total change in ownership)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국제등록명의인에게 통지되지 않아서 국제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통지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a)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 2명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 외의 양도인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새소유주(양수인)

- 양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교신용 주소는 양수인이 자신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통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둡니다.

4 양수인 적격

- (a) 다음 항목에 대해 적절히 표시합니다.
- (i)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양수인이 국민인 체약당사자국 이름
 - (ii) (체약당사자가 기구인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 중 양수인이 국민인 국가명
 - (iii) 양수인이 체약당사자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명
 - (iv) 양수인이 체약당사자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명
- (b) 양수인이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체약당사자인 기구의 국민이 아니고, 제3항(b)항목에서 기재한 그의 주소가 (a)(iii) 또는 (a)(iv)의 영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4(b)항목에서 그 영역 내에서 영업소 주소 또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i) 제4항(a)(iii)을 체크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양수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ii) 제4항(a)(iv)을 체크하였다면 계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양수인의 산업적 또는 상업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양수인의 대리인 선임

- 양수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양수인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 란에 기재함으로써 재선임됩니다.

6 소유권 변경 범위

(a) 전부명의변경(Total Change in Ownership)

- 명의변경이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 관련되고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경우 체크합니다.
- 명의변경을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일부 지정계약당사자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상자에 체크하고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b) 일부명의변경(Partial Change in Ownership)

- (i) 소유권 변경이 아래 공란에 기재된 지정계약당사자에 한해 기록되는 경우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한 소유권 변경으로 이해) ;
및/또는(and/or)
- (ii) 소유권 변경이 아래 공란에 기재된 상품과 서비스 목록에 한해 기록되는 경우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 변경으로 이해)
- 여백이 부족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합니다.

7 기타표시

- 양수인에 관한 표시
 - (a) 양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국적을 표시합니다.
 - (b)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적성격,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국가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국가내의 영역단위를 표시합니다.
- 양수인은 교신용 용어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중 1을 체크합니다.

8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은 국제등록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청

-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를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 관청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 (a)란과 같음

(b) AMOUNT OF FEES ; METHOD OF PAYMENT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

수수료 : 국제등록 1건당 177 CHF

GRAND TOTAL(총액)에 기재합니다.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터의 작성방법은 국제출원서 (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분과 같습니다.



Q 일부 지정상품(서비스)만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명의변경은 일부 지정상품(서비스)별로 가능합니다. 또한 체약국별로 명의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일부 지정상품(서비스)만 명의변경하거나, 일부 지정국만 명의변경한 경우 국제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 양수인이 해당 국제등록의 지정체약국의 일부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와 관련하여 새 명의인이 되는 경우, 명의변경 되기 전의 해당 국제등록번호(가령 855719)의 국제등록부에 명의변경 사항이 등록되고, 이전된 부분은 별도의 국제등록이 만들어지며 이때 별도의 국제등록번호는 대문자와 기존 국제등록번호로 이루어집니다(예 : 855719A).

구분	일부 상품		일부 지정국		모든 상품 및 지정국	
번호	855719	855719A	855719	855719A	855719	855719
권리자	홍특허	김상표	홍길동	김상표	홍길동	김상표
지정상품	1류, 2류	1류	1류, 2류	1류, 2류	1류, 2류	1류, 2류
지정국	US, JP	US, JP	US, JP	US,	US, JP	US, JP

Q 명의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인에게(본국관청 경유시 본국관청에게도) 수수료가 미납되었다는 등의 하자통지가 송부됩니다. 하자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하지 않으면 명의변경 신청은 포기간주됩니다.

Q 명의인 명칭, 주소 변경은 명의변경신청으로 되는지?

⇒ 소유권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절차는 별도의 절차가 됩니다. 명의인 명칭, 주소 변경은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9)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8 Section

Madrid guide

존속기간 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

제1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개요

1. 국제등록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존속기간의 만료 후 10년의 기간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신청은 갱신수수료를 지불하여 국제등록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갱신절차에서 국제등록에 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즉 명의인의 명칭 또는 주소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에 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3. 국제사무국은 존속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국제등록명의인(대리인)에게 비공식적인 통지를 송부하는데 정확한 만료일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합니다.(비공식 통지서가 명의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규칙에서 정한 할증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존속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할증 수수료 : 갱신 기본수수료의 50%를 추가)
5. 갱신의 등록, 통지 및 공고
 - 가. 국제사무국은 갱신수수료가 만료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납부된 경우에도 갱신을 갱신예정일로 국제등록부에 등록합니다. 갱신의 효력발생일은 각 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지정에 대하여 동일합니다.
 - 나. 국제등록이 갱신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지정체약국 관청에 갱신을 통지하고 국제등록명의인에게 등록증을 송부합니다. 국제등록이 특정 체약국에 대하여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관청에 통지하며 갱신에 대한 데이터는 공보에 공고됩니다.

6. 보충갱신

국제등록이 지정체약국 일부에 대하여만 갱신된 후, 만료일 이후에 갱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갱신하는 경우, 이를 “보충갱신”이라 하며,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7. 관청을 통해 국제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기초적인 방식심사를 거친 후 하자가 없으면 관청의 서명을 날인하여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갱신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제등록부에 전체 무효 또는 포기가 등재된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무효인 경우 무효가 등재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갱신됩니다.

제2장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작성방법

-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각 란은 영어로 기재합니다.
-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newal contains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연속용지 매수를 기재합니다.
-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의
 - Holder's reference : 국제등록명의인의 서류 참조번호로 로마자 · 숫자, 「-」또는 그 조합으로 기재합니다.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이 기재하는 란으로 공란으로 둡니다.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국제등록명의인은 갱신할 국제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갱신은 국제등록 1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Name of the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 국제등록명의인이 2명이상인 경우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 외 명의인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합니다.

3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Renewal is Requested

-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체크합니다. [거절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계약당사자도 포함하여 체크합니다.]

4 서명

-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대리인 또는 제출관청의 성명(명칭)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 (a)란과 같음

(b) AMOUNT OF FEES ; METHOD OF PAYMENT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 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

• Basic fee (기본수수료) : 653 CHF

※ 갱신예정일 이후의 늦은 납부에 대한 부가수수료 326.50 CHF

• Com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 : 1개국당 100 CHF × 지정국가(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의 수

• Supplementary fee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 CHF

• Individual fees : 개별국가에서 보충수수료 및 추가수수료 대신 선언한 수수료

※ 개별수수료 선언국과 각 선언국별 수수료 내역은 WIPO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에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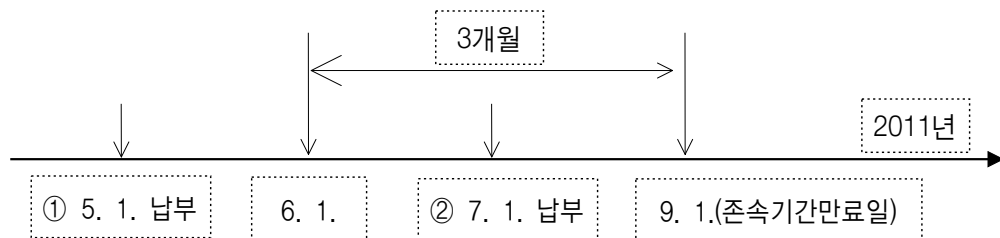
각 란에 적절한 해당 수수료를 기재한 후, 이들의 합을 GRAND TOTAL(총액)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국제사무국에서는 GRAND TOTAL(총액)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므로 총액란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터의 작성방법은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분과 같습니다.



Q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이상 전에 미리 갱신하였는데, 그 후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는?

⇒ 이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①의 경우 인상분 추가납부요) 또한 기간만료일의 3개월전 이후의 납부는 납부일에 유효한 금액이 적용됩니다.(아래 ②의 경우 추가납부할 필요 없음)



Q 존속기간갱신신청서 3항(갱신하고자 하는 지정국 선택)에서 거절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지정계약국도 선택하라는 의미는?

⇒ 전체거절이든 부분거절이든 존속기간갱신신청서 현재 해당 지정계약국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절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존속기간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9 Section

Madrid guide

수수료

제1장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국제출원을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국내수수료와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먼저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한국특허청에서 기초출원(등록)과 국제출원간의 일치여부를 방식심사하는데 되는 비용과 국제출원서 등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 납부방법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별 납부수수료는 본장 제2절 제1장에 기재된 수수료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2장 WIPO(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1. **수수료 납부주체와 납부처** : 국제출원인 직접 국제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금융 계좌에 납부합니다.(마드리드 국제출원은 PCT 국제출원과 달리 한국특허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2. **납부기간** : 국제출원에 필요한 수수료는 (국제출원서가 WIPO에 송부되기 전에) 미리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정서 제8조 제2항) 한국특허청에서는 WIPO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한 날에 출원인에게도 국제출원서를 송부하였음을 통지하는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제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납으로 인한 출원인의 불편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국제수수료 지불 화폐 : 스위스프랑(CHF)

4. 국제수수료의 종류

가. 기본수수료 : 국제공고시 색채표장이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흑백유무에 따라 다른데 표장이 흑백인 경우 653CHF, 색채인 경우 903CHF입니다.

나.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CHF이며 3개류까지는 무료입니다.(개별수수료 징수를 선언한 국가 이외의 국가를 지정한 경우 적용)

다. 보충수수료 : 1지정국당 100CHF입니다.(개별수수료 징수를 선언한 국가 이외의 국가를 지정한 경우 적용)

※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를 비개별수수료라고 칭합니다.

라. 개별수수료 :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징수 대신 개별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국가 또는 기구(2008년 11월 현재 한국, 유럽공동체 등 35개 체약국 또는 기구)를 지정한 경우 적용되며 개별수수료는 각 체약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수수료 징수를 선언한 체약국만을 지정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개별수수료는 환율변동, 각 개별수수료 징수국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수수료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export/sites/www/madrid/en/fees/doc/individ.doc>)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마. 국제수수료 별 사용용도

- 기본수수료는 WIPO 운영예산에 사용됩니다. 개별수수료는 WIPO에서 일단 수령 후 지정된 개별수수료선언국 특허청 계좌에 류수에 맞게 재송금하고, 당해연도에 WIPO에 납부된 비개별수수료는 개별수수료선언국이 아닌 지정국에 신청된 표장수에 비례, 분배하여 심사비용으로 충당됩니다.

바. 이상의 국제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본수수료(A)		개별수수료(B)	비개별수수료(C)
국제출원 (총액=A+B+C)	▷ 표장의 색채여부 구분	▶ 색채 : 903CHF ▶ 흑백 : 653CHF	▷ 개별수수료징수 선언국(35개국)만 적용 ▷ 개별수수료는 국가마다 상이	▷ 개별수수료 미선언국에 적용 ▷ 비개별수수료 = 추가수수료+보충수수료
사후지정 신청 (총액=A+B+C)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 300CHF	※ 개별수수료 예시 ▶ 한국 : 류수 × 297CHF ▶ 미국 : 류수 × 337CHF	▶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CHF(3개류까지는 무료) ▶ 보충수수료 : 1지정국당 100CHF
존속기간갱신 신청 (총액=A+B+C)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 653CHF	※ 개별수수료 예시 ▶ 한국 : 류수 × 339CHF ▶ 미국 : 류수 × 415CHF	※ 사후지정 신청의 경우 보충수수료만 계산하고 추가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음
명의변경 신청	▷ 명의이전 내용이 전부 · 일부 불문, 개별수수료 선언국 불문 ▶ 매건당 177CHF			

사. 국제수수료 계산 예시

예시 1) : 한국출원인이 색채표장으로 지정상품은 4개류를 기재하여 독일, 러시아, 미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한 경우의 국제수수료 총액은? (독일, 러시아는 개별수수료 징수 선언국이 아니며 미국은 개별수수료 징수 선언국으로 국제출원시 1개류당 337CHF를 징수함)

기본수수료 (색채)	+	개별수수료 (337 × 4개류)	+	비개별수수료 = 보충(2국 × 100) + 추가(1류 × 100)	+	국제 수수료 총액
903		1,348		300		2,551

예시 2) : 한국출원인이 색채표장으로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4개류를 기재하고 독일, 러시아, 미국을 추가지정하여 사후지정 신청한 경우의 국제

수수료 총액은? (독일, 러시아는 개별수수료 징수 선언국이 아니며 미국은 개별수수료 징수 선언국으로 사후지정시 1개류당 337CHF를 징수함)

기본수수료 (색채구분없음)	+	개별수수료 (337×4개류)	+	비개별수수료 = 보충(2국×100)	+	국제 수수료 총액
300		1,348		200		1,848

※ 번거롭게 수작업으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수수료자동계산기(Fee Calculator)에서 자동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제6편 수수료 계산기 이용편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Q 개별수수료 등은 변동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국제수수료를 계산하는지?
⇒ 본국관청(한국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수리한 날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5. 국제사무국 납부방법

가. 납부방법

- 1) WIPO에 개설된 출원인 등의 당좌계좌에서 인출
 - WIPO에 미리 당좌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최소한 5,000CHF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상세사항은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guide/part_d/pdf/account.pdf)를 참조하거나 제6편 참고자료 중 WIPO당좌계좌 개설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2) WIPO 은행계좌입금(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 송금은행명 및 주소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Swift/BIC code(은행간 통신용 코드) : CRESCHZZ80A
- 수취인 명칭 : WIPO
- 수취인 주소 :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 계좌번호 : CH51 0483 5048 7080 8100 0

※ 수수료 납부를 의뢰하는 국내은행에 송금방법, 환율, 취급수수료 등은 확인하여 주시고, 외국송금의뢰서 중 수취인에의 연락사항 란에는 송금 목적, 서류기호, 출원인(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기초출원(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 상표명

3) 국제우편계좌

유럽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송부할 경우 해당없습니다.

제3장 포기간주 등으로 인한 WIPO(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1. 국제출원수수료

국제출원이 국제등록 전에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기본수수료의 반액 및 보충수수료, 추가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2. 사후지정수수료

가.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기본수수료의 반액 및 보충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 1)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기 전에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 2) 사후지정에 있어 모든 지정체약국이 의정서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협정에만 가입한 체약국만 지정한 경우)

나. 사후지정에 있어 지정체약국이 의정서에 기속되지 않는 체약국 중의 일부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보충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3. 갱신신청수수료

갱신수수료의 정액이 납부되지 않아 갱신을 말소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기본수수료, 보충수수료, 추가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환불합니다.

4.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료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료의 반액을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5. 국제등록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감축신청료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감축신청료의 반액을 국제등록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감축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6.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료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료의 반액을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제4장 과오납에 의한 WIPO(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1. 원인없이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가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면 환불됩니다.
2. 금액을 잘못하여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자가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면 환불됩니다.
3. 환불하는 데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환불청구는 영어로 작성한 편지를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환불받습니다.



제3편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제1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제2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제3절 유럽공동체 상표의장청(OHIM)에 대한 절차

1 Section

Madrid guide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제1장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란?

1. 출원인(대리인)이 본국관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모든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사무국이 정한 공식양식(MM1 ~ MM9 및 MM13 ~ MM18), 그리고 비공식양식(MM10 ~ MM12 및 MM19), 그리고 국제등록부의 인정초본 신청 등 양식화되지 않은 서식이 있습니다. 양식화되지 않은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제출서류에 국제등록출원을 특정한 편지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등록출원을 특정한다는 것은 국제사무국에서 관련 국제출원을 알 수 있게 출원인(명의인)의 명칭, 주소(거소), 국제등록일 및 국제등록번호를 표시하면 되고, 편지는 A4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공식양식 중 MM1, MM3은 마드리드협정 가입국에만 사용하는 양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마드리드의정서에만 가입한 체약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양식입니다.

2. 편지의 언어

- 출원인(명의인)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편지의 언어는 국제등록출원서에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편지의 서명

- 출원인(명의인)이 서명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4. 국제사무국의 수신처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Section,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제2장 국제사무국에의 수수료 납부

1. 절차를 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절차를 행하는 자는 제9절 제2장(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아래 제2절(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에 기재된 금액을 국제사무국에 스위스프랑으로 납부합니다.

2.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통지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관한 하자통지에 의해 새로이 발생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 송금은행명 및 주소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Swift/BIC code(은행간 통신용 코드) : CRESCHZZ80A
- 수취인 명칭 : WIPO
- 수취인 주소 :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 계좌번호 : CH51 0483 5048 7080 8100 0

2 Section

Madrid guide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이하의 절차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국관청(한국특허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제1장 상품(서비스) 목록 감축신청서(MM6)

1. 신청용도

지정체약국(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품(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축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기재요령

양식 제3란(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대리인의 선임) : 본건 절차 전에 선임되어 있는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말아 주십시오.

3.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177CHF

4. 효과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상품(서비스)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정체약국으로부터 가거절통지가 온 경우 해당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상품(서비스)를 감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포기신청서(MM7)

1. 신청용도

일부 지정체약국(모든 지정체약국은 인정되지 아니함)에 대한 상품(서비스)의 전부를 포기할 경우에 신청합니다(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신청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효력이 미치는 지정국관청에 통지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없음

3. 효과

일부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모든 지정상품(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지정상품(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모든 지정체약국의 포기는 아래의 MM8에 의해 가능합니다.) 한편 사후지정으로 포기된 체약국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취소신청서(MM8)

1. 신청용도

모든 지정체약국(일부 지정체약국은 인정안됨)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지정상품(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신청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모든 지정국관청에 통보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없음

3. 효과

모든 상품(서비스)를 취소하면 국제등록은 국제등록부로부터 말소됩니다. 국제등록부로부터 말소된 경우 사후지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일부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한 지정상품(서비스)를 사후지정으로 재차 지정할 수 없으며 신규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제4장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서(MM9)

1. 신청용도

권리자(명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150CHF(단,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의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5장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서(MM10)

1. 신청용도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없음

제6장 대리인의 선임신청서(MM12)

1. 신청용도 : 대리인의 선임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없음

제7장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1. 신청용도

지정체약국(사용권 적용 유보국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대한 상품(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권(Licence)을 등록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 사용권 적용 유보국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은 당해 국가에서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한 국가를 말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 가입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용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내 상표등록 원부에 사용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177CHF

3. 효과 : 사용권(License)은

가. 사용권자(Licensee)의 성명(명칭)

나. 지정체약국 또는 지정체약국의 일부 지역

다. 상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라. 사용권 기간

마. 사용권의 종류(전용, 단독) 등의 사항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1. 신청용도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사용권에 관하여 기록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177CHF

제9장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1. 신청용도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사용권에 관하여 기록된 사항을 취소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없음

3. 효과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사용권에 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

제10장 권리인의 처분권의 제한(MM19)

1. 신청용도

권리인(명의인)의 처분권을 제한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없음

3. 효과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권리인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출원 후 대리인의 변경이 가능한지? 또 국제출원 후 새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지?
 ⇒ 국제등록 후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MM12(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3 Section

Madrid guide

유럽공동체 상표의장청(OHIM)에 대한 절차

다음 절차는 OHIM에 직접 행하는 것으로 한국특허청(본국관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제1장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 신청서(MM16)

1. 신청용도

국제등록이 유럽공동체에 있어 취하, 거절, 실효 되는 등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유럽공동체의 가맹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의 납부수수료 :

(기본수수료) 300CHF +보충수수료 + 개별수수료

3. 효과

전환 신청이 공동체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간내에 출원된 경우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과 동일한 출원일이 인정됩니다.(우선권 또는 선순위권 주장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제4편

지정국 절차

제1절 지정국 절차 개요

제2절 주요 지정국관청 절차

1 Section

Madrid guide

지정국 절차 개요

제1장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분류심사, 상품의 표시 심사,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등)한 경우 그 표장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지정계약 당사자의 관청에 그 국제등록을 통지합니다.

제2장 지정통지 언어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언어(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송부합니다.

제3장 각 계약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

1. 국내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로부터 각 해당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표장의 보호는 그 표장이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직접 기탁된 것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즉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에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한 이내에 거절통지하지 않으면 등록

만약,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가거절’을 의미)이 통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통지된 거절이 사후에 철회(‘가거절철회’를 의미)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표장의 보호는 그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해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3. 우선권 인정

파리협약의 동맹국이거나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된 모든 국제등록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향유합니다. 우선권은 국제출원에 지정된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선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지정된 계약당사자에게도 유효합니다.

제4장 거절이유(가거절) 통지기한

1. 거절이유 통지기간 및 거절이유통지의 기산일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지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1년의 기간 대신에 18개월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정계약국에서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거절이유 통지기한의 기산일은 국제등록일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영역확장의 통지서에서는 하단에 Date of Notification란에 기재된 일자가 거절이유 통지기한의 기산일입니다.)

2. 가거절 통지일자는 발송주의를 적용

가거절 통지일자는 “발송일” 기준입니다. 통상 의정서 및 하위규정에서는 기한의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나 가거절통지일은 예외적으로 발송주의가 적용됩니다.

3. 기한 내에 가거절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의 효력

의정서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한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를 거절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지정국관청은 가거절통지 기한 이내에 거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18개월 이후에도 가거절통지가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를 지정통지일로부터 18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지정체약국이 ①18개월 기간의 만료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Notification of 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를 18개월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사무국에 미리 하고 ②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가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지정체약국에서의 심사

파리협약에서 정한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지정국관청은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2 Section

Madrid guide

주요 지정국관청 절차

본장에서는 2007년도에 한국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권 중 우리나라 국민(기업)이 지정한 5대 다 지정체약국(기구)(중국, 일본, 미국, 유럽공동체, 러시아 연방)을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지정체약국에 대한 정보는 http://www.wipo.int/madrid/en/members/ipoffices_info.html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중국(China)

1. 지정국관청(SAIC)

마드리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SAIC),
International Registration Division, Trademark Office,
No.8 Sanlihedonglu,
Xicheng District, 100820 Beijing

Contact Person : Mr. Wen Xue

Tel. : +86 (10) 88651958

Fax : +86 (10) 68027567

E-mail : wenxue@saic.gov.cn

Internet : <http://www.ctmo.gov.cn>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가입 : 1995. 12. 1.(협정 가입일 : 1989. 10. 4.)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한을 1년 대신 18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the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는 18월 이후에도 가능[Article 5(2)(c) of the Protocol (possible notification of refusal, based on opposition, after the 18-month time-limit).]
- 3)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individual fees) <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
참조 WIPO fee calculator : <http://www.wipo.int/madrid/feecalcl>]
- 4) 국제사무국에 통지된 직권 가거절이 중국법에 의하여 SAIC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없음[Rule 17(5)(e)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s not open to review before the Office)]
- 5) 국제등록부예의 사용권등재는 중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음[Rule 20bis(6)(b) (recording of licenses provided for in the domestic law, but the recording of licenses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has no effect)]
- 6) 출원인으로부터의 수수료의 징수 및 국제사무국예의 송금을 SAIC이 인정[Rule 34(2)(b) (the Office accepts to collect and forward fees to the International Bureau)]

다. 국내 법규

- 1)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http://sbj.saic.gov.cn/english/show.asp?id=47&bm=flfg>.
- 2)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rademark Law : <http://sbj.saic.gov.cn/english/show.asp?id=53&bm=flfg>.

- 3)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under Madrid Agreement : <http://sbj.saic.gov.cn/english/show.asp?id=63&bm=flfg>.
- 4) Provisions on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Provisions on Determination and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 <http://sbj.saic.gov.cn/english/show.asp?id=57&bm=flfg>.
- 5) Measures for Registration of Collective Marks : <http://sbj.saic.gov.cn/english/show.asp?id=60&bm=flfg>.
- 6) Rules for Trademark Review and Adjudication : <http://sbj.saic.gov.cn/english/show.asp?id=64&bm=flfg>.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SAIC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수령한 국제등록통지, 사후지정통지, 갱신통지를 재공고하지 않음

나. 심사절차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사유(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사유(relative grounds)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WIPO의 국제상표공고가 발행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누구나 그 공보에 게재된 중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영역 확장된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연장불가)
-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 권리자가 가거절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연장불가)

다.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통지여부

보호부여기술서는 통지하지 않음.

라. 기타 사항

1) Nice Classification 에 관한 정보

Nice Classification의 모든 류 제목을 인정(The Office accepts all the class headings of the Nice Classification.)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국내대리인 목록 참조 사이트 : <http://sbj.saic.gov.cn/>
or <http://www.ctmo.gov.cn>.

3) 단체표장과 보증표장(Collective and Guarantee Marks)

표장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정은 국제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청에 접수되어야 함

4) 대체[Replacement (Article 4bis of the Madrid Agreement and Madrid Protocol)]

대체에 관한 기록은 관청에 신청하여야 기록되며 수수료는 별도로 필요없음

5) 전환(재출원)[Transformation (Article 9quinquies Madrid Protocol)]

전환으로부터 초래되는 출원을 국내출원으로서 심사하며 전환 수수료는 출원에 따른 1개류당 1,000 Yuan

6)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

필요없음

제2장 일본(Japan)

1. 지정국관청(JPO)

마드리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Japan Patent Office (JPO),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 8915

Internet : <http://www.jpo.go.jp>

Contact for Filing International Applications or other Requests :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Office

Tel. : +81 (3) 3501 1913 Fax : +81 (3) 3580 8033

E-mail : PA1B00@jpo.go.jp (When e-mailing the JPO, please indicate as subject Question about Madrid Protocol)

Contact for the Outline of the Madrid System in Japan : Trademark Policy Planning Office, Trademark Division

Tel. : +81 (3) 3580 8012

Fax : +81 (3) 3595 2747

E-mail : PA1T80@jpo.go.jp (When e-mailing the JPO, please indicate as subject Question about Madrid Protocol)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가입 : 2000. 3. 14.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한을 1년 대신 18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the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individual fees) <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
참조 WIPO fee calculator : <http://www.wipo.int/madrid/feecalcl>]
- 3) 국제등록부에의 사용권등재는 일본내에서는 효력이 없음[Rule 20bis(6)(b) (recording of licenses provided for in the domestic law, but the recording of licenses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has no effect)]
- 4) 개별수수료의 분할납부 가능[Rule 34(3)(a)(individual fees payable in two parts).]
※ 두 번째 부분의 개별수수료는 등록료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WIPO 국제사무국에 수수료 납부기일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다시 출원인(국

제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두 번째 부분의 개별수수료가 기한 내에 국제 사무국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당해 지정국에 대한 국제출원은 취소된다.

다. 국내 법규

Trademark Law (Law No. 127 of April 13, 1959).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수령한 국제등록통지, 사후지정통지, 갱신통지를 재공고 하고 있음

나. 심사절차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사유(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사유(relative grounds)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상표권 권리부여 후의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상표공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임(연장불가)
- 3) 직권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for Responding to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 가거절 통지 발행일로부터 3개월(연장 가능)

다.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통지여부

보호부여기술서를 통지하고 있음.

라. 기타 사항

1) Nice Classification 에 관한 정보

다음의 류제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The Office does not accept class headings for the following classes)

- 1 :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 6 : Ironmongery,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goods of common metal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 7 : Machines and machine tools;
- 9 : Scientific, nautical, surveying,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optical, weighing, measuring, signaling, checking (supervision), life-saving and teac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 12 :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 14 : Precious metals and their alloys and goods in precious metals or coated therewith,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 16 : Paper, cardboard and goods made from these materials,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 17 :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mica and goods made from these materials and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 20 : Goods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of wood, cork, reed, cane, wicker, horn, bone, ivory, whalebone, shell, amber, mother-of-pearl, meerschaum and substitutes for all these materials, or of plastics;
- 24 : Textiles and textile goods,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 31 : 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and grains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 36 : Financial affairs; monetary affairs;
- 37 : Repair;
- 40 : Treatment of materials;
- 41 :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 42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sign relating thereto;
- 44 :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 45 :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일본내에 거소 또는 주소가 없는 재외자는 일본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국내대리인 목록 참조 사이트 : <http://www.jpaa.jp>.

3) 단체표장과 보증표장(Collective and Guarantee Marks)

단체표장의 관리자가 법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을 WIPO에 통지되는 가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표장은
일본에서 보호받지 못함

4) 대체[Replacement (Article 4bis of the Madrid Agreement and Madrid Protocol)]

대체에 관한 기록은 직권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발생

5) 전환(재출원)[Transformation (Article 9quinquies Madrid Protocol)]

국제표장이 취소일전 또는 취소일에 일본에서 보호받지 않았다면(등록되지
않았다면) JPO는 전환으로부터 발생된 출원을 절대적 또는 상대적 거절이유에
관하여 심사함.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가)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efore January 1, 2003 :

Filing fee: 3,400 JPY plus 8,600 JPY per class.

나)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January 1, 2003 :

a) Filing fee : 3,400 JPY plus 8,600 JPY per class.

b) Registration fee : 37,600 JPY per class payabl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국제표장이 취소일전 또는 취소일에 일본에서 보호를 받았고(등록이 되었고)
전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JPO는 다시 심사를 하지 않으며 다음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함

Filing fee : 3,400 JPY + 8,600 JPY per class

6)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

필요없음

제3장 미국(USA)

1. 지정국관청(USPTO)

마드리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Madrid Processing Unit,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600 Dulany Street, MDE-7B87,

Alexandria, VA 22314-5793

E-mail : MPU@uspto.gov

Internet : <http://www.uspto.gov/web/trademarks/madrid/madridindex.htm>

Contact person : Mrs. Felicia Battle

E-mail : Felicia.Battle@USPTO.GOV

Tel. : +1 (571) 272 89 10

Fax : +1 (571) 273 89 50

Contact person : Mrs. Felicia Battle

E-mail : Felicia.Battle@USPTO.GOV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가입 : 2003. 11. 2.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한을 1년 대신 18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the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는 18월 이후에도 가능[Article 5(2)(c) of the Protocol (possible notification of refusal, based on opposition, after the 18-month time-limit).]

- 3)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individual fees) <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 참조 WIPO fee calculator : <http://www.wipo.int/madrid/feecalcl>]
-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는 표장에 대한 사용의사선언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함 [Rule 7(2)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Required to be filed with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the USA (MM18 form at <http://www.wipo.int/madrid/en/forms/>).]

다. 국내 법규

- 1) US Trademark Law : <http://www.uspto.gov/main/trademarks.htm#laws>.
- 2) Trademark Law Treaty Implementation Act :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ol/tmlwtrty/index.html>.
- 3) US Trademark Law: Rules of Practice & Federal Statutes : <http://www.uspto.gov/main/trademarks.htm#laws>.
- 4) Trademark Law Treaty : <http://www.uspto.gov/main/trademarks.htm#laws>.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USPTO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수령한 국제등록통지, 사후지정통지, 갱신통지를 the Trademark Official Gazette로 재공고하고 있음

나. 심사절차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사유(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사유(relative grounds)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 ① 부도덕적이거나 허위 또는 비방하는 내용으로 되어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자연인, 기관(institution), 신조(beliefs), 국가의 상징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들과 상품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듯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하면 상품의 원산지 이외의 장소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출원인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 미국에 WTO협정이 발효한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인 상표(상표법 §1052(a)).
- ② 미합중국의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기, 문장, 그 밖의 기장 또는 이것들의 모조품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이것들을 포함한 상표(상표법 §1052(b)).
- ③ 특정의 생존하는 인물을 표시하는 명칭, 초상 또는 서명(그 인물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또는 미망인 생존 중에 사망한 미국의 대통령의 명칭, 초상 또는 서명(미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으로 되었거나 이것들을 포함하는 상표(상표법 §1052(c)).
- ④ 출원인의 상품에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거나, 사기적인 오인을 일으킬 만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상표법 §1052(e)(1)).
- ⑤ 출원인의 상품에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주로 그 상품을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원산지로서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제외)(상표법 §1052(e)(2)).
- ⑥ 출원인의 상품에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주로 그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사기적인 오인을 일으킬만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상표법 1052(e)(5)).
- ⑦ 단순히 성(surname)에 불과한 상표(상표법 §1052(e)(4)).
- ⑧ 전체적으로 기능(functional)을 표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상표법 §1052(e)(5)).

〈상대적 거절이유〉

- ① 출원인의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이 특허상표청에 등록하고 있는 상표 또는 미국에서 이전에 사용되고 포기되지 않은 상표 또는 상호와 오인 혼동 및 기만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거나 이것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상표(상표법 §1052(d)). 다만, 쌍방이 다음의 기일 전에 당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정당한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 특허상표청이 사용의 양태나 장소 및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오인, 혼동 또는 기만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동시 등록(concurrent registration)이 가능.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가) 특허상표청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표법 §1063(a)).

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및 증거사본이 국제등록명의인에게 송달되고 국제등록명의인은 30일 이상의 기간이 지정된다(Rules of Practice §2.105).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 심사관의 가거절 통지에 대하여 통지일부터 6월의 기간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연장가능)

다.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통지여부

보호부여기술서는 통지하지 않음. 그 대신 등록권리자에게 등록증서(a 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교부함.

라. 기타 사항

1) Nice Classification 에 관한 정보

USPTO는 15류의 제목과 23류의 제목만을 인정합니다.[USPTO accepts only the

headings in class 15 (musical instruments) and class 23 (yarns and threads for textile use). USPTO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서비스)명에 대한 검색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SPTO maintains an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Manual”, available on its website(<http://tess2.uspto.gov/netahtml/tidm.html>))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선임된 대리인은 대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Local representation is not required. However, any representative must comply with national regulations on representation before the USPTO.³⁷ C.F.R. Part 10.)

외국 출원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출원인이 미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출원인은 USPTO에 서면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된 자에게 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한 통지서가 전달된다. 만약 출원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최후 지정된 자가 제출된 서면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통지서는 Director(미국특허상표청장을 말함)에게 전달된다.

§2.24 Designation of domestic representative by foreign applicant.(RULES OF PRACTICE & FEDERAL STATUTES)

If an applicant is not domiciled in the United States, the applicant may designate by a docum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name and address of some pers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on whom may be served notices or process in proceedings affecting the mark. If the applicant does not file a document designating the name and address of a pers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on whom may be served notices or process in proceedings affecting the mark, or if the last person designated cannot be found at the address given in the designation, then notices or process in proceedings affecting the mark may be served on the Director.

3) 단체표장과 보증표장(Collective and Guarantee Marks)

표장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정은 Office Action에 대한 6개월 기간의 대응기간내에 USPTO에 제출되어야 함

4) 대체[Replacement (Article 4bis of the Madrid Agreement and Madrid Protocol)]

대체에 관한 기록은 USPTO에 신청하여야 기록되며 1개류당 100 USD가 소요됨

5) 전환(재출원)[Transformation (Article 9quinquies Madrid Protocol)]

USPTO는 방식에 관한 사항만 심사하며 전환(재출원) 1개류당 수수료는 375 USD가 소요됨

6)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5년과 6년 사이에 사용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와 상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당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사용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표 등록 후 6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당해 상표 등록은 취소(canceled)됨

7) 전자 통신

전자통신을 권장함. 보호의 확장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관련 통신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함[참조 <http://tmportal.uspto.gov/external/portal/tow> and <http://www.uspto.gov/teas/index.html> for more information.]

제4장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1. 지정국관청(OHIM)

마드리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Information Centre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GAERD)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Trade Marks and Designs) (OHIM)

Avenida de Europa, 4 E-03008 Alicante SPAIN

Tel. : +34 965 13 9100

E-mail : Information@oami.europa.eu

Internet : <http://oami.europa.eu/en/dialog.htm>

※ 유럽공동체의 현재 가입국은 2008. 11. 현재 27개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가입, 탈퇴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http://europa.eu/abc/european_countries/index_en.htm)

유럽공동체 회원국 :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가입 : 2004. 10. 1.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한을 1년 대신 18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the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individual fees) <http://www.wipo.int/madrid/en/fees/doc/individ.doc> 참조
WIPO fee calculator : <http://www.wipo.int/madrid/feecalcl>]

다. EC 법규

- 1) Council Decision of October 27, 2003, approving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dopted at Madrid, on June 27, 1989 (2003/793/EC).
- 2) Council Regulation (EC) No. 1992/2003 of October 27, 2003, amending Regulation (EC) No. 40/94 on the Community trade mark, to give effect to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dopted at Madrid, on June 27, 1989.
 - 3)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82/2004 of April 26, 2004,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868/95 of December 13, 1995,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n the Community trade mark to give effect to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Madrid Protocol.
 - 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81/2004 of April 26, 2004,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869/95 on the fees payable to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Trade Marks and Designs)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재공고를 함(Republication in the CTM Bulletin in part M.1 at http://oami.europa.eu/bulletin/ctm/ctm_bulletin_en.htm in all official languages of the EC.)

나. 심사절차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사유(Absolute grounds)에 대하여 심사함. OHIM은 CTM(유럽공동체상표) 등록부와 요청에 따라 선택된 국내 등록부에서 선권리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검색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심사 결과 절대적 거절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공고하고, 출원공고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연장불가)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 OHIM이 가거절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2개월(연장 가능)

다.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통지여부

보호부여기술서를 통지하고 있음

라. 기타 사항

1) Nice Classification 에 관한 정보

Nice Classification의 모든 류 제목을 인정(The Office accepts all the class headings of the Nice Classification.)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권리자가 주소 또는 주요 사업장소, 진정하고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유럽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OHIM에 직접 대응할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List of professional representatives is available at : <http://oami.europa.eu/en/office/diff/officialj.htm>,

or in CTM-Agent database at :

<http://oami.europa.eu/FRP/RequestManager?transition=start&source=Log-in.html&language=en&application=FRP>.

3) 단체표장과 보증표장(Collective and Guarantee Marks)

보증표장은 인정되지 않음. 단체표장과 관련해서는 표장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정은 국제등록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청에 직접 접수되어야 함. 다음 공지사항을 참조

Information Notice 19/2004 at : http://www.wipo.int/edocs/madrdocs/en/2004/madrid_2004_19.doc.

4) 대체[Replacement (Article 4bis of the Madrid Agreement and Madrid Protocol)]

대체에 관한 기록은 관청에 신청하여야 기록되며 실제심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별도 수수료도 필요없음

5) 전환(재출원)[Transformation (Article 9quinquies Madrid Protocol)]

CTMR Article 147(2)에 따라 유럽공동체를 지정한 국제등록이 공고되지 않았다면 OHIM은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CTM 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와 절대적 거절 사유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공고를 함. 일반출원으로 간주되며 앞선 일자(취소된 국제등록일자)를 주장할 수 있음. 일변적인 CTM 출원료가 적용되며 전환수수료는 별도로 없음

6)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

필요없음

제5장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1. 지정국관청(Rospatent)

마드리드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Trademarks (Rospatent),
Bld. 30-1, Berezhkovskaya nab.,
Moscow, G-59, GSP-5,
123995

Contact person : Mrs. Larisa Bumaznaya, Deputy Head of Trademark Service

Tel. : +499 249 33 39 / 499 240 64 35 / +499 240 61 38

Fax : +499 240 61 79 / +495 234 30 58

E-mail : LBumajmaya@rupto.ru / rospatent@rupto.ru

Internet : <http://www.rupto.ru>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가입 : 1997. 6. 10.(협정 가입 : 1976. 6. 1.)

나. 선언내용

- 1) 국제등록부에의 사용권등재는 일본내에서는 효력이 없음[Rule 20bis(6)(b) (recording of licenses provided for in the domestic law, but the recording of licenses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has no effect)]
- 2) 출원인으로부터의 수수료의 징수 및 국제사무국에의 송금을 관청이 인정[Rule 34(2)(b) (the Office accepts to collect and forward fees to the International Bureau)] 이 선언은 우선심사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This declaration applies only in case of accelerated procedure for examination.)

다. 국내 법규

Trademark Act : <http://www.fips.ru/ruptoen2/law/tm.htm>.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재공고를 하지 아니함

나. 심사절차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사유(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사유(relative grounds)에 대하여 심사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이의신청 제도 없음
-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 관청이 출원인에게 송부한 가거절통지일로부터 6개월

다.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통지여부

보호부여기술서를 통지하지 않음

라. 기타 사항

1) Nice Classification 에 관한 정보

Nice Classification의 모든 류 제목을 인정(The Office accepts all the class headings of the Nice Classification.)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List of registered patent attorneys is available from Rospatent at :
http://www.fips.ru/ppoven/patpov_en.htm.

3) 단체표장과 보증표장(Collective and Guarantee Marks)

보증표장제도는 없으며 단체표장의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No requirements.)

4) 대체[Replacement (Article 4bis of the Madrid Agreement and Madrid Protocol)]

대체에 관한 기록은 관청에 신청하여야 기록됨(Recording of replacement takes place upon request, filed with the Office.)

5) 전환(재출원)[Transformation (Article 9quinquies Madrid Protocol)]

관청은 전환된 국제표장을 기초로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국내출원과 같은 심사를 진행하며 국내출원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6)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

필요없음



제5편

전자출원

제1절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제2절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1 Section

Madrid guide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제1장 마드리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요

1. 마드리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구성

가. MM서식작성기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영문서식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 작성 가능 서식 종류 : MM2(국제출원서), MM4(사후지정서), MM5(국제등록명의 변경등록신청서), MM11(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 위 서류를 제외한 WIPO가 제공하는 공식서식은 대한민국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IPO가 제공하는 MS-WORD또는 PDF형식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WIPO로 직접 송부하여야 합니다.

나. KEAPS

1) 신규 출원서 뿐만 아니라 중간서식, 등록서식, 심판서식 등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KEAPS의 마드리드 본국관청 관련 서식

가)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사임, 선임, 해임등 에 이용

나)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 : 2008.11 현재 전자문서 이용 불가

다)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 국제출원보정서 : 보정요구에서 대한 하자 치유 서식
- 국제출원서등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서등 제출시 이용
- 대체서류 : 특허청의 대체서류요청서에 대한 하자치요시 이용
- 하자보정서등 : WIPO하자에 대한 영문답변서 제출시 이용

라) 국제출원등 취하서 : 특허청에 신청한 명의변경등록신청서, 존속기간갱신 신청서,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등을 WIPO에 발송 전에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다. 첨부서류입력기

첨부서류(예: 위임장, 재학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스캐닝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첨부서류 : 위임장, MM17(Claim of seniority), MM18(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영문의견서 등

2.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가. 마드리드 전자출원 이동 경로

특허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로” 코너를 통해 전자출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 코너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초기화면(2008.11월 현재)

- 특허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상단의 특허로(온라인출원서비스) 또는 kporc.kipo.go.kr로 이동하면 전자출원안내 및 필요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로 (전자출원) 코너의 초기화면입니다.(http://kporc.kipo.go.kr)



-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초기화면 우측상단 Quick Menu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항목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 http://kporc.kipo.go.kr:7073/jsp/kiporo2/apply/apply0201.jsp?catmenu=apply0201

※특허청의 전자출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체 설치

통합 설치	권리구분	S/W 다운로드	비고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용 S/W를 일괄(통합) 설치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경우에는 아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권리		

사용자 설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전자출원 S/W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설명	권리구분	S/W 다운로드	매뉴얼 다운로드
서식작성기 (Keaps)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서 및 중간절차(의견서 등)와 등록과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 전자문서작성기로 명세서, 보정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작성기 (K-Editor)	특허, 디자인출원의 명세서 및 보정서, 의견서 등 전자출원에 앞서 서식에 첨부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형 전자출원 S/W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첨부서류입력기	출원서, 보정서 등 서식 제출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변환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자출원 S/W입니다.			
통지서 열람기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 및 제청명 서류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는 전자출원 S/W입니다.			없음
서열목록작성기 (KOPATENT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특허		
PATENT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 대용량의 서열목록 작성 시 사용하십시오.	특허		
MM서식작성기	상표출원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제출서류 중 WIPO에 제출하는 국제상표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상표		

전자출원을 위한 서식작성기(Keaps)는 최소 7.0.1 버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 버전의 설치가 확인된 경우 구 버전을 삭제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nKeaps 제거)

사용전 주의 사항

전자출원 S/W는 익스플로러 5.5 서비스팩 2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매뉴얼을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완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필수프로그램은 서식작성기(KEAPS), 첨부서류 입력기, MM서식작성기입니다.

※ 위 3개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후 설치

2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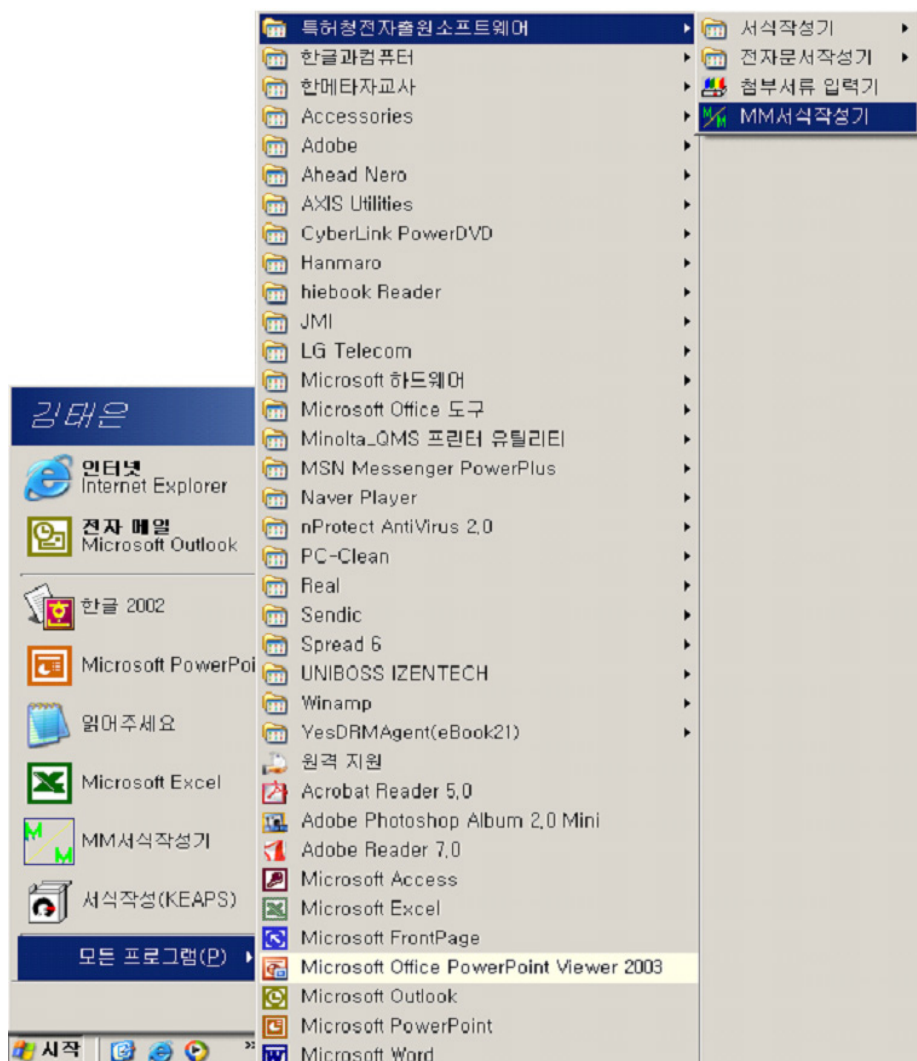
Madrid guide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제1장 국제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1. MM서식작성기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 MM서식작성기를 선택합니다.



2. MM서식작성기 메뉴 설명

가. 파일 **파일(F)**

(1) MM2서식 - 국제출원서

MM4서식 - 사후지정서

MM5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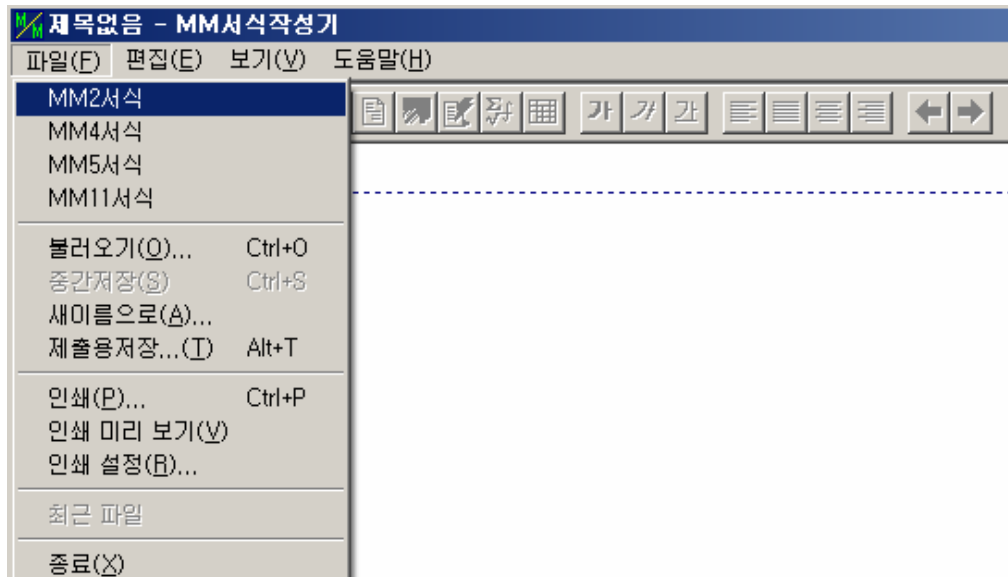
MM11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2) 불러오기 - 파일을 불러옵니다.

중간저장 - 작성 중인 파일을 추후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저장합니다. (생성되는 파일 : *.HTD)

새이름으로 - 파일을 새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제출용저장 - 온라인 제출을 위한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추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생성되는 파일 : *.MMZ)



저장하기 TIP

먼저 중간저장 버튼을 눌러 HTD 파일을 생성합니다. MM서식 작성을 완료하시면, 마지막으로 제출용 저장 버튼을 눌러 MMZ파일을 생성한 다음,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제출용 저장만 하신 후 수정하기 원하신다면, 새이름으로 버튼을 눌러 HTD파일로 변환하신 다음 수정하시면 됩니다.

나. 편집 **편집(E)**

추가된 항목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구모음 오른쪽의 화살표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MM2 서식추가항목

Applicant 추가 - 출원인이 2이상인 경우 추가합니다.

Basic Application 추가 - 기초출원 또는 등록이 2이상인 경우 추가합니다.

Priority Claimed -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추가합니다.

10번 추가 - Goods and Services 항목의 기재란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합니다.

2) MM4 서식추가항목

Holder 추가 - 국제등록명의인이 2이상인 경우 추가합니다.

MM2 서식 10번 추가 - 4(b) 또는 (c)에 체크한 경우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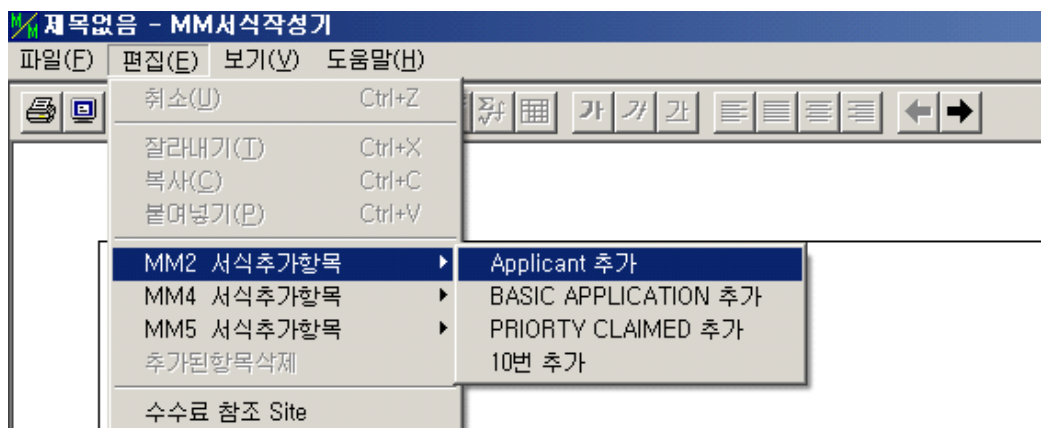
3) MM5 서식추가항목

New Owner 추가 - 새 국제등록명의인이 2이상인 경우 추가합니다.

4) 수수료 참조 Site

WIPO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좌측의 Fee/Fee Calculation 메뉴를 선택합니다.



3. MM서식작성기를 이용한 국제출원서(MM2) 작성 안내

전자출원안내에서는 전자출원시 유의점 위주로 설명하게 되며, 자세한 서식 작성요령은 양식집 또는 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가. MM서식작성기 파일 메뉴에서 MM2서식을 선택합니다.

나. 작성시 유의사항

① For use by the applicant/Office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applicant/Offic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Applicant's reference:
- continuation sheet(s):	Office's reference:
- MM17 form(s):	

- MM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MM2서식을 작성시에는 좌측 상자안의 연속용지 매수와 MM17 서식 수는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우측 상자안의 Applicant's reference 난에는 출원인의 참조번호(출원인이 식별 가능한 사항)를 기재하고, Office's reference 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당사자의 표시

1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THE OFFICE OF ORIGIN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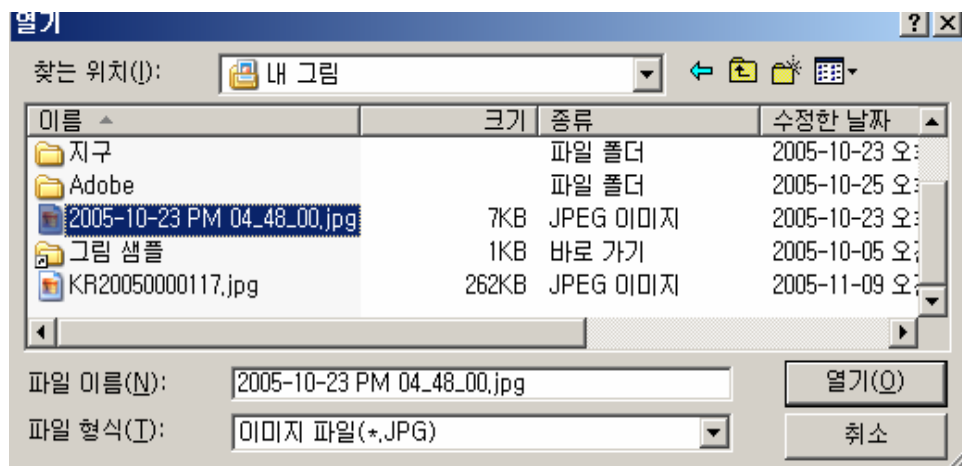
- MM서식작성기에의 계약당사자는 REPUBLIC OF KOREA로 자동기재됩니다.

③ 표장의 입력

7 THE MARK	
(a) Place the reproduction of the mark, as it appears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in the square below.	(b) Where the reproduction in item (a) is in black and white and color is claimed in item 8, place a color reproduction of the mark in the square below.
자르기 복사 붙여넣기 지우기 그림 삽입... 텍스트 삽입...	

- (a) 박스안에 포인터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그림 삽입을 선택합니다.
- (b)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국제출원하고자하는 표장 이미지파일 (jpg)을 삽입합니다.

<주의사항> 삽입되는 표장이미지는 반드시 확장명을 jpg여야 합니다.



- (c) 표장이 삽입된 상태

7

THE MARK

(a) Place the reproduction of the mark, as it appears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in the square below.



(b) Where the reproduction in item (a) is in black and white and color is claimed in item 8, place a color reproduction of the mark in the square below.

다. MM서식작성기 도움말 이용법

6

☐

PRIORITY CLAIMED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 mentioned below.

Office of priority filing:

Number of earlier filing (if available): (dd/mm/yyyy)

Date of earlier filing: (dd/mm/yyyy)

If the earlier filing does not relate to all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item 10 of this form,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the goods and services to which it does relate.

.....

.....

☐ If several priorities are claimed, check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giving the above required information for each priority claimed.

- 작성하고자 하는 항목의 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도움말

_
□
✕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

선행하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을 한 관청의 이름,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 만약 선행하는 출원이 국제출원서 10항목의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선행출원에 포함된 10항목의 상품과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2이상인 경우, 출원일이 최우선인 것을 기재하고, 그 외의 것은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예) 두개의 국내출원에 기초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40-2006-0000001(지정 상품 9류)과 **41-2006-0000002**(지정 상품 10, 11류)을 기초로
영문지정상품(10)항에 9, 10, 11류를 지정한 후 우선권 주장 시
40-2006-0000001의 우선권 주장에서 포함되는 상품
→ **all the goods listed in class 9**
연속용지의 **40-2006-0000002**의 우선권 주장에서 포함되는 상품
→ **all the goods listed in class 10 and class 11**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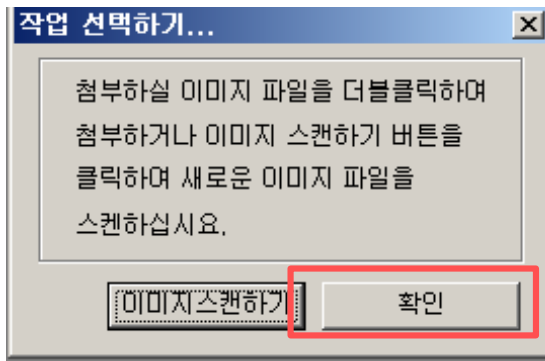
4.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한 MM18서식 변환

가. 첨부서류입력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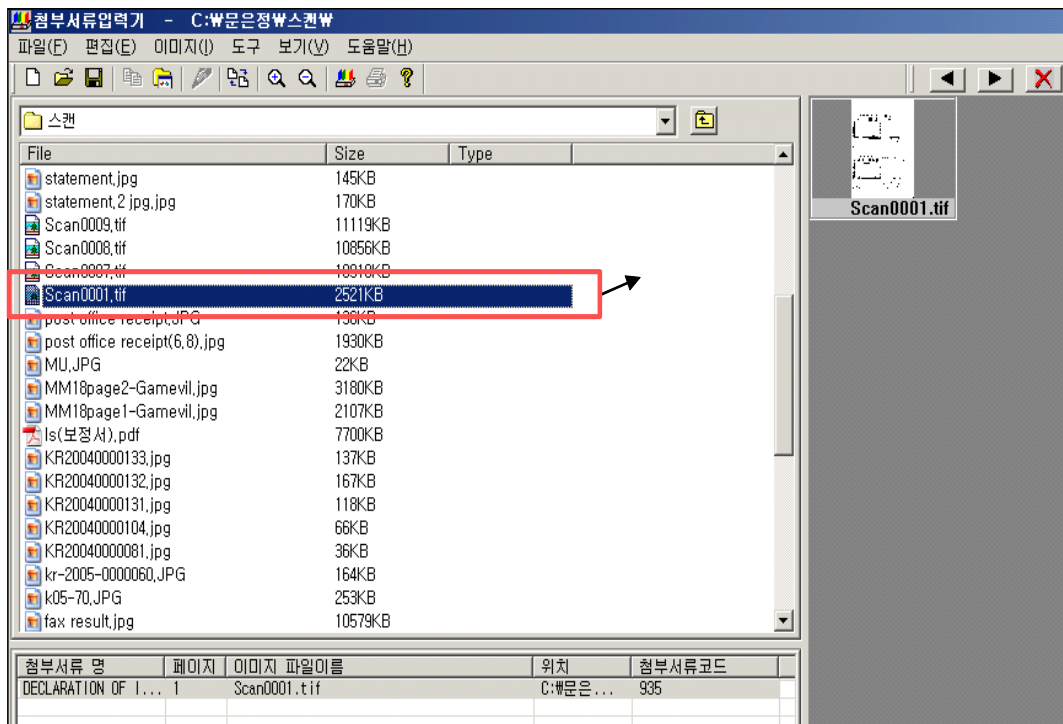
나. 대항목에서 “마드리드서류(본국관청)”, 첨부서류명에서 “(출원)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 United States of America” 를 선택합니다.

다. 서식을 선택하시면 작업 선택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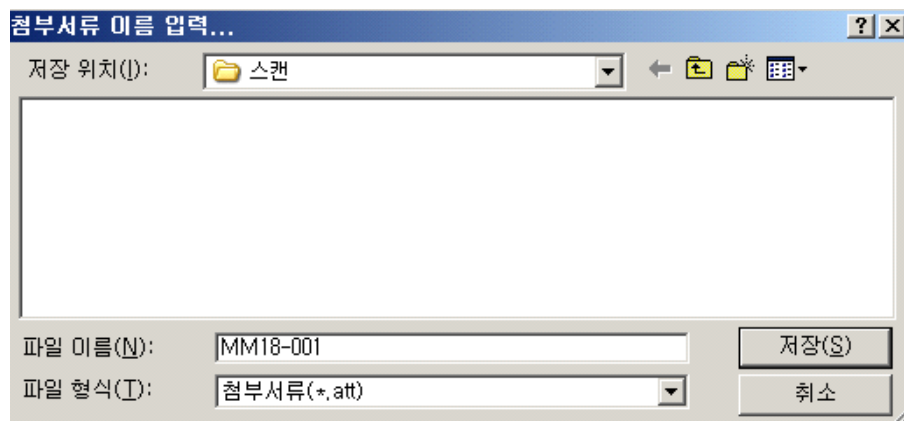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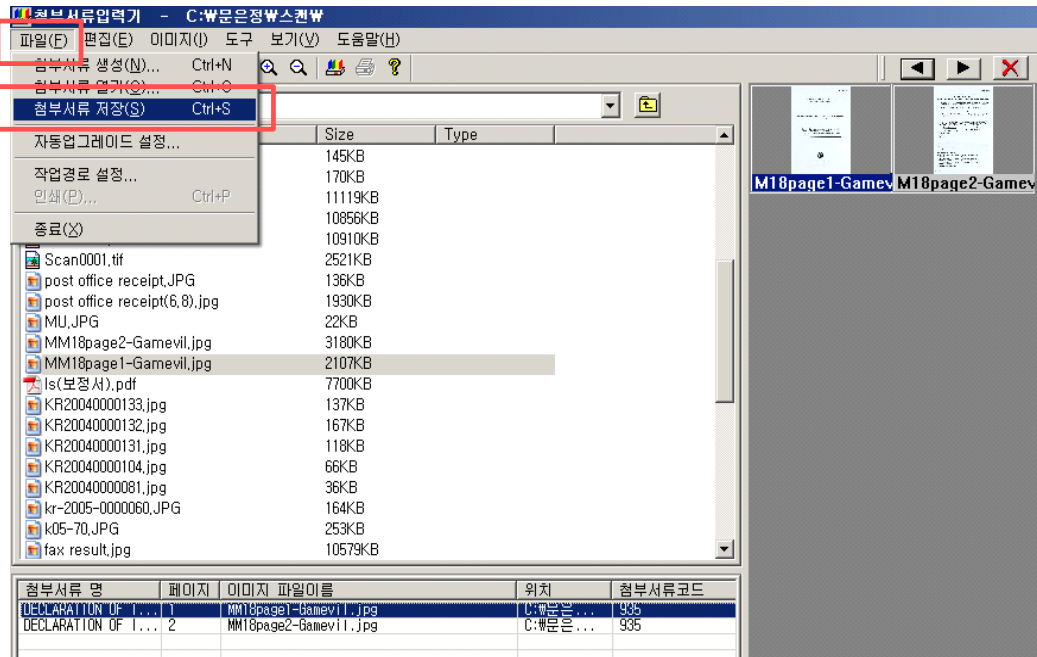
라. 새로운 이미지를 스캔하시려면 이미지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미 스캔하신 이미지를 변환하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마. 변환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신 뒤, 해당 이미지 파일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바. 변환할 이미지 파일 선택을 마친 후 파일 > 첨부서류 저장(S)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출원 시 첨부 가능한 형태(.att)로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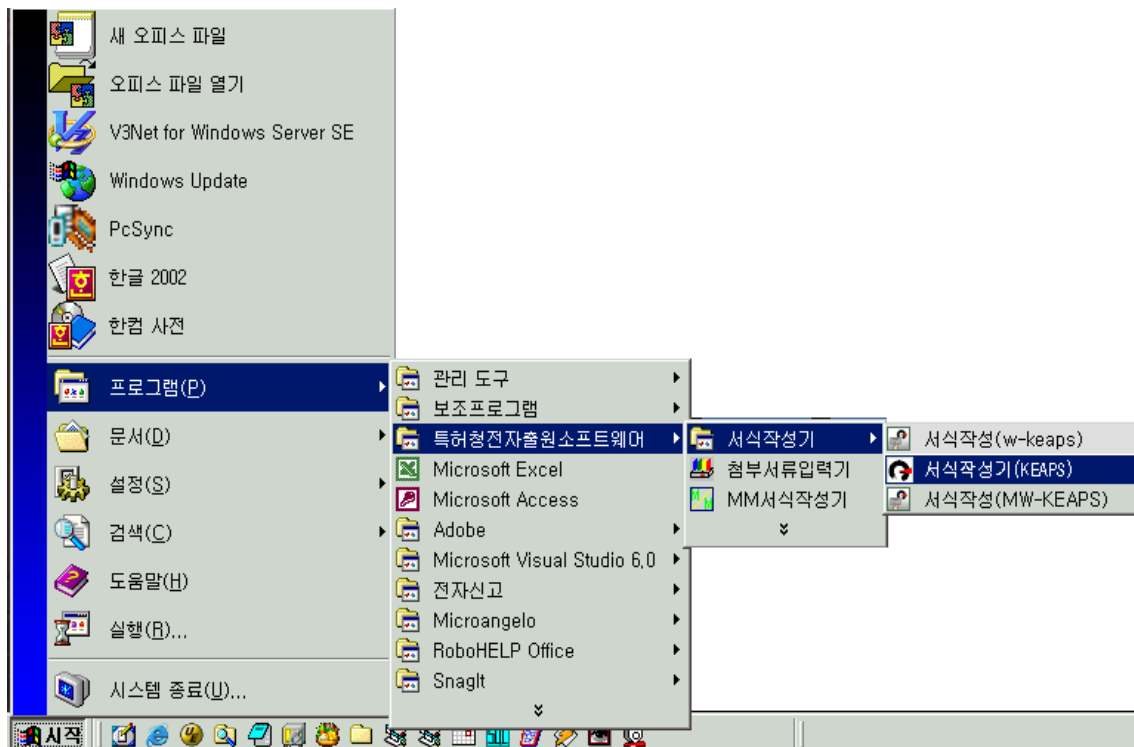
제2장 KEAPS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1. 국제출원서제출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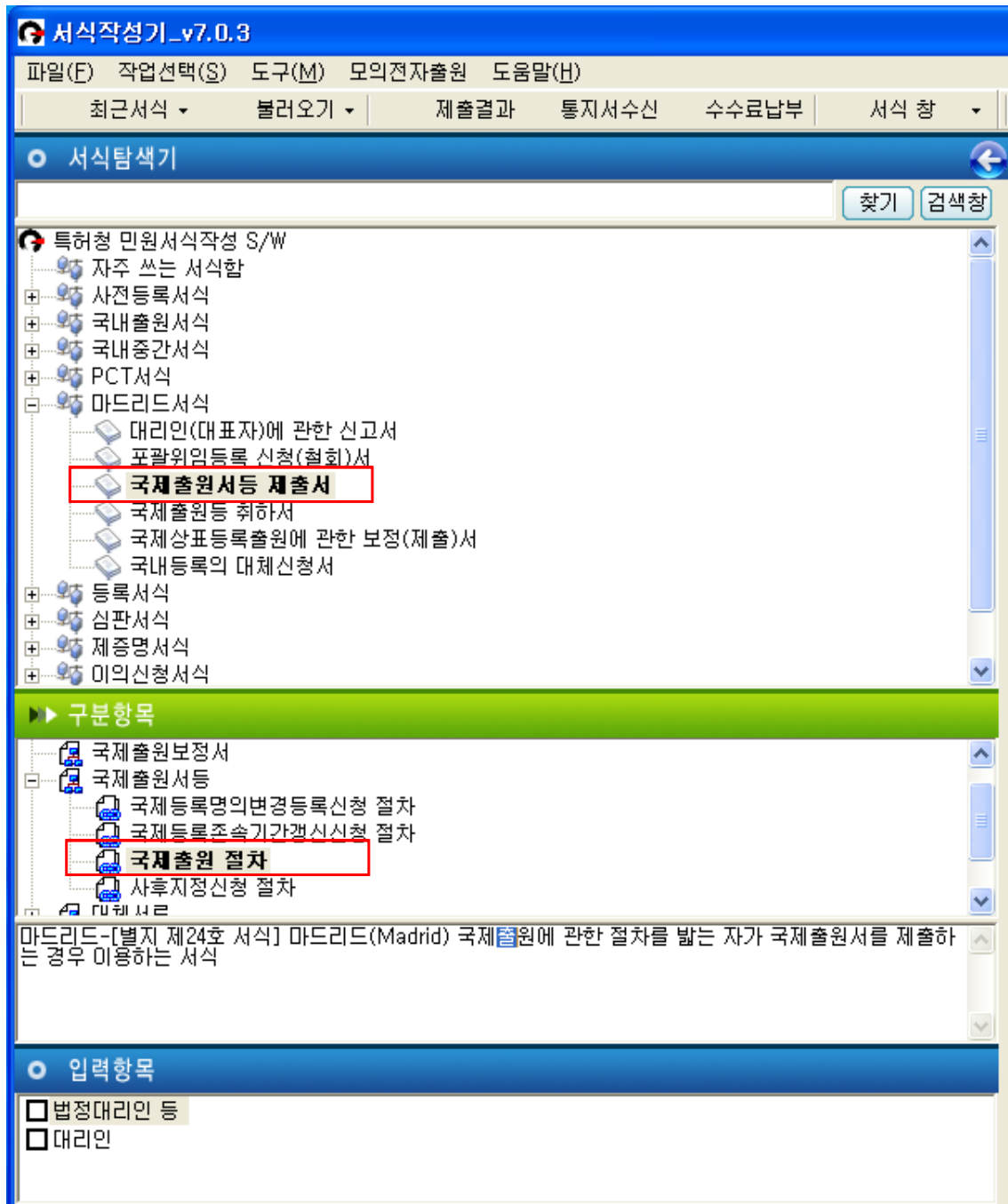
가.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특허청전자출원소프트웨어 > 서식작성기 >

서식작성기(KEAPS)를 실행합니다.

※ KEAPS의 전체 사용메뉴얼은 특허로)다운로드)사용자설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나. 서식선택 메뉴를 눌러 서식탐색기에서 마드리드 서식> 국제출원제출서를 선택 구분 항목에서는 국제출원서등>국제출원 절차 선택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입력항목의 대리인을 선택하여야 대리인 입력항목이 활성화 됩니다.

다.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작성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 대체서류
☐ 하자보정서등 ☐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순번	성명

사건의 표시

순번	

수수료

국제출원서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제출인 정보

☒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출원인코드: 4 - 2007 - 00 -

성명: 라틴입력

성명의 영문표기: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닫기

입력 입력 및 사용자 DB에 저장

입력된 출원인 정보

순번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1	VG, KILDC	2007-007026	국제출원인

삭제

사용자 DB 정보

순번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주 소

찾기 삭제

① 제출인 **제출인**

- 오른쪽의 입력버튼을 눌러 제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은 출원인코드 상의 영문명칭과 동일하게 정확히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입력 또는 입력 및 사용자 DB에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닫기 버튼을 눌러 입력을 종료합니다.

② 대리인 **대리인**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인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리인의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있으신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정보

대리인코드: [] - [] -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 [] - [] 포괄위임등록번호 삭제

포괄위임등록번호 찾기

입력 입력 및 사용자 DB에 저장

입력된 대리인 정보

순번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1	KIM, Deari	9-2005-000000-1	2008-041255-1

삭제

사용자 DB 정보 찾기 삭제

순번	성명	대리인코드	주소
----	----	-------	----

③ 사건의 표시

- 기초출원번호 또는 기초등록번호, 기초출원일자 또는 기초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상품(서비스업)류 란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업)류를 기재합니다.
 예) 기초출원이 18, 25류이고 국제출원도 해당류가 포함될 경우 : 18류외 1개류
- 기초출원(등록) 번호가 2개이상일 경우 해당 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사건의 표시

기초출원번호: [40] - [] - []

기초출원일자: [] . [] . []

상품(서비스업)류: []

입력

입력된 사건의 표시

순번	기초출원(등록)번호	기초출원(등록)일자	상품(서비스업)류
1	40-2008-0000011	2008.01.10	25류

삭제

④ 첨부서류 첨부서류

- 첨부서류파일을 오른쪽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하실 수 있으며, 확장명은 .att 이어야 합니다.(첨부서류 변환은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MM17, MM18서식이외의 서류(예, 양수양도증, 국적증명서 등)첨부서류선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타첨부서류”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로 선택하신 뒤, 구체적인 첨부서류명은 [보충사항 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첨부서류 정보  닫기

첨부서류선택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
통수	1
첨부서류파일	첨부파일 추가 후  찾기
보충사항	
원용사항	[서류명] [특허청첨조번호] KR - -

 **입력** →

입력된 첨부서류 정보    삭제

순번	첨부서류명	통수	원용사항	파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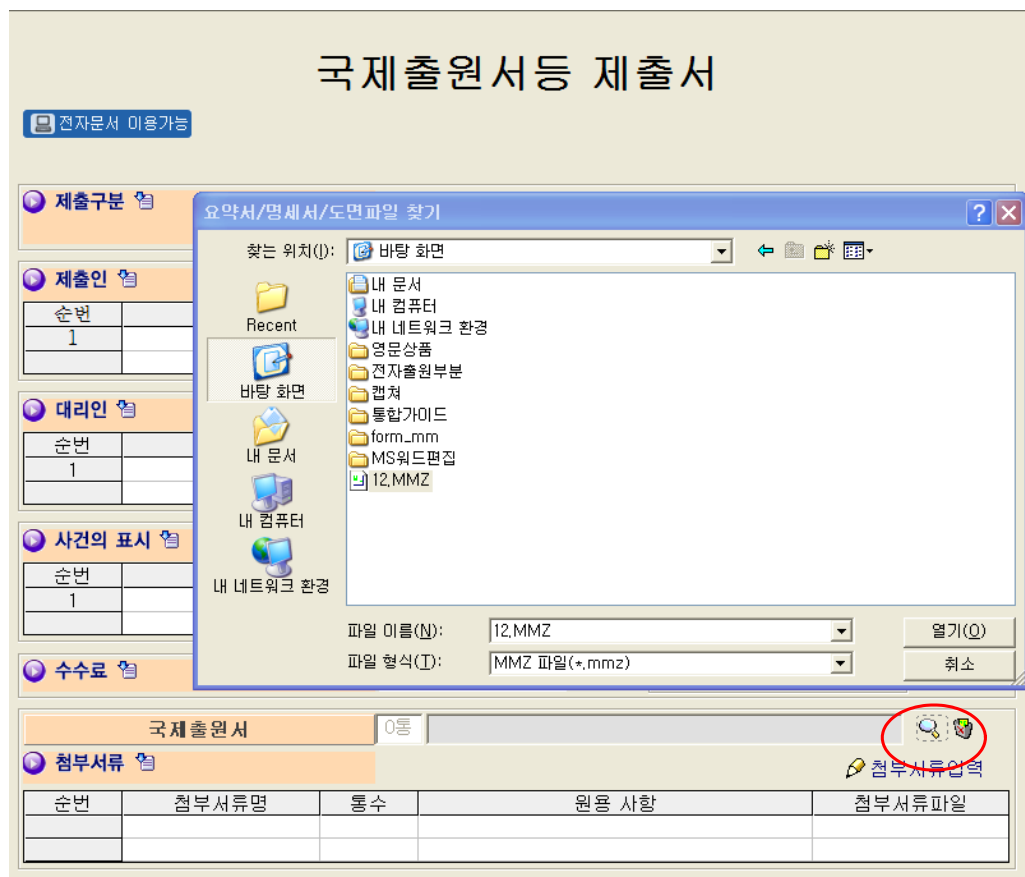
※ 상기 첨부서류선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타첨부서류” 혹은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첨부서류명을 “보충사항입력”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입력

순번	첨부서류명	통수	원용 사항	첨부서류파일

⑤ 국제출원서 입력

- 국제출원서 항목 우측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파일 찾기 창이 나타납니다. MM서식작성기로 작성하셨던 MMZ 파일을 찾아 입력합니다.



라. 국제출원서제출서 저장

모든 기재사항을 다 입력하셨으면 상단의 저장버튼을 눌러 국제출원서제출서를 저장합니다.

2. 국제출원서제출서 온라인 제출

가. 제출문서 생성

- 1) 작성서식 상단의 전자문서제출 버튼을 눌러 온라인제출 마법사를 실행시킵니다.
출원서정보를 검토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제출문서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 서식제출은 작성된 서식을 저장한 후에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제출버튼을 클릭후에 먼저 파일저장을 하여주십시오.

2) 온라인 제출마법사 실행

- 전자문서제출 시행후 파일을 저장하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제출마법사가 실행됩니다.

온라인제출 마법사

1 단계 : 변환대상 파일을 특허청 표준문서(XML)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변환대상 파일

서지사항 파일 C:\KIPONET#KEAPS#DATA#BIB#12.BIB

명세서 파일 C:\Documents and Settings#정보관리#바탕 화면#12.MMZ 찾기

첨부서류 파일

변환결과 파일

제출문서 파일 C:\KIPONET#KEAPS#DATA#CNT#12.cnt

출원서정보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제출구분】 국제출원서등

【제출인】

【성명】 HONG, Gilidong

【출원인코드】 4-2007-007026-5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사건의 표시】

【기초출원번호】 40-2008-0000123

【기초출원일자】 2008.10.10

【상품(서비스업)류】 18류를 포함한 2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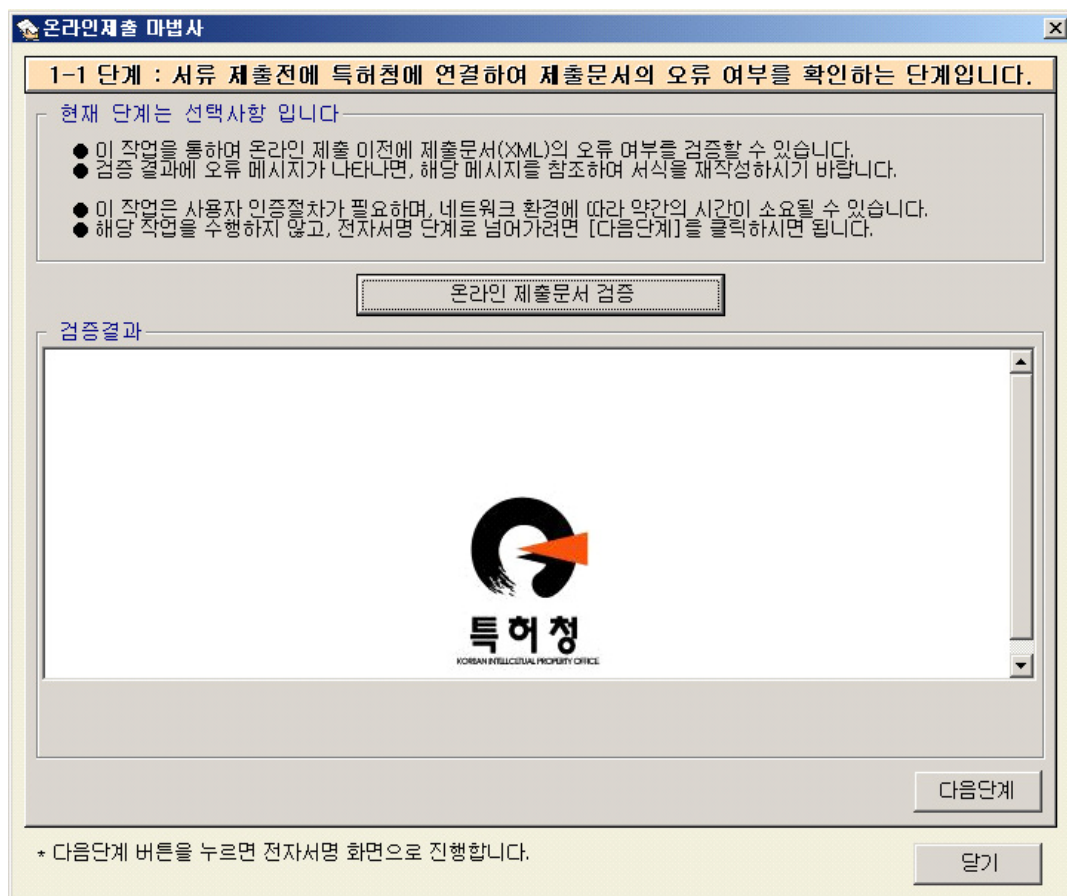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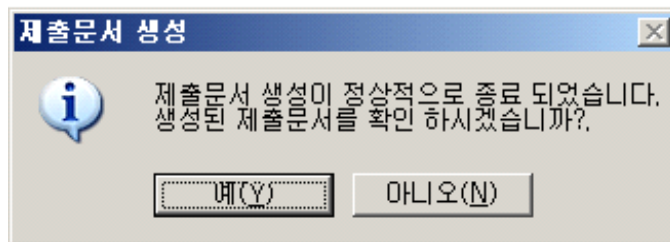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이 체크되어야 제출문서(XML)의 오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 작업은 사용자 인증절차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문서 생성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

* 제출문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면 다음 단계인 전자서명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닫기

3) 제출문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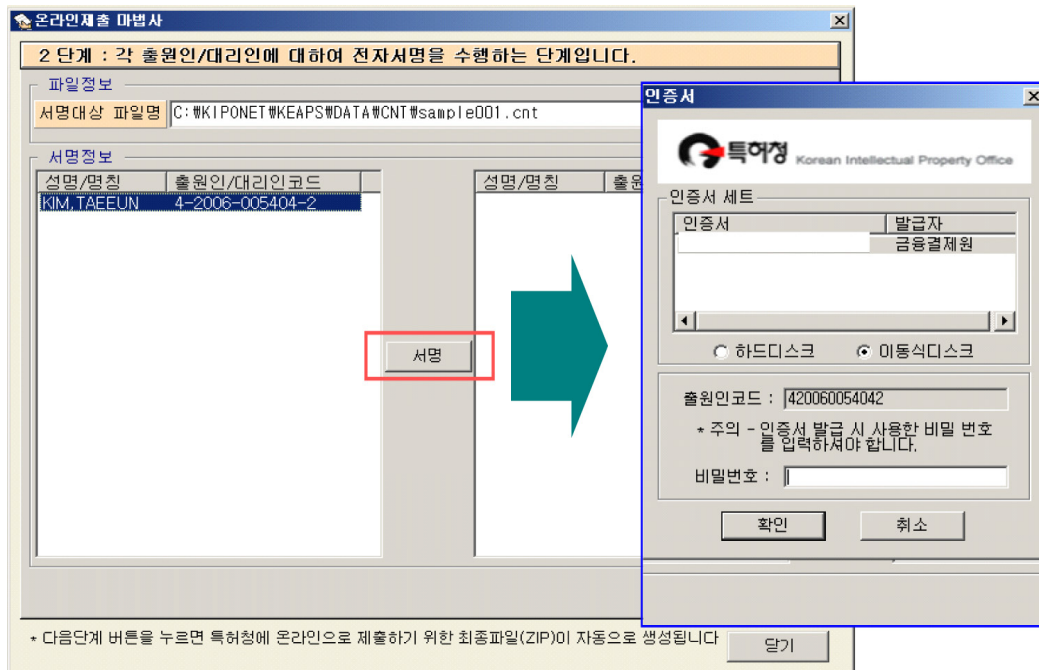


※ 오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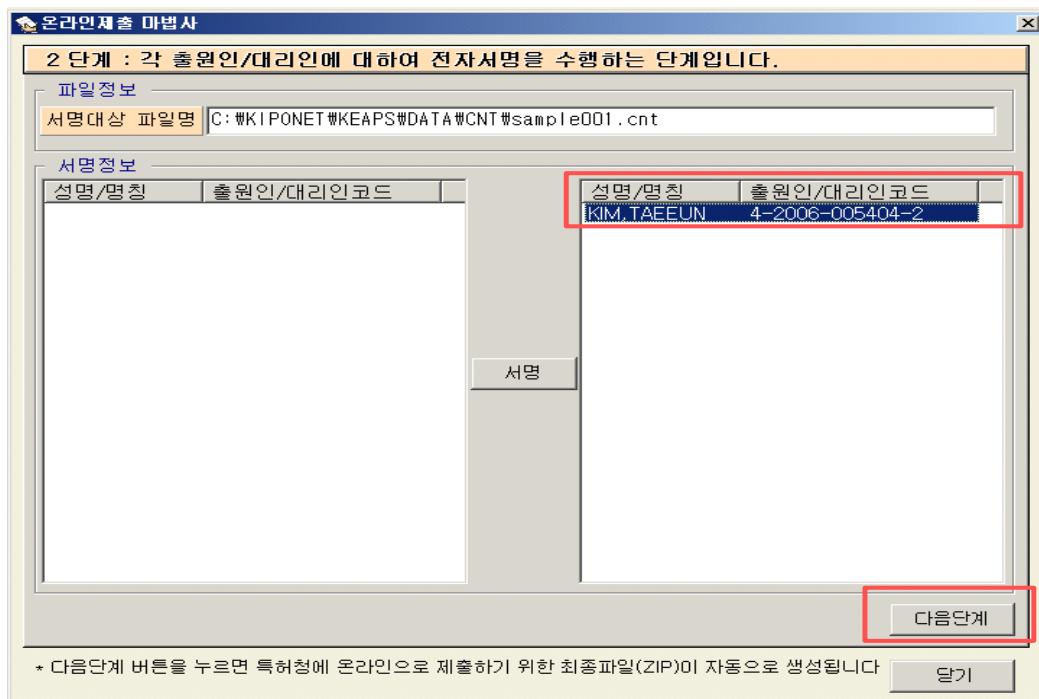
- MM2 서식 10번항목 중 US가 선택되었을때 MM18서식 미첨부시
- 제출인의 성명과 MM2 2번 항목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4) 전자서명

사전에 등록하신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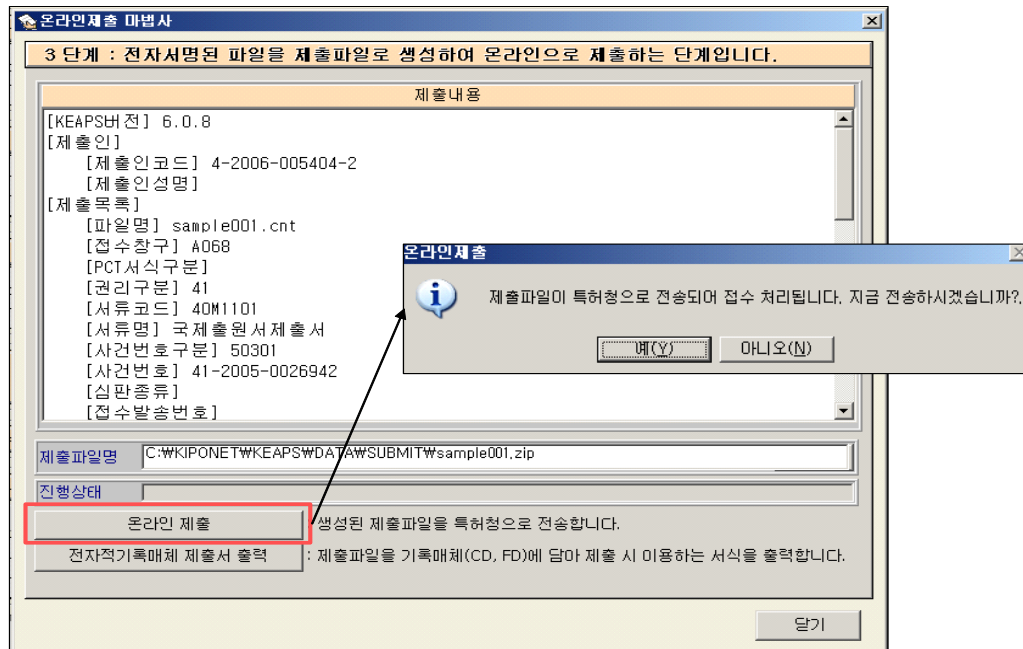


5) 서명을 마치신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한 최종 파일(ZIP)이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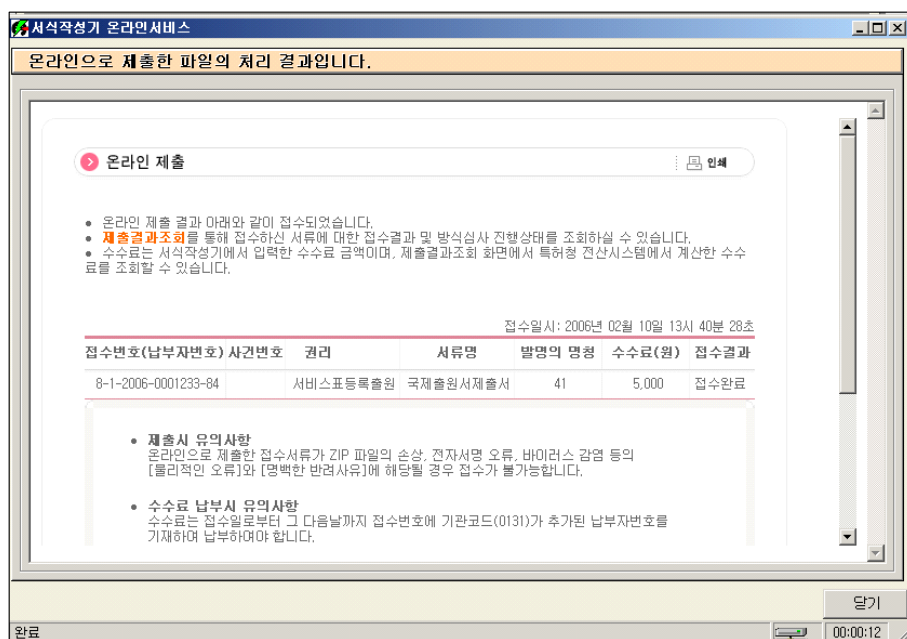
나. 온라인 제출

1) 온라인 제출 버튼을 눌러 생성된 제출파일을 특허청으로 전송합니다.



3. 제출결과 확인 및 수수료납부

가. 수수료는 접수일의 그 다음날까지 접수번호에 기관코드(0131)가 추가된 납부자번호를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결과조회

상단의 제출결과 버튼을 누르면 접수하신 서류에 대한 접수결과 및 방식심사 진행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의 이력을 조회합니다.

제출 결과 조회

출원인/대리인코드 420060054042로 로그인 하셨습니다. [도움말](#) [로그아웃](#)

- 정상접수건은 추후 방식심사시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보정통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결과조회 가능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입니다.

» 조회할 조건을 선택하십시오.

대상서류: 마드리드서류 접수매체: 온 라 인

기간: 당 일 1 주일 15 일 30 일 60 일 미완료건 [조회하기](#)

2006/01/28 ~ 2006/02/27

정렬순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상태

* 아래와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특허청합조 국재등록번호	서류명	진행상태	수수료 (원)	납부 수수료 (원)	발명역명칭
8-1-2006-0001233-84	2006.02.10	KR-2006-0000018	국제출원서류제출 선	방식심사 중	5,000	0	41

[1]

숨기기 닫기 00:02:56

제3장 KEAPS를 이용한 중간서류 제출

1. 중간서류의 종류

가. 국제출원보정서

- 수수료 미납, 대리인 위임에 관한 하자, 국제출원서와 출원인코드(등록원부)상의 주소 불일치 등의 하자로 보정요구를 통보 받았을 때 제출하는 서식

나. 대체서류

- 국제출원서상의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 표장, 첨부서류등에 관한 하자로 대체 서류제출요청서를 통보 받았을 때 제출하는 서식(출원인의 자진보정도 가능)

다. 하자보정서등

-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에 대한 하자통지를 받은 경우 본국관청을 통해 치요해야 하는 하자에 대한 영문의견서를 제출하는 서식

라. 국제출원취하

-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

2. 국제출원보정서

가. 보정할 사항 오른쪽의 입력 버튼을 눌러 보정대상항목과 보정방법을 입력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보정할 사항' (Items to be corrected) section of the Kipo system. The top window shows the '보정할 사항' (Items to be corrected) list with the following items:

구분항목 (M11001)	구분항목 및 보정방법을 선택한 다음, 입력 버튼을 클릭 하세요.
제출구분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등	
국제등록명의변경등특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국제출원 절차	
사후지정신청 절차	
대체서류	
하자보정서등	

The bottom window shows the '보정할 사항' (Items to be corrected) list with the following items: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방법
제출인	정정	입력 삭제
법정대리인 등	정정	입력 삭제
대리인	정정	입력 삭제
사건의 표시	정정	입력 삭제
수수료	납부	입력 삭제
첨부서류	제출	입력 삭제

The '보정할 사항' (Items to be corrected) list in the bottom window shows the following items:

- 【보정할 사항】
-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 【보정방법】 제출
- 【보정내용】
- 【첨부서류】 1. 위임장_1통

3. 대체서류제출서

전자출원 시에는 대체할 페이지를 표시하였더라도 MMZ 파일 전체를 첨부하셔야 하므로, 대체할 페이지만 작성하시면 안 되며 해당 서식파일 전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접수 시 MM18서식을 첨부한 경우에는 MM18서식을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대체서류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제출인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입력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KR - -

국제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찾기

대체서류

대체할 서류

국제출원서제출서

▼

대체할 페이지

수수료

0 원

국제출원서

0통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통수	원용 사항	첨부서류파일

첨부서류입력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설명편) • 149

4. 하자보정서

가.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하자통지서에 본국관청을 통해 치유해야 하는 하자(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관한 하자, 상품 및 서비스 명칭에 관한 하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att 파일로 변환 (스캔하여 첨부서류입력기로 변환)하여 입력하여 합니다.

※ 영문의견서 작성 예시는 양식집 참조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 대체서류

☒ 하자보정서등
☐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순번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

KR

-

-

사건의 표시 찾기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

-

제출원인번호 찾기

첨부서류

첨부서류입력

순번	첨부서류명	통수	원용 사항	첨부서류파일

150 • www.kipo.go.kr



제 6 편

참고자료

1. 지역별 가입국
2. 가입국목록
3. 마드리드 국제출원전용홈페이지
4.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 사이트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6. 마드리드 익스프레스
7. ROMARIN
8. 미국 및 일본 상표검색
9. 영문상품분류 검색
10. WIPO 당좌계좌개설
11. 국제출원관련 연락처

참고자료 1

지역별 가입국

유럽		
AL	Albania	알바니아
AT	Austria	오스트리아
BE	Belgium	벨기에
BG	Bulgaria	불가리아
BY	Belarus	벨로루시
CH	Switzerland	스위스
CY	Cyprus	키프로스
CZ	Czech Republic	체코
DE	Germany	독일
DK	Denmark	덴마크
EE	Estonia	에스토니아
EM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ES	Spain	스페인
FI	Finland	핀란드
FR	France	프랑스
GB	United Kingdom	영국
GR	Greece	그리스
HR	Croatia	크로아티아
HU	Hungary	헝가리
IE	Ireland	아일랜드
IS	Iceland	아이슬랜드
IT	Italy	이태리
LI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LT	Lithuania	리투아니아
LU	Luxembourg	룩셈부르크
LV	Latvia	라트비아
MC	Monaco	모나코
MD	Republic of Moldova	몰도바
ME	Montenegro	몬테네그로
MK	The former Yugosla Republic of Macedonia	메카도니아
NL	Netherlands	네덜란드
NO	Norway	노르웨이
PL	Poland	폴란드
PT	Portugal	포르투갈
RO	Romania	루마니아
RS	Serbia	세르비아
RU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SE	Sweden	스웨덴
SI	Slovenia	슬로베니아
SK	Slovakia	슬로바키아
SM	San Marino	산마리노
TR	Turkey	터키
UA	Ukraine	우크라이나

북남미		
AG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CU	Cuba	쿠바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아시아		
AM	Armenia	아르메니아
AZ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BH	Bahrain	바레인
BT	Bhutan	부탄
CN	China	중국
GE	Georgia	그루지아
IR	Iran	이란
JP	Japan	일본
KG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KR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MN	Mongolia	몽골
OM	Oman	오만
SG	Singapore	싱가포르
SY	Syrian Arab Republic	시리아
TM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UZ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VN	Viet Nam	베트남
호주		
AU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BW	Botswana	보츠와나
GH	Ghana	가나
KE	Kenya	케냐
LS	Lesotho	레소토
MA	Morocco	모로코
MG	Madagascar	마다가스카
MZ	Mozambique	모잠비크
NA	Namibia	나미비아
SL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SZ	Swaziland	스와질랜드
ZM	Zambia	잠비아

독립연합국가(CIS)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

유럽연합(EM) = 26개국 = 23개국 + BX

BX(베네룩스)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3개국

참고자료 2

가입국 목록(2008.10.현재)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거절기한 ¹⁾	개별수수료 ²⁾	보호부여
AG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AL	Albania	알바니아			
AM	Armenia	아르메니아	◎	●	●
AT	Austria	오스트리아			
AU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	●	●
AZ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BX	Benelux	베네룩스상표청		●	●
	BE	Belgium	벨기에		
	LU	Luxembourg	룩셈부르크		
	NL	Netherlands	네덜란드		
BG	Bulgaria	불가리아	●	●	
BH	Bahrain	바레인	●	●	
BT	Bhutan	부탄			
BW	Botswana	보츠와나			
BY	Belarus	벨로루시	●	●	
CH	Switzerland	스위스			
CN	China	중국	◎	●	
CU	Cuba	쿠바		◇	
CY	Cyprus	키프로스	◎		
CZ	Czech Republic	체코			
DE	Germany	독일			
DK	Denmark	덴마크	◎	●	
EE	Estonia	에스토니아	◎	●	
EM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	●	●
ES	Spain	스페인			
FI	Finland	핀란드	◎	●	
FR	France	프랑스			
GB	United Kingdom	영국	◎	●	●
GE	Georgia	그루지아	●	●	●
GH	Ghana	가나	◎	◇	
GR	Greece	그리스	◎	●	
HR	Croatia	크로아티아			
HU	Hungary	헝가리			●
IE	Ireland	아일랜드	◎	●	●
IR	Iran	이란	◎		
IS	Iceland	아이슬랜드	●	●	
IT	Italy	이태리	◎	●	
JP	Japan	일본	●	◇	●

1) ● 거절기한 18개월(의정서 5(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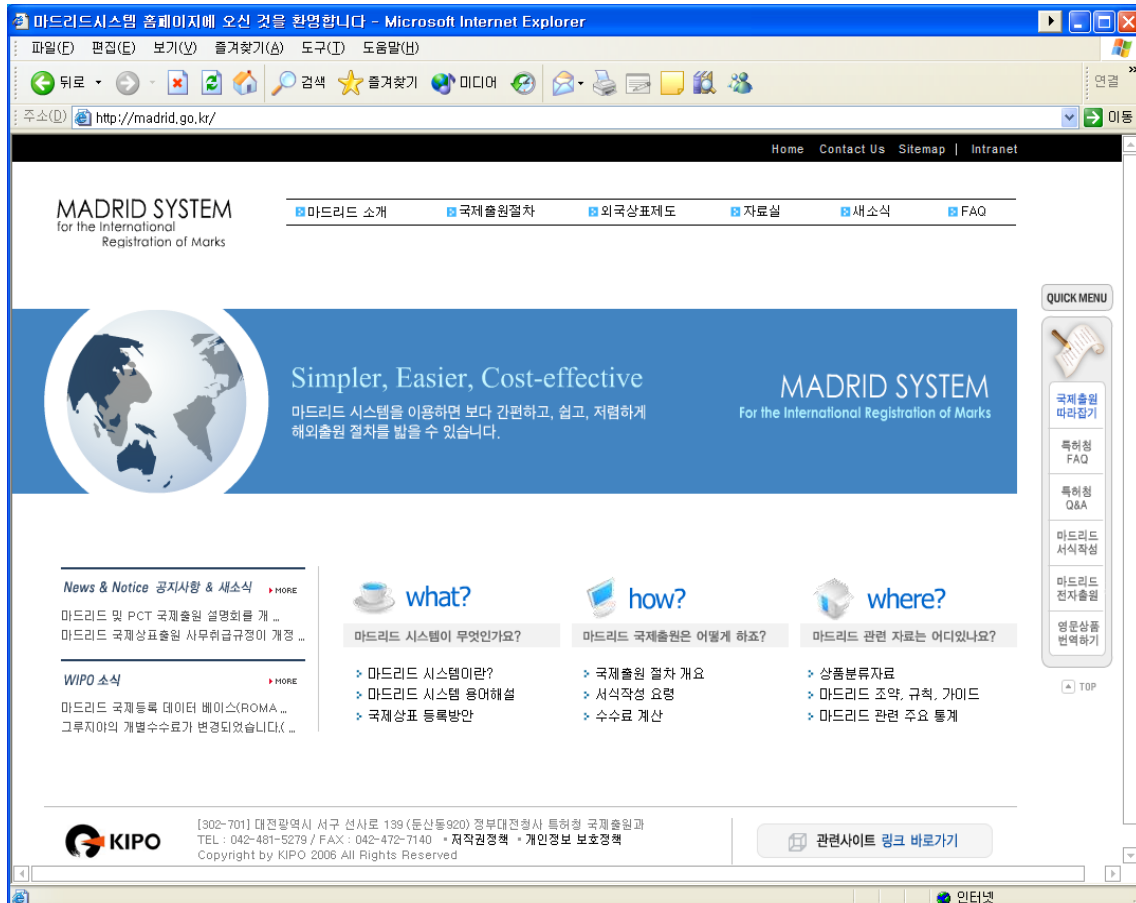
◎ 거절기한 18개월+18개월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의정서 5(2)(C))

2) ◇ 2차수수료 납부국가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거절기한 ¹⁾	개별수수료 ²⁾	보호부여
KE	Kenya	케냐	◎		
KG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KR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	●	●
LI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LS	Lesotho	레소토			
LT	Lithuania	리투아니아	◎		
LV	Latvia	라트비아			
MA	Morocco	모로코			
MC	Monaco	모나코			
MD	Republic of Moldova	몰도바		●	
ME	Montenegro	몬테네그로			
MG	Madagascar	마다가스카	●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메카도니아			
MN	Mongolia	몽골			
MZ	Mozambique	모잠비크			
NA	Namibia	나미비아			
NO	Norway	노르웨이	◎	●	●
OM	Oman	오만			
PL	Poland	폴란드	●		
PT	Portugal	포르투갈			
RO	Romania	루마니아			
RS	Serbia	세르비아			
RU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SE	Sweden	스웨덴	◎	●	
SG	Singapore	싱가포르	◎	●	●
SI	Slovenia	슬로베니아			
SK	Slovakia	슬로바키아	●		
SL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SM	San Marino	산마리노	●	●	
SY	Syrian Arab Republic	시리아			●
SZ	Swaziland	스와질랜드	●		
TM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		
TR	Turkey	터키	◎	●	●
UA	Ukraine	우크라이나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	●	
UZ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	●	
VN	Viet Nam	베트남		●	
ZM	Zambia	잠비아			

참고자료 3

마드리드 국제출원전용홈페이지(www.madrid.kr)



□ 주요메뉴 소개

○ 국제출원관련

- 서식다운로드 : 국제출원절차>서식작성요령
- 국제출원수수료 계산 및 납부요령
- 국제등록검색방법 : Madrid Express 및 ROMARIN 검색 방법 설명

○ 새소식

- 고시공지사항 : 국제출원관련 공지사항
- WIPO소식 : 국제사무국 NOTICE(통지사항) 공지

참고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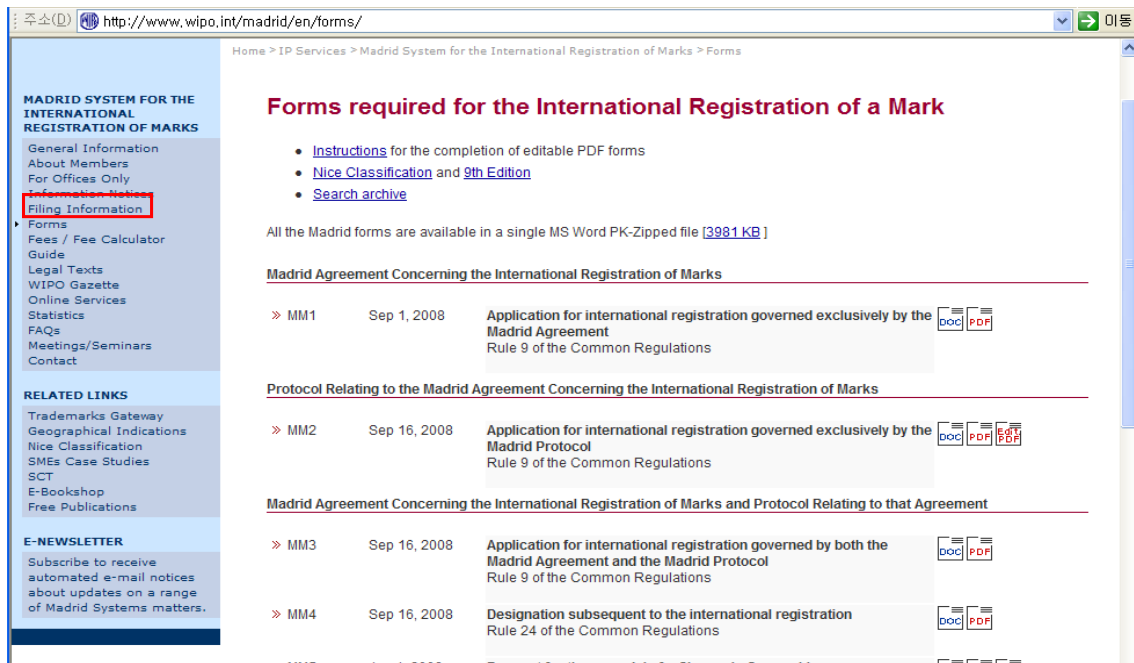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 사이트 (<http://www.wipo.int/madrid/en>)



- 가입국관련 사항(<http://www.wipo.int/madrid/en/members>)



- 서식(<http://www.wipo.int/madrid/en/forms>)



- 국제출원, 사후지정, 명의변경, 갱신신청시 또는 WIPO에 기타 변경사항을 신청할 경우 위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
- www.madrid.kr국제출원절차-서식작성요령

주소(D) http://www.wipo.int/madrid/en/fees/ 이동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 SERVICES

ABOUT WIPO IP SERVICES PROGRAM ACTIVITIES RESOURCES NEWS & EVENTS

Home > IP Services > Madrid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Fees / Fee Calculator

Fees/Fee Calculator

수수료 표

Types of fees

- > [Schedule of Fees](#) due under the Madrid System [\[DOC\]](#) [\[PDF\]](#)
- >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 [\[DOC\]](#) [\[PDF\]](#)
- > Reduction of Fee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Originating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from January 1st 2006 [\[DOC\]](#) [\[PDF\]](#)

각 국별 개별수수료

Tools

- > [Fee Calculator](#) [Downloadable [XLS](#)]

수수료 계산기

RELATED LINKS

- Trademarks Gateway
- Geographical Indications
- Nice Classification
- SMEs Case Studies
- SCT
- E-Bookshop
- Free Publications

- > [How to Pay the Fees Directly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 > [E-Payment](#) - This service can only be used to pay fees as notified in irregularity letters or other WIPO communic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of Intellectual Property [\[PDF\]](#)

하자통지에 근거한 미납수수료의 신용카드납부

참고자료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http://www.wipo.int/mard/feecal/firststep>)

1. 초기화면

- ① 국제출원서(사후지정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일자
예) 홈페이지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에 2008년 11월 1일에 제출하였을 경우 수수료
계산기에 24.09.2008 및 08.11.2008이 있을 경우 24.09.2008 선택
- ② Office of origin : Republic of Korea 선택
- ③ Number of classes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류의 개수를 선택(주의 : 출원한
해당 류가 아님)
예) 18, 25류가 국제출원서 10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2를 선택
- ④ Type : 국제출원서 Application(Common Regulations) 선택
- ⑤ 색채표장일 경우 Colour 선택
- ⑥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선택
- ⑦ Calculate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계산
- ⑧ 국제출원서는 Total(총 수수료) 만 기재

2. 일부국가에 상품류의 감축이 있을 경우

- ① 감축되는 국가가 추가수수료를 받는 국가(예 : 독일, 프랑스)일 경우 해당 없음
- ② 감축되는 국가가 개별수수료를 받는 국가일 경우
- 감축되는 류만큼 콤보박스에서 개수를 감한다.

http://www.wipo.int/madrid/feecalc/FirstStep?Lang=E&ForDate=20080924&Origin=KR&Classes=2&ServCd=EN&Colour=Y&FR=Y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뒤로 - - - - - 검색 - - - - - 즐겨찾기 - - - - - 미디어 - - - - - - - - - - 이동

주소(D) http://www.wipo.int/madrid/feecalc/FirstStep?Lang=E&ForDate=20080924&Origin=KR&Classes=2&ServCd=EN&Colour=Y&FR=Y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Fee Calculation

For date: 24.09.2008 Office of origin: Republic of Korea

Number of classes: 2 Type: Application (Common Regulations)

☒ Colour ☐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 Includes figurative elements

☐ AG	☐ AL	☐ AM	☐ AN	☐ AT	☐ AU	☐ AZ	☐ BG	☐ BH	☐ BT
☐ BW	☐ BX	☐ BY	☐ CH	☐ CN	☐ CU	☐ CY	☐ CZ	☐ DE	☐ DK
☐ EE	☐ EM	☐ ES	☐ FI	☒ FR	☒ GB	☒ GE	☐ GH	☐ GR	☐ HR
☐ HU	☐ IE	☐ IR	☐ IS	☐ IT	☒ JP	☐ KE	☐ KG	☐ KP	☐ LI
☐ LS	☐ LT	☐ LV	☐ MA	☐ MC	☐ MD	☐ ME	☐ MG	☐ MK	☐ MN
☐ MZ	☐ NA	☐ NO	☐ OM	☐ PL	☐ PT	☐ RO	☐ RS	☐ RU	☐ SE
☐ SG	☐ SI	☐ SK	☐ SL	☐ SM	☐ SY	☐ SZ	☐ TM	☐ TR	☐ UA
☒ US	☐ UZ	☐ VN	☐ ZM						

Select All Clear All Calculate

Basic fee where any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color : 903

Complementary fee : 1 x 100.00 CHF 100

United Kingdom

Individual fee : 369

Individual fee / supplementary fee : 1 x 102.00 (1 class free) 102

Georgia

Individual fee : 314

Individual fee / supplementary fee : 1 x 115.00 (1 class free) 115

Japan

Individual fee (first part): 115

Individual fee / supplementary fee (first part): 1 x 88.00 (1 class free) 88

United States of America

Individual fee / supplementary fee : 2 x 337.00 (0 classes free) 674

TOTAL: (CHF) 2780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개별수수료
총수수료

참고자료 6

마드리드 익스프레스

MADRID EXPRESS (<http://www.wipo.int/ipdl/en/search/madrid/search-struct.jsp>)

Madrid Express (Trademarks) Search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wipo.int/ipdl/en/search/madrid/search-struct.jsp> 이동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 SERVICES

ABOUT WIPO IP SERVICES PROGRAM ACTIVITIES RESOURCES NEWS & EVENTS

Home > IP Services > Intellectual Property Digital Library

Madrid Express Structured Search

(Simple Search)

Pending : 출원대상건
Full : 국제등록완료건
Full : 출원대상 및 등록완료건

» Please select a database: Full

» Transaction Type: Non available Data Type: Non Available

» Query:

AND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AND	Holder Name	=	
AND	Representative	=	
AND	Mark	=	
AND	Vienna Classification	=	
AND	Nice Classification	=	
AND	Goods and Services (English)	=	
AND	Goods and Services (French)	=	
AND	Goods and Services (Spanish)	=	
AND	Office of Origin	=	
AND	Basic Application Number	=	
AND	Basic Registration Number	=	
AND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 Display Options

Search Reset

RSS | Contact Us | Terms of use

<http://www.wipo.int/portal/index.html.en>

※ www.madrid.kr > 국제출원절차 > 국제등록검색방법 참조

IPDL Search Result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852 of 881

KR: 400627 **N**

(111) Number
 KR: 4006276390000
 26.08.2008 - Dat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of Origin
 29.08.2008 - Date of receipt by the International Bureau
 Status: Being Examined

(732)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
 do 363-883 (KR).

(740)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150-727 (KR).

(540) Mark

(511)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Nice Classification) and the list of goods and services classified according thereto
 05 Biolog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bacterial poisons, appetite suppressants for medical purposes, lotion for pharmaceutical purpose, ointmen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nalgesics, hemorrhoid treatment preparations, antibiotic preparations, agents affecting peripheral nervous system, rat poison, vaccines, dietetic substances adapted for medical use, medicines for sensory organs, breath refreshers for medical purposes, vermifuges, anaesthetics, agents for immunity adjustment,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burns, preparations for callou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skin care, agents affecting central nervous system, tranquilizers for medical purposes, hypoglycemic agents.

(822) Basic registration
 KR, 10.08.2005, 40-0627639-0000.

(832) Designations under the Madrid Protocol
 AL, BH, BY, HR, IR, MA, MD, ME, MK, OM, RS, SY, TR, UA, US, UZ, VN.

기초출원(등록) 번호

본국관청 수령일¹
 WIPO 수령일
 심사상태²

출원인 명칭 및 주소

대리인명칭 및 주소

표장

지정상품 및 서비스

기초출원(등록번호) 정보

지정국

1. 수령일

본국관청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WIPO가 국제출원서를 수령하면 본국관청 수령일이 국제출원일로 소급

2. Status

- Being Examined : 국제출원서를 WIPO가 수령 후 심사대기 또는 심사중인 상태
- Waiting for response : 하자통지서가 발송된 상
 - * 28.01.2009 - Time limit for reply : 하자통지서 대응 만료일
 - * 하자보정서를 WIPO가 수령한 경우 Being Examined 상태로 변환
- Being Translated : 국제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 및 수수료납부가 완료된 경우 불어 및 스페인어 번역

참고자료 7

ROMARIN(<http://www.wipo.int/romarin/>)

Simple search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뒤로 - - - - - 검색 ★ 즐겨찾기 미디어 - - - - - 연결

주소(D) http://www.wipo.int/romarin/ 이동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 SERVICES

Spanish | Français

ROMARIN

- Simple search
- Advanced search
- Preferences
- Search Examples
- Help
- FAQ
- Nice Classification
- Vienna Classification
- Feedback

Romarin - Simple search

Query: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contains		
AND		Holder Name	contains		
AND		Representative	contains		
AND		Mark	contains		
AND		Vienna Classification	contains		
AND		Nice Classification	contains		
AND		Goods and Services (English)	contains		
AND		Goods and Services (French)	contains		
AND		Goods and Services (Spanish)	contains		
AND		Office of Origin	contains		
AND		Basic Application Number	contains		
AND		Basic Registration Number	contains		
AND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contains		
AND		Registration date	contains		

Results at a time: 25

Sort result list by: ☐ Hits ☒ Mark N° ☐ Mark Name

Search Reset

View		Countries	Show
Full details		AT AU BG BX CH DE DK ES FI FR GR HU	Print pr
Summary		IE IT NO PL PT RO RU SE SG TR	Print
By Office			
Previous			Next
			지정국일람 (클릭하면 해당국 사항만 정렬)
			국제등록번호
151	Date of the registration		국제등록일자
	26.05.2005		
180	Expected expiration date of the registration/renewal		갱신일(종속기간 만료일)
	26.05.2015		
270	Language of the application		출원언어
	English		
			현재상황
732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		출원인
811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holder is a national		본국관청(또는 계약당사자)
	KR		
842	Legal nature of the holder (legal entity) and State, and, where applicable, ter within that State where the legal entity is organized		출원인의 법적성격 및 근거지
	Limited Company, Republic of Korea		
740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대리인
540	Mark		표장
	CIN		표준문자간주
541	Reproduction of the mark where the mark is represented in standard chara		권리불요구
526	Disclaimer		
	The separate v		
	Les mots sépa		
	Los términos "		
5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Nice Classification) - NCL(8)		지정상품
	09 Telephones, mobile phones, earphones, batteries, battery chargers, keyphone switchboards, computer programs for operating television sets, modems, Inter phones, optical fibers, fiber optic cables, closed circuit televisions, television se dinital versatile disc players, camcorders, video disc players, stereo surround s		
821	Basic application		기초출원(등록) 사항
	KR, 18.		
300	Data relating to priority under the Paris Convention and other data relating to registration of the mark in the country of origin		우선권주장
	KR, 18.		
832	Designation(s) under the Madrid Protocol		지정국
	AT - AU - BG - BX - CH - DE - DK - ES - FI - FR - GR - HU - IE - IT - NO - PL - PT - R - SE - SG - TR		
527	Indications regarding use requirements		사용의사 선언국가
	IE - SG		

☐	Registration	
450	Publication number and date	국제등록공고일자
	2005/36 Gaz, 13.10.2005	
832	Designation(s) under the Madrid Protocol	지정국
	AT - AU - BG - BX - CH - DE - DK - ES - FI - FR - GR - HU - IE - IT - NO - PL - PT - R - SE - SG - TR	
527	Indications regarding use requirements	
	IE - SG	
580	Date of recording (date of notification from which the time limit to notify the starts)	국제등록등재일(가거절통지 기산일)
	22.09.2005	
	The refusal period has expired and no 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has recorded (application of Rule 5 preserved)	특정지정국에서 가거절기간 동안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의정서에 의한 보호)
	AT	
☐861	Total provisional refusal of protection	전체가거절 통지
	AU	
450	Publication number and date	
	2005/46 Gaz, 22.12.2005	
☐	Grant of protection subject to opposition	보호부여(이의신청 중)
	IE	
450	Publication number and date	
	2005/48 Gaz, 05.01.2006	
	Opposition end date	이의신청만료일
	28.02.2006	
☐868	Grant of protection	보호부여 결정
	IE	
450	Publication number and date	
	2006/13 Gaz, 04.05.2006	
☐	Opposition possible after the 18 months time limit	18개월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 가능성 통보
	SG	
450	Publication number and date	
	2006/14 Gaz, 11.05.2006	이의신청만료일
	Opposition end date	
	13.05.2006	
☐898	Other final decision	가거절결정에 의한 감축 보정후 등록
	US	
450	Publication number and date	
	2008/16 Gaz, 22.05.2008	
	List limited to:	
09	Audio and video receivers; television receivers; karaoke singing machines; telephone jukeboxes for music; video disc players; digital video recorders; radio receivers; audio playing audio cassette tapes; headphones; compact disc players; amplifiers; op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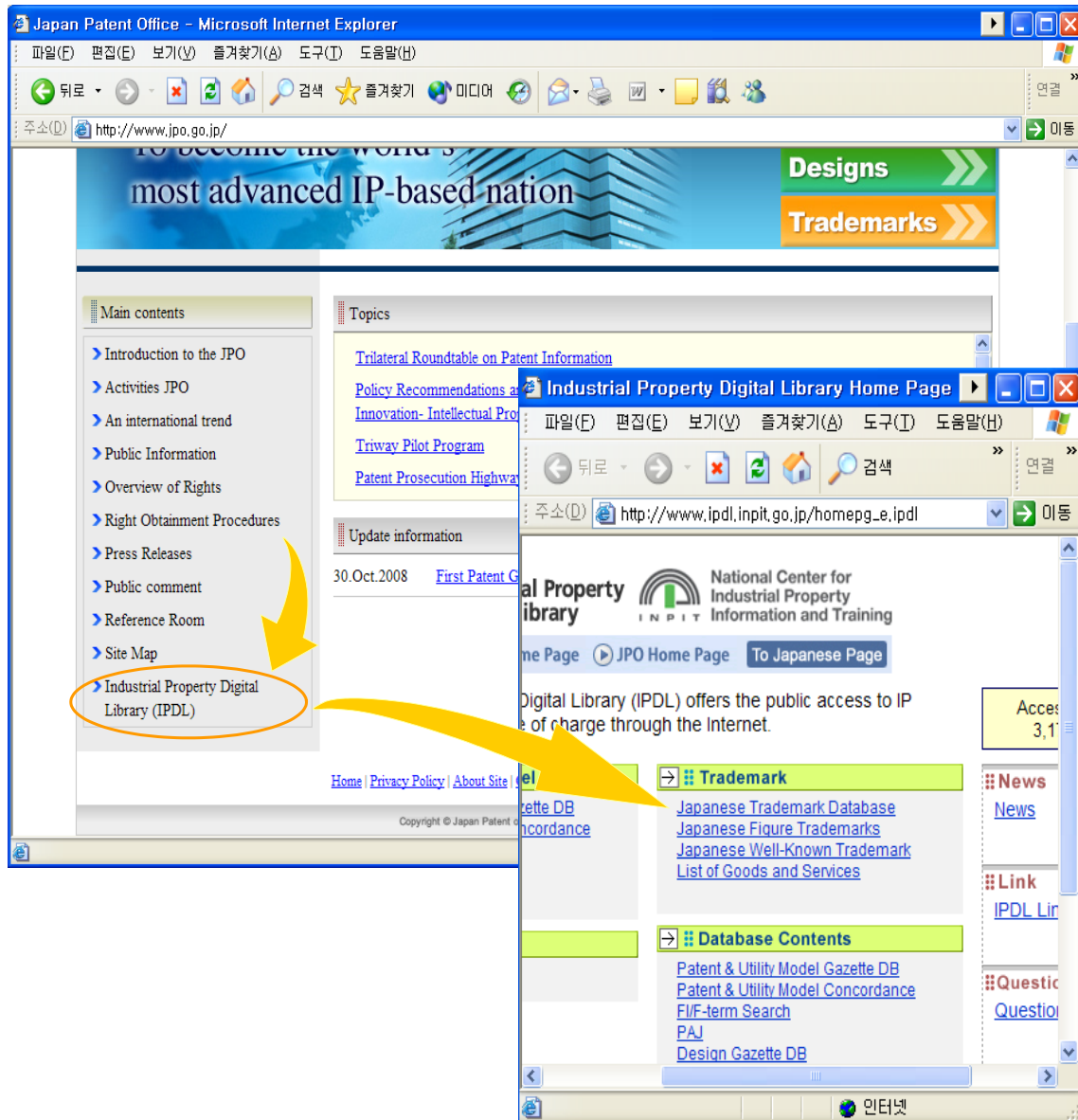
참고자료 8

미국 및 일본 상표검색

가. 미국특허청 (www.uspto.gov/)



나. 일본특허청(www.jpo.go.jp)



참고자료 9

영문상품분류 검색

가. 대한민국특허청 한영상품비교 검색



※ 분류/코드 조회 클릭 > 영문상품검색 화면 > 중간 상단 부분 명칭 란에 검색어 입력
예) 동물과 관련된 영문상품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명칭 란에 동물 또는 animal을 입력하면 관련 영문상품이 검색됩니다.

나. WIPO NICE9판검색(www.wipo.int/madrid/en/filing)

WIPO NICE9 Classification - Class 1

Class 1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manures; fire

Serial No. (E)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Basic No.	Serial No. (F)
A0011	Abrasives (Auxiliary fluids for use with —)	010004	F0309
A0016	Absorbing oil (Synthetic materials for —)	010620	A0015
A0018	Accelerators (Vulcanisation —)	010005	A0018
A0023	Accumulators (Acidulated water for recharging —)	010251	E0002
A0028	Acetate (Aluminium —) *	010565	A0043
A0030	Acetate of cellulose, unprocessed	010008	A0044
A0031	Acetates [chemicals] *	010007	A0046
A0033	Acetic anhydride	010010	A0049
A0034	Acetification (Bacteriological preparations for —)	010009	B0017
A0035	Acetone	010011	A0050
A0036	Acetylene	010012	A0051
A0041	Acetylene tetrachloride	010013	A0057
A0044	Acid proof chemical compositions	010016	A0062
A0046	Acids *	010014	A0060
A0048	Acidulated water for recharging	010251	E000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under the Nice Agreement
Ninth Edition

Classes A-Z

Goods
1 | 2 | 3 | 4 | 5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16 | 17 | 18 | 19 | 20
21 | 22 | 23 | 24 | 25
26 | 27 | 28 | 29 | 30
31 | 32 | 33 | 34
Services
35 | 36 | 37 | 38 | 39
40 | 41 | 42 | 43 | 44
45

Search
Please enter query!
Search

다. 미국특허청상품검색 (<http://tess2.uspto.gov/netahtml/tidm.html>)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ome Pag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 <http://www.uspto.gov/index.html>

Welcome to the only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 Agenc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Text Only | Site Index | FAQ | Glossary | How To Guides | eBusiness | eBiz Alerts | News | Help | **How To Search** | Re

TOP NEWS

SEARCH Manual

Choose Field: All fields Enter Search Terms:

쿼리 전송 원래대로

Code & Name	Examples
[IC] Class Code	Ex: "001"[IC]
[GS] Goods or Services (G/S)	Ex: G[GS]
[ED] Effective Date	Ex: "20010601"[ED]
[DE] Descriptions	Ex: computer[DE]
[ST] Status (A, M, D)	Ex: A[ST]

See Notes below for more hints about using and viewing the patent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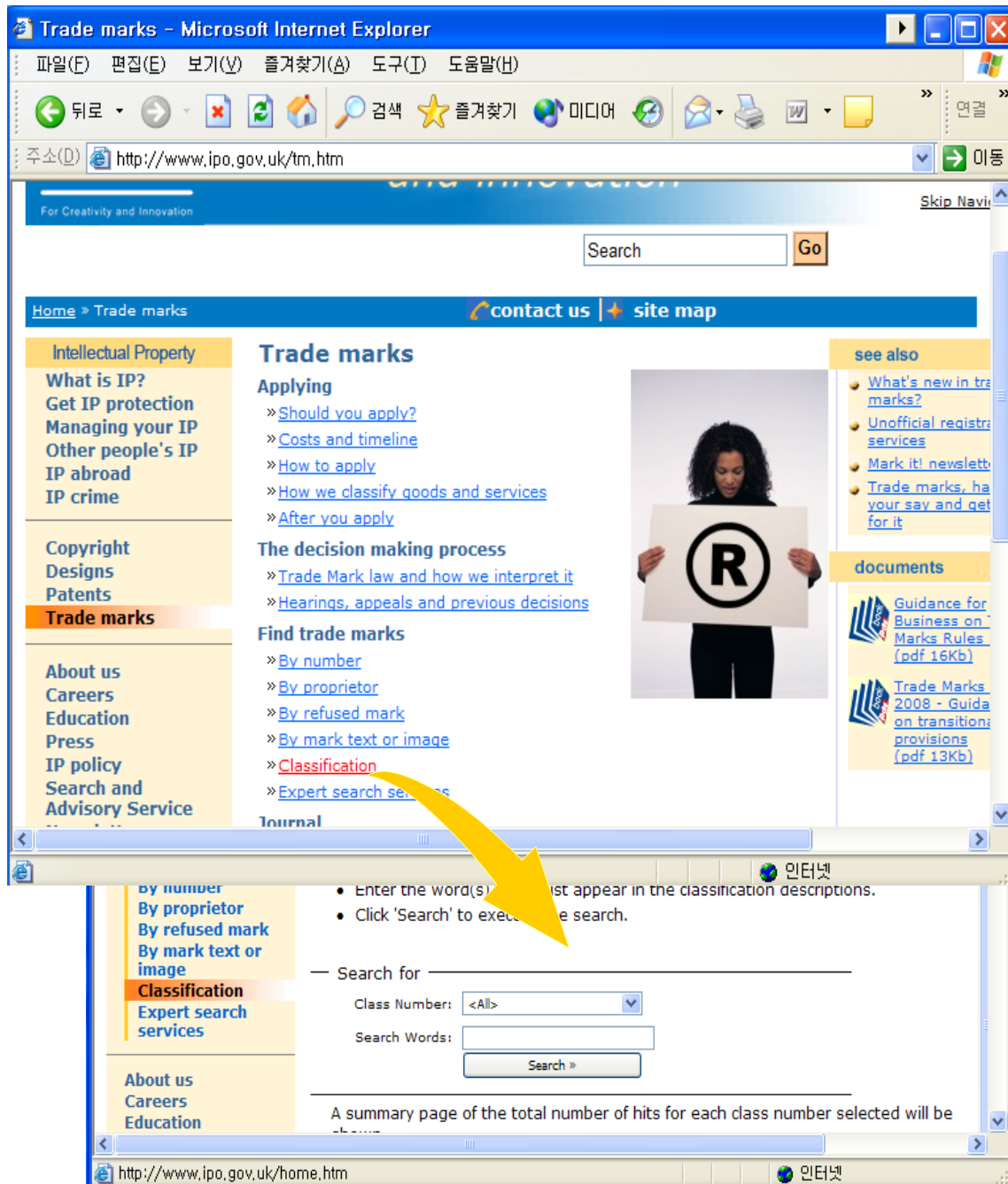
Patent kind codes (numbering formats)

About access to and status of pending published applications

Trademark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Manual

Trademarks Official Gazette (most recent five issues)

라. 영국상표청 상품분류검색(<http://www.ipo.gov.uk/tm/t-find/t-find-class.htm>)



참고자료 10

WIPO 당좌계좌개설

1. 일반원칙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서명된 계좌개설요청서를 최초 적립금 지불과 함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규절차

- 2.1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서명된 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소한 5,000스위스프랑(CHF)이 초기 비용으로서 계좌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 2.2 계좌개설요청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Finance Department - Income Sec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ephone: (+41) 22 338 9111
Facsimile: (+41) 22 734 4693
or by e-mail directed to: **income.accounts@wipo.int**

여기에는 계좌 개설인의 주소와 신분의 표시 등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등)

3. 계좌의 관리

계좌는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스위스 프랑으로만 유지됩니다.

4. 계좌 운용의 원칙

- 4.1 계좌는 초기비용이 수령된 이후 개설되며, 계좌번호는 e-mail 또는 팩스로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보됩니다.

4.2 개설된 계좌에는 모든 수수료, 서비스, 공보, 사본 등을 커버할 만큼 충분한 비용이 적립될 것이 요구됩니다.

4.3 적립금은 WIPO의 Finance Section에 의해 거래 날짜순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4.4 계좌 개설인은 거래 내역에 관한 상세 기록을 매달 통보 받게 됩니다. 계좌 개설인은 그 통지에 에러가 있을 경우 즉시 WIPO에 알려야 합니다.

4.5 계좌 개설인은 적립금이 계좌에 입금 될 때마다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5. 계좌로의 입금

5.1 최초적립금과 이후 적립금은 스위스 프랑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일, 스위스 프랑 이외의 통화로 입금되는 경우 당해 통화가 자유롭게 스위스통화로 태환된다면 그 입금은 환율에 의해 스위스 프랑으로 태환 될 것입니다.

5.2 당좌계좌명의인은 계좌이용예정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출금될때 까지는 충분한 금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3 입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가. 은행송금

Bank name(은행명): Credit Suisse - 1211 Geneva 70 - Switzerland
 Account name(예금주): WIPO/OMPI
 Account number (IBAN):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나. WIPO postal account(유럽지역만 송금 가능하므로 한국에서는 해당없습니다.)

Account number (IBAN): CH03 0900 0000 1200 5000 8
 at SWISS POST/Postfinance - Engehaldenstrasse 37 - 3030 Bern
 SWIFT/BIC: POFICHBE

6. 계좌에서의 출금

- 6.1 계좌는 수수료, 공보와 관련하여 초래된 비용, WIPO의 다른 서비스로 인한 비용의 지불을 위해서만 출금됩니다.
- 6.2 계좌는 계좌 개설인에 의해 작성된 서면요구서에 기초해서만 출금됩니다. 각 공식서식에 첨부된 수수료계산용지는 주어진 계좌에서의 출금을 허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6.3 출금요구는 출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또한 출금되는 계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6.4 계좌의 균형을 적자(-)로 만드는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6.5 계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허가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지 않는 한 수수료의 지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계좌의 폐쇄

- 7.1 계좌는 계좌개설인 혹은 적절한 경우 법적 상속인에 의한 서면요구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7.2 그러나 WIPO는 충분한 금액이 적립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이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7.3 계좌가 폐쇄되면, 잔고는 계좌 개설인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수표 혹은 이체의 방법으로 반환됩니다.

참고자료 11

국제출원관련 연락처

1. WIPO국제사무국 연락처

가. MM2 및 각종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WIPO국제사무국 우편주소

International Registrations Operations Division
 International Registrations Departm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나. 국제등록사본의 신청처

Information and Extract unit
 International Registrations Departm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다. 전화문의처 : +41-22-338-9111

라. 각종 신청서 제출을 위한 팩스번호 : +41-22-740-1429

마. 국제출원관련 질의용 대표 메일 : intreg.mail@wipo.int

2. WIPO의 분야별 업무담당자 및 e-mail 주소(Contact Point)

가. 출원인 적격, 본국관청 선택 등 국제출원을 위한 일반적 원칙, 대체, 기출원 및 등록의 소멸로 인한 효과 관계 업무

- Mr. Alan M. Datri
 - Senior Counsellor, Office of the Assistant Director General
 - e-mail 주소: alan.datri@wipo.int

나.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본국관청 및 IB(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관련 업무

- Mr. Andre Ntamack

- Program Officer,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Section, International Registrations Department, Sector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e-mail 주소: Andre.ntamack@wipo.int)

다. 국제등록의 효과, 거절예고에 대한 조치에 대한 대처 관련 업무

- Mr. Eric Fontaine
- Examiner,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Section
- e-mail 주소: Eric.fontaine@wipo.int

라. 추가지정, 소유권 이전, 리미테이션, 무효, 취하 등에 대한 국제등록 업무

- Xavier Descombes
- Team Leader, Madrid Team 3 (Modifications and Renewals),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Section
- e-mail 주소: Xavier.descombes@wipo.int

마. 사용권의 기재,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국제등록 업무

- Mr. Yves Ngoubeyou
- Senior Information Officer, Information and Promotion Division
- e-mail 주소: Yves.ngoubeyou@wipo.int

바. 보호기간 및 갱신

- Mrs. Betty Berendson
- Senior Information Officer, Information and Promotion Division
- e-mail 주소: Betty.berendson@wipo.int

사. 본국관청, 지정국관청과의 전산문서 송부,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 Roger Holberton
- Head, Business Applications Section, IT Division
- e-mail 주소: roger.holberton@wipo.int

아. WIPO 공보, ROMARIN, Madrid Express, 수수료 계산 업무

- Henri Spagnolo
- Head, Publication Unit, International Registers Functional Support Section, International Registrations Administration Department
- e-mail 주소: henri.spagnolo@wipo.int

3. 한국특허청 연락처

가. 국제출원과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42-481-5206(5279)
팩스 : 042-472-7140
이메일 : kipomadrid@kipo.go.kr
홈페이지 : www.kipo.kr

나.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설명편)』 발간 참여인원

총 괄

국제출원과장 이 대 진

집 필

행정사무관 이 기 영
주 무 관 김 완 곤

감 수

행정사무관 이 기 영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설명편)

발 행 : 특허청 국제출원과

전 화 : 042-481-5279, 5206

팩 스 : 042-472-7140

발 행 일 : 2008년 12월

ISBN : 978-89-6199-172-8 13500